

GOVP1199709035

380.141
L2931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대책」

세 부 추 진 계 획

1997. 7

농 립 부

목 차

I. 농산물유통개혁 2단계 대책	3
II. 2단계대책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내용	43
III. 2단계대책 투융자 계획	305
IV. 2004년 농산물 유통 모습	321

< 별 첨 >

농산물 유통개혁 ('94. 9) 추진상황 및 2단계 대책 ...	331
-------------------------------------	-----

여 백

I. 농산물 유통개혁 2단계대책

여 백

목 차

I. 유통개혁 2단계대책 추진배경	7
II. 1단계대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8
III. 여건변화와 추진목표.....	12
IV. 분야별 대책	14
1. 산지 유통체계 확립으로 공동출하·규격화 촉진	14
2.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용 절감	18
3.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투명거래 정착	21
4.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안전식생활 보장	25
5. 생산자 조직에 의한 수급안정체제 확립	27
〈2004년 농산물유통모습〉	30
V. 과제별 추진체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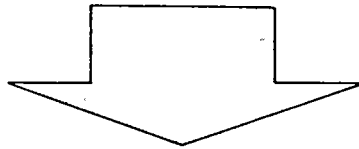
여 백

I. 유통개혁 2단계대책 추진배경

1단계 대책

□ 「농산물유통개혁대책」 수립·추진 ('94. 9)

- ⇒ '94-'96년간 1조 9,600억원 투입
-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 확충
-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 확대



2단계 대책

□ 유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유통체계 확립

- 유통시장개방, 대형매장 급속확산과 소비구조 고급화
- 산지유통체계 확립을 바탕으로 유통의 효율성 촉진

□ 농산물유통의 선진화를 위한 「유통개혁 2단계 대책」 추진

- 농협 중심으로 산지유통체계 혁신
- 유통시설 운영활성화와 물류의 효율화
-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경쟁체제 구축

유통선진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향상

Ⅱ. 1단계대책의 추진성과와 문제점

1. 주요 추진성과

가. 생산자조직 육성을 통한 산지유통체계 개선 여건마련

□ 생산자조직과 유통시설 확충으로 산지유통기반 구축

- 주산지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조직 확대
 - 작 목 반 : ('93년) 17,377개소 → ('96) 23,383개
 - 영농조합법인·회사법인 : ('93년) 796개소 → ('96) 4,799개
- 산지에서 선별·포장 및 규격품 출하를 위한 시설 확충
 - 간이집하장 : (계획) 4,000개소, (실적) 3,032개소 (76%)
 - 농산물포장센터 : " 160 " , " 49 " (31%)
 - 미곡종합처리장 : " 400 " , " 220 " (55%)
- 농업인의 식품가공업 참여확대로 전통식품개발 및 소득향상 기여
 - '96년까지 1,231개소지원 (연 매출액 4,533억원)

□ 품목별 특성에 따라 규격화·계열화·브랜드화가 진전

- 쌀은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브랜드화와 직거래가 활발
 - 미곡종합처리장 유통량 : ('93) 3.1% → ('96) 19.7%
 - 군단위이상 브랜드 등록 : ('93) 2건 → ('96) 44건
- 축산물은 생산·도축·브랜드 판매의 일관유통체계 진전
 - 브랜드 현황 : 한우(49개), 돼지고기(46개), 닭고기(18개), 계란(68개)
- 과실류, 시설채소류의 포장화 정착
 - 포장화율 : 사과 85.8%, 배 98.6%, 감귤 99.0%, 오이 98.6%

나. 소비지 유통의 경쟁 및 공정거래 여건 조성

□ 소비지 유통시설 투자 확대로 유통경로간 경쟁분위기 확산

- 대량 신속거래를 할 수 있는 공영도매시장·공판장 건설
 - 공영도매시장 : (계획) 34개소, (실적) 14개소 개장 (41%)
 - 농산물공판장 : (계획) 67개소, (실적) 50개소 개장 (75%)
- 농협·축협 등 생산자조직의 직판점을 확대하고 다양화
 - 농협 : 하나로클럽(7개), 직판장(213) 등
 - 축협 : 한우전문판매장(147개), 목우촌(24) 등
- 공영도매시장·공판장 등 제도권 시장 유통비율 확대
 - 제도권 시장 유통 : ('93) 33% → ('95) 43%

□ 공영도매시장의 거래질서 개선

- 전품목 상장거래 실시로 도매시장 상장거래 비율확대
 - 가락동도매시장 상장거래 비율 : ('93) 79% → ('95) 94%
 - '95년 무·배추 등 “경매가 어렵던” 품목의 상장경매 실시
- 산지수집상 등록제 실시로 거래의 투명화 및 불법위탁거래 격감
- 상장수수료 인하로 농업인 부담 경감
 -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1~1.5%P 인하, 대전 도매시장 0.5%P 인하

다. 우수 농산물의 차별화를 위한 제도정착

- 품질인증제 확대로 농산물 품질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
 - 품질인증 물량 확대 : ('93) 3만톤 → ('96) 12만톤
 - 비인증품 보다 10~15% 고가거래
- 원산지표시제 강화로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가 진전
 - 대상품목 확대 : ('93) 189개 → ('96) 358개
 - 원산지표시 이행율 : ('93) 49.7% → ('96) 89.7%
- 육류도체등급제 실시로 고급육 생산유도
 - '95년 서울·광역시, '96년에는 전 도축장(82개소)으로 확대
 - 한우의 1등급 출하율 확대 : ('95) 12.8% → ('96) 18.3%

라. 유통정보 체제구축과 민간유통 활성화 여건 마련

- 유통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수집·분산체제의 정비
 - 농림수산정보센터를 주축으로 농업관련 통합정보 네트워크를 구축
 - 농업관측정보의 수시 제공과 함께 월보체제확립 ('96.9)
- 쌀값의 계절진폭제 실시로 민간유통 활성화
 - 쌀값계절진폭 : ('93) 3.2% → ('96) 14.1%
 - 양곡년도말 민간재고비율 : ('93) 12.1% → ('96) 14.5%

산지가격은 상승 한데 소비자가격 상승율은 둔화

- 농가판매가격 : ('91-'93) 연 4.8% → ('94-'96) 연 7.4%
- 소비자가격 : ('91-'93) 연 7.1% → ('94-'96) 연 3.2%

농산물 가격진폭 완화 : ('91-'93) 연 7.6% → ('94-'96) 연 6.0%

2. 추진상 문제점

- 생산자조직과 산지시설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공동출하, 공동계산과 대량 규격상품 출하체제 미흡
 - 농가별로 출하함에 따라 하역·경매시 따로 취급해야 하므로 유통비용이 많이 들고 속박이 등 불공정행위가 상존
 - * 속박이 비율 : 사과배 10~15%, 오아·호박 20~25%. 딸기·참외 30~40%
 - 포장센터, 간이집하장, 산지가공공장 등 산지유통시설은 생산자의 조직화가 미흡하고 경영능력 부족으로 시설 활용도가 낮음
 - * 간이집하장 연간 이용일수 69일, 산지가공공장 부실화 업소 142개소(14%)

- 공영도매시장 건설지연과 유통경로간 경쟁체제 미비
 - 당초 '98년까지 34개 개장 예정인 공영도매시장 건설이 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지연
 -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여 유통단계를 축소할 수 있는 물류센터 중심의 직거래체제가 미구축

- 도매시장의 거래제도에 대한 운영개선 필요성 제기
 - 일부 도매시장의 형식적 기록상장행위 등 불공정행위가 있어 경매에 대한 불신 상존
 - 이미 도매시장 상장을 거친 물량이 중소도시도매시장에 재반입되어 경매되는 문제 발생

- 실질적인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 미흡
 - 농업관측의 실효성이 낮고 출하조절을 담당할 품목별 생산자 조직 활동이 부진

Ⅲ. 여건변화와 추진목표

1. 국내외 유통여건 변화전망

- 농산물과 유통업 개방, 대형유통매장의 확산에 따라 산지 유통체계 재정립 절실
 - 국산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농산물도 공산품과 같이 산지에서부터 대량규격품 공급체계 구축필요
 - 국내에서 다량의 규격출하 농산물을 조달받지 못할 경우 과채류도 직수입으로 충당예상

- 물류비용절감이 농산물 가격경쟁력 제고의 핵심과제로 대두
 - 우리의 물류시스템은 물류선진국과 격차가 크고, 특히 농산물 물류비는 상대적으로 높아 개선여지가 큼
 - * 농산물 수출액 대비 물류비 19.4%
 -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농산물 하역기계화, 물류표준화 시급

- 유통경로 다원화에 따라 도매시장의 기능보완 필요
 -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의 확충과 대형업체와의 직거래 확산으로 유통경로간 경쟁이 치열해 질 것임.
 - 기존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대책이 필요

-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수요증대

2. 유통개혁대책의 추진목표

유통 선진화로 농업경쟁력 제고

- 생산자 : 상품고급화와 공동출하로 부가가치 확대
- 소비자 : 다원화된 구매경로에서 저가격·고품질품 선택
- 유통인 : 물류비 절감과 투명거래로 유통효율성 제고

2004년 주요지표

- 산지유통체계 확립 ⇒ 공동출하 80%, 채소 포장출하 90%
-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 ⇒ 물류비 40% 수준 절감
- 파렛트 적재출하율 50%, 하역기계화율 90% 수준으로 제고
- 유통경로다원화 ⇒ 도매시장50%, 물류센타25%, 직거래등25%
-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단계를 3~4단계로 단축
- 고품질 농산물 생산·공급 ⇒ 안전식생활 보장
-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수급안정체계 확립

IV. 분야별 대책

1. 산지유통체계 확립으로 공동출하·규격화 촉진

- 농협이 산지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체제구축
 - 단순공동출하에서 공동규격출하·공동계산체제로 발전
 - 공동출하비율(현재40%)를 2004년까지 선진국수준(80%)으로 제고
-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생산자조직 중심의 규격농산물 대량공급체제 구축

①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선정, 선진 산지유통모델 확산

- 주산지 지역농협, 전문농협을 산지유통 시범농협으로 선정
 - 대상품목 :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한 고랭지 배추, 양파, 마늘, 파, 고추 등 10개 품목
 - 대상농협 : ('97) 30개 (품목별 2~3개) → ('98) 100개
- 시범농협에 대해서는 시설 및 운영자금 집중지원
 - 집하장·포장센터 등 유통시설과,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계약재배·매취자금, 포장재 등 운영자금
 - 농협중앙회의 순회수집·냉장차량, 정보기기, 저리자금 등
- 21세기 선진화된 산지유통모델 정착
 - 계약에 의한 생산, 규격별·등급별 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 산지에서 규격품을 대량 확보, 출하조절로 가격교섭력 제고
 - 도매시장 뿐만아니라 물류센터·대형업체와 직거래
 - 품질관리사 도입('97년중 150명) 등으로 자율적인 속박이 근절 추진

2] 농협의 채소류에 대한 공동출하기능 강화

- 채소류의 계약재배를 통한 공동출하촉진 기금 조성 확대
 - 기금규모(정부 80%,농협 20%) : ('95~'96) 1,100억원 → (~'98) 3,000억원
 - 계약재배품목 : ('96) 무, 배추, 양파, 마늘, 파 → ('97) 고추 추가
- 중간상인의 포전매취와 가격 등락이 심한 무·배추 중심으로 계약재배를확대, 사전적인 수급조절 기능강화
 - 현재 무·배추 재배량의 10% 수준에서 20% 수준까지 확대
- 농협의 순회수집 및 공동출하 완전 정착
 - 순회수집 우수조합에 대한 냉장차('97년 80대), 유통저리자금 지원

3] 산지 우수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강화

- 작목반·영농조합법인의 규격출하정도와 조직규모를 평가, 우수조직 위주로 자금을 집중지원
 - 지원대상자금: 공동규격출하, 포장재보조, 생산유통 지원사업 등 ('97년 6,400억원)
 - 규격출하 최우수조직 : ('96) 659개→('97) 1,000개→ (2004) 전조직
 - 공동계산 작목반 육성 : ('96) 12개 → ('97) 300개 → (2004) 전작목반
- 소규모 작목반은 주산지 중심으로 규모화·정예화
 - 시설원에 첨단 농법 작목반 육성 : '97년 50개
- 농협과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의 협조체제 강화
 -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등을 중심으로 군단위 품목별 협의회 결성
 - 군단위 품목별 영농지도팀 운영 : ('96) 20개 → ('97) 40개 → (2004) 전 사군
 - 군단위 광역 브랜드 개발 (예 : 강진군, 영암군)
- 생산자조직과 지역농협을 초고속 정보망으로 연결, 생산 출하·가격등 농업경영에 관한 종합정보 교류
 - '97년에는 3개 품목, 9개 시군 42개 단협에서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4 농산물 포장센터, 미곡종합처리장, 축산물종합처리장을
대량규격품출하 거점으로 육성

- 농산물 유통의 주요 거점지역에 규격·브랜드화 촉진을 위한
산지유통시설을 집중 건설
 - 농산물 포장센터 : ('96까지) 49개소 →(2004) 160개소
 - 미곡종합처리장 : ('96까지) 220개소→(2004) 400개소
 - 축산물가공처리장 : ('96까지) × →(2000) 10개소

- 과실류·채소류는 농산물 포장센터, 청과물종합처리장을 거점으로
대량 포장규격출하 촉진
 - 파렛트, 지게차, 예냉시설, 정보기기 등을 지원하여 기능강화
 - 포장재, 원료구입자금 등 운영활성화 자금지원 추진
 - 포장센터 건설보조율 조정 : ('97) 60% → ('98) 50% 수준

- 쌀은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추진
 - 미곡종합처리장 쌀에 대한 이미지 제고로 안정적 판매망 확보
 -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은 관내 농협과 연계, 계열화 추진
 - 원료비 구입자금('97년 2,180억원) 등 운영활성화자금 지원 확대

- 축산물은 축산물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냉장유통체계 구축
 - 계약생산, 위생적인 도축·가공, 냉장육으로 자기상표를 붙여 자체
판매조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업체나 생산자조직을 선정
 - 축산물 종합처리장, 축협, 한냉의 브랜드 가맹점 지원 확대 ('97년
125개소 94억원)

5] 간이집하장과 산지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

- 활용도가 낮은 간이집하장은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시설을 보강하여 소규모 포장센타로 발전
 - 당초 4,000개소 건설 목표 축소 조정 (3,232개소)
 - 기존 간이집하장은 매년 200개소씩 포장기, 예냉시설 등 지원
 - 생산자조직이 자체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집하장도 포함
- 산지가공공장은 기존시설 확충과 경영개선에 주력
 - 성장이 유망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 시설현대화 등 추가 지원
 - 대기업과 경쟁이 어려운 업체는 주문자 생산방식(OEM), 반제품가공 납품 등으로 판로 확보
- 산지가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원방식 개선
 - '99년이후 산지가공공장건설 보조금 지원 중단
 - '98년에는 국고보조율 축소 : ('97) 40% → ('98) 30%
 - 산지가공업체에 대한 운영자금('97년 770억원) 지원방식 개선
 - (현재) 시설지원받은 업체 →(개선) 농업인이 운영하는 산지가공업체

6] 유통전문 농업회사법인과 민간 유통회사에게도 산지유통 시설 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자조직의 기능을 보완

- 생산과 출하유통을 겸업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과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타 등 설치지원
 - 수집상 등 민간유통업체에 의한 규격농산물 출하 촉진
- 장기적으로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을 축소하여 경쟁여건을 조성

2.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용 절감

- 포장규격, 수송·하역장비, 물류시설, 상품코드 등을 물류 표준화체제에 맞게 정비
-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일관수송·하역기계화체제를 구축하여 농산물 물류비 40% 수준 절감
 - 파렛트 적재출하 비율은 50%, 하역기계화율은 90% 수준으로 제고

7] 포장시설·장비를 단위화물적재시스템 (ULS : Unit Load System)에 맞게 정비

- 농산물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1100×1100mm)에 맞게 재정비
 - 무·배추·사과 등 이미 표준규격이 정비된 20개품목은 보급 확대
 - 산지작목반 등에 135백만매 보조 ('97년 131억원)
 - 미정비된 74개 농산물의 포장규격은 ULS체제에 맞게 금년내 정비완료
 - 소비자 기호에 맞는 소포장(1단포장) 표준 포장규격 및 디자인 개발
- 단위적재시스템(ULS)규격에 맞는 차량개조 및 보급
 - 농협보유차량(4,500대)부터 표준파렛트 규격에 맞춰 차량개조
 - 차량개조 촉진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 농협에서 구입하는 순회수집 차량은 ULS규격에 맞는 광폭탑차를 확보토록 조치
- ULS 체제에 맞는 저온저장고 등 산지유통시설 표준화 모델 개발 및 기존시설 개보수 추진

8 산지에서부터 무·배추 등 농산물의 포장출하 촉진

- 가락동, 구리, 안양시장을 대상으로 배추, 수박에 대해 포장출하 시범사업을 추진
 - 배추포장재 23.5백만매, 수박포장재 800만매 보조 ('97 : 68.5억원)
 - 연차적으로 전국 도매시장과 무, 파 등 타품목으로 확대
- 포장출하품과 비포장출하품의 차별화 촉진
 - 포장품에 대한 상장수수료·하역료 인하, 청소비 면제 등 우대
 - 쓰레기유발부담금 인상 및 쓰레기종량제 도입 ('97.4) 등
- 무·배추 등 채소류의 가공처리 유도
 - 현 15%인 공장김치 유통비율을 2004년 50% 수준으로 제고
 - 채소류 주산지에 세척·포장, 가공 등 처리시설 지원

9 파렛트 적재출하와 기계화 하역의 일관체제 구축

-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의 파렛트적재 일관 수송·하역 추진
 - 산지 포장센터, 생산자단체, 도매시장·공판장에 파렛트(10만매)와 지게차(175대) 등 구입자금 지원 ('97 : 70억원)
 - 하역기계화를 도매시장 평가시 우선과제로 부여, 평가
- 가락·구리·안양시장을 하역기계화 시범 도매시장으로 지정, '97년에 집중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 가락시장 하역인원 감축을 위한 자금지원
- 효율적인 파렛트의 회수관리를 위해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 농협을 중심으로 구축하거나 한국파렛트풀(주)와 연계방안 마련

10 농산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정보망 구축

- 농산물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산지의 포장센타·미곡종합처리장 등과 소비지의 대형유통업체와의 전자 상거래 시스템 구축
-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표준화
 - 유통업체별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농산물 상품코드 표준화
 - 거래전표, 장표, 데이터항목 표준화
- 도매시장정보망과 농산물 물류정보망을 연결하여 경락가격과 반입물량등 시황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체계 구축

11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투자확대 및 제도정비

- 파렛트 보급, 기존시설 개보수, 하역기계화 장비 지원 확대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농산물 물류표준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포장규격, 시설·장비 및 정보의 표준화 작업을 금년중 완료
 - 농림부차관을 위원장으로 생산자단체, 시장 및 물류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농산물물류표준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 농산물물류표준화 실무작업반을 설치하여 실무작업 추진
- 농산물 물동량, 물류비 및 유통마진의 체계적인 조사체제 구축
 -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물류조사 기능 강화

3.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투명거래 정착

- 소비지 유통시설의 다원화로 유통경로간 경쟁체제 구축
 - 2004년 시장점유율 : 도매시장 50%, 물류센타 25%, 직거래 등 25%
-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선진화된 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유통단계를 5~6단계에서 3~4단계로 단축

가. 도매시장, 물류센타, 직거래 등 다양화된 유통경로 확보

12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개장

-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개장
 - ('97년까지) 18개소 → (2001년) 34개소 개장
- 특히,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물량의 수집과 분산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도권 거점지역에 도매시장 건설 촉진
 - 구리-안양-안산도매시장 1997년, 서울 서남권 도매시장 2000년 개장
- 건설지연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개장시기 조정

13 주문거래·통명거래가 가능한 물류센타 건설

-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비지 유통시설인 물류센타 16개소 건설
 - ('98년까지) 4개소 → (2001년) 10개소 → (2004년) 16개소 개장
- 물류센타를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 대형 물류센타 운영방식 다양화
 - 현 1개 사업자 운영방식 (컨소시엄포함)에서 다수회사의 영업도 허용

14 물류센타를 통한 새로운 거래체계 개발

-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와 판매망을 구축하고 산지생산자 조직과 구매선 확보
 - 물류센타 전속 출하조합 육성 ('97년 50개)
- 생산자조직·판매처와 물류센타, 물류센타 상호간 예약출하·주문구매를 할수 있는 유통정보 시스템 개발
- '98년부터 개장되는 물류센타에 정책자금 지원 추진
 - 물류센타에 출하촉진자금, 매취자금 등 지원
 - 물류센타 출하자에게 규격출하자금, 포장재 등 지원

15 산지 생산자조직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촉진

- 산지 농산물포장센타,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추진
 - 농산물 포장센타 유통비율 : ('96) 5% → (2004) 20%
 - 미곡종합처리장 유통비율 : ('96) 19% → (2004) 40%
 - 축산물종합처리장 유통비율 : ('96) × → (2004) 30%
- 농협, 축협 등 생산자조직의 유통시설을 소비자 선호 추세에 맞게 대형화, 전문화
 - 농협하나로 플라자(클럽) : ('97) 20개 (7) → (2002) 150개 (16)
 - 한우전문판매점(축협) : ('96) 450개(147) → ('99) 770개
- 산지와의 직거래 촉진을 위한 민간대형유통업체 지원검토
 - 산지 작목반 등으로 부터 규격상품 구입시 지원
 - 가격안정 효과가 적은 저장·가공업체의 수매자금 축소

나. 도매시장 공정거래 질서 정착추진

16 형식적 기록상장의 단속과 상장거래가 어려운 품목은 예외 제도 활용

- 형식적인 기록상장 등 편법거래시 도매법인 재지정이나 중도매인 허가취소
- 현 중도매인이 경매를 상습적으로 기피하는 경우, 중도매인을 신규 허가하여 실질적인 경쟁유도
- 지방도매시장에서도 상장경매가 부적합한 품목은 상장예외 제도 적극활용
 - 현재는 가락도매시장만 상장예외제도 운용 : 건고추,우엉,갓,취나물,고사리,도라지,고추잎,도토리,유채 등 61개

17 다른 도매시장의 상장을 거쳐 재반입된 물량의 경매제도 보완

- 다른 도매시장의 상장을 거쳐 재반입이 필요한 경우, 도매법인 간의 거래를 활용
 - 도매법인이 산지·타도매시장법인 (또는 중도매인)·공판장으로부터 물량을 매입하여 수의매매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 도매법인(현60개)간 유통정보망을 구축하여 공영도매시장간 물량이동 필요에 신속하게 대처
- 상장경매가 곤란한 품목은 중도매인의 상장예외 거래허용
- 재반입된 물량에 대한 경매의 지속여부는 도매시장의 경매제도 확립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 장기과제로 검토

18 전산경매 실시와 경매결과 즉시공개로 경매의 공정성 제고

- 전산경매 시범도매법인 선정·운영하고 그 성과를 보아 확대
 - '97년중 선별·규격포장화가 되어있고, 거래단위가 큰 감귤, 사과, 배 등 시범실시 (가락시장)
- 전광판 설치로 경매결과를 즉시 공개하여 경매의 투명성 제고
 - '97년중 각 도매시장 법인별로 5개품목이상 실시 (가락시장)

19 도매시장의 운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 도매시장별 자체발전 계획 수립 추진
 - 도·소매기능 분리, 주차시설 확충, 하역기계화, 저온저장시설 등 시설 보완
- 도매시장내 적정 도매법인수를 유지, 규모화
 - 기존 도매시장은 평가결과 경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하여 재지정시 제외
 - 신규로 개설되는 도매시장은 규모에 따라 청과도매법인 2~4개 지정
- 영세 중도매인(현 6,500명)을 통합하여 법인화 유도
- 도매법인·수집상 출하촉진자금 지원확대 ('97년 800억원)

20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 도매시장 평가내용을 2단계 유통개혁대책에 연계, 보완
 - 하역기계화, 중도매인 감축 등 도매시장 고비용구조 타파노력
 - 규격출하품 출하실적, 규격포장출하품 우대노력 등
- 우수도매법인에 대한 출하자금 지원시 우대방안을 강화하고, 부진한 법인에 대해서는 도매법인 재지정 제외 등 제재

4.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안정식생활 보장

- 안전성 조사강화, 품질인증제의 확대, 원산지표시제 및 식육구분판매제 강화로 국산 농산물의 차별화 정착
-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등 농산물 품질관리체제 정비

21 생산·유통 단계에서 안전 및 품질저해요소 발굴, 차단

- 품목별 안전성 점검 단계를 설정, 잔류농약·항생물질·중금속 등 조사 강화
 - 조사대상 : ('97) 51품목 3,000점 → (2004년) 전품목
 - 미곡종합처리장·도축장·공판장·도매시장등 주요 유통경로에서 수거·조사
- 잔류농약 간이조사제 도입으로 생산자조직의 자율적 검사 추진
 - 개장되는 물류센타에 간이 안전성조사팀 운영
 -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정밀조사 실시
- 유통과정에서 신선도 유지를 위해 냉장유통체제 구축
 - 산지유통시설에 예냉장비(강제통풍, 진공, 수냉식 등) 지원
 - 기존 도매시장에 규모별로 저온시설·저온냉장시설 설치확대
 - 예냉에 맞는 포장자재 기술개발, 냉장차량 보급 추진
- 축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 System)도입 (2000년)
 - 사육단계에서부터 도축, 가공, 유통, 판매 단계별로 위해요소 발굴 제거
 - '97년말까지 일반도축장 수준의 시설개선을 못한 간이도축장 폐쇄
 - 전국도축장수 : 118개소 (간이도축장 35개소)

22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

- 농가대상 품질인증에서 생산자조직 대상 인증으로 전환
 - 품질인증관리 우수 생산자조직을 발굴, 자율인증 확대
 - 속박이 등 불공정거래 발견시 인증취소, 포장재보조 중단 등 제재
- 품질인증기준 객관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 장기적으로 민간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선정, 품질인증 위탁

23 국산농산물 차별화제도 정착

- 원산지표시제 대상품목확대 및 단속의 효율성 제고
 -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품목 : ('96) 358 → ('97) 404개 품목
 - 명예감시원 (1,004명)적극 활용으로 소비자 감시체제 구축
 - 표시방법 개선 : 시·군까지 표시 → 국산으로 표시 (시·군표시는 자율)
- 지리적표시제 도입('98.7.1)으로 지역농산물 차별화 노력 유도
 - 지역특산품(예 : 고려인삼)의 생산자와 관련 산업을 국내외적으로 보호
- 식육구분 판매제도 정착추진
 - 품종별, 부위별, 등급별 구분 판매제도 의무화 ('97.1)
 - '97년까지 식육처리기술훈련기관을 건립, 식육위생처리교육

24 농산물 품질관리체제 정비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중 품질관리 부분과 『농산물검사법』을 통합,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추진('98년)
- 농산물검사소를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조직개편
 - 농축산물 안전성, 원산지표시, 품질인증, 지리적 표시관련 업무담당
- 농산물 품질의 등급을 객관적으로 판정하는 『농산물품질 등급판정사』 제도 도입 검토

5. 생산자조직에 의한 수급안정체제 확립

- 생산·출하조정을 자기 책임하에 할 수 있는 생산자조직 육성과 농업관측 강화로 사전적인 가격안정제도 정착
- 과잉생산시 산지폐기, 정부·민간수매, 출하조절 등을 통해 사후적인 가격안정대책도 내실화

25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의 육성

- 전국적인 농업관측과 생산조정,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 (예 : 참다래, 우리밀, 양계, 양돈) 육성
 - 농협의 17개 품목별 전국협의회 기능 강화 및 협의회 확대
 - 무·배추, 고추, 시설원예 등 전국협의회 결성추진
 - 생산자조직과 관련된 수급안정 자금은 품목별로 통합(3,000억원 수준) 지원
- 전국 및 지역의 우수생산자조직에게 가격안정사업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지원 추진
 - 자조금 보조기준 (50/100범위내) 상향조정 및 대상품목 확대
- 장기적으로 전국 생산자조직에게 정부수매사업 위탁 검토

26 품목별 농업관측체제 강화로 농업관측의 내실화

- 품목별로 재배의향, 씨앗판매동향, 재배면적, 시기별 작황, 생산량, 저장량 등을 단계별로 조사, 농업인에게 적시제공
 -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분석기능 강화(품목별 전문가 양성)
 -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의 해당품목 농업관측 기능 수행
- 재배의향 조사에 지역별, 주산지별 조사 추가, 정확도 제고
 - 주요품목에 대한 「품위별」 생산량도 조사, 시장예측력 제고

27 송아지의 안정생산과 쌀에 대한 약정수매제 실시

-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99년)로 쇠고기의 30%이상 국내 자급기반 마련
 - 송아지 거래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지원
 - 송아지 생산안정 재원 4,000억원(축발기금 3,600억원) 확보
- 쌀 약정가격과 수매물량 사전제시로 계획영농과 안정소득 보장

28 과일생산시 사후적인 가격안정대책 내실화

- 품목별 특성에 따라 출하조정(산지폐기), 정부수매, 저장가공업체 지원 등을 통해 수급 안정
 - 채소류는 수확이전 폐기와 수확후 수매 병행 추진
 - 과일류는 저장·가공업체 수매자금 지원
 - 축산물은 적정가격보다 하락시 정부 직접수매나 민간수매지원
- 출하조정(산지폐기) 가격은 최저가격에서 폐기시기부터 수확기까지의 미투입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
 - 산지폐기자금 ('97년 100억원)
- 전국 공영도매시장간 정보망을 구축하여 생산자의 출하량 조절
 - 금년중 전국 13개 공영도매시장간 정보망 구축
 - 현재 건설중인 도매시장은 개장 즉시 연결

29 출하예약제를 도입하여 단기시장가격 진폭 완화

- 가격진폭이 특히 크고 단일 출하주 물량이 많은 품목부터 실시
 - '97년 : 배추, 상추, 시금치등
 - 출하 2-3일전에 도매시장법인에 출하량을 전화, PC등으로 예약
- 출하예약 없이 출하하는 경우는 판매 후순위 조정 또는 출하 장려금 미지급 등 불이익 조치

30 수급안정효과 극대화를 위한 농안기금의 운용제도개선

- 품목별 생산자조직 중심의 자율적인 가격안정사업 추진지원
- 사업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 생산자조직간, 도매법인간, 포장센터간 평가, 차등지원
- 유사사업 통폐합 등 사업자가 편리하도록 지원체계 정비

2004년 농산물유통모습

< 유통주체별 대책 >

기 대	대 책 내 용
[생 산 자]	
○ 수취가격 제고	○ 산지의 선별·포장·가공지원 ○ 물류표준화·하역기계화 ○ 대형매장과 직거래체제 구축
○ 다양한 판로	○ 도매시장·물류센타·공판장확충 ○ 상장경매정착, 전산경매제 실시
○ 안정가격 보장	○ 농업관측강화, 품목별 조직 육성 ○ 출하조정, 산지폐기
[소 비 자]	
○ 저렴한 가격	○ 물류표준화·하역기계화 ○ 산지와 직거래 체제구축
○ 고품질 농산물	○ 안전성조사, 원산지표시제, ○ 브랜드유통체제 구축
○ 편리구매	○ 대형유통업체 확산 ○ EDI 거래체제 구축
[유 통 인]	
○ 적정이윤	○ 규격품 유통 취급물량확대 ○ 도매법인·중도매인 규모화
○ 물류비용절감	○ 하역기계화·물류표준화 ○ 규격품 출하체제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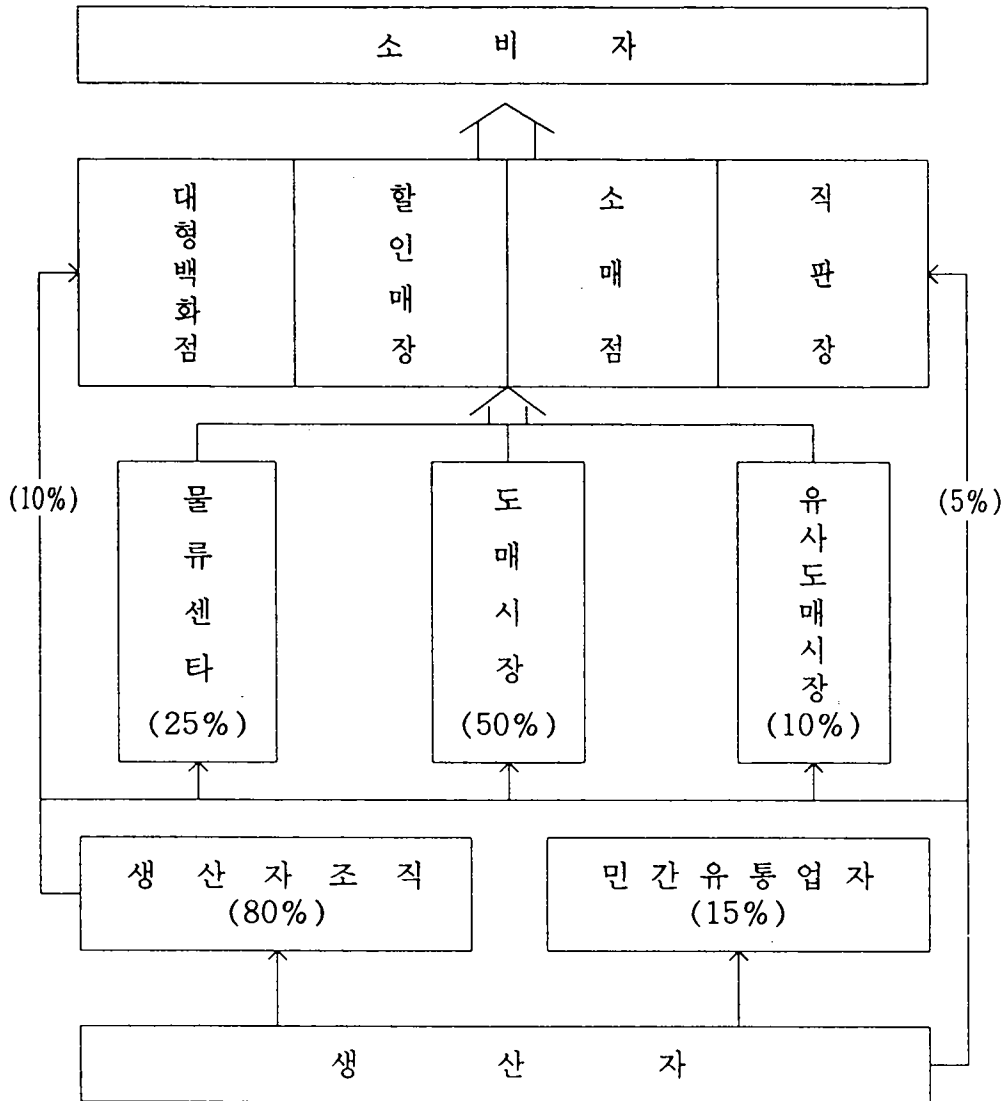
〈 유통단계 축소와 물류비 절감 〉

- 산지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산지유통시설을 거점으로 농산물이 공산품과 같이 규격화·브랜드화하여 대량 출하
 - 마곡종합처리장출하비율 : ('96) 19% → (2001) 30% → (2004년) 40%
 - 축산물종합처리장유통량 : ('96) - → (2001) 30% → (2004년) 30%
 - 채소포장출하비율 : ('96) 10%미만 → (2001) 70% → (2004년) 90%
 - 균질품질포장비율 : ('96) 10%미만 → (2001) 50% → (2004년) 70%

- 소비지 주요거점에 34개도매시장과 16개 물류센타가 개장되고, 산지 생산자조직과 대형 유통업체와의 직거래 체제가 구축됨으로써 출하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물류센타를 중심으로 농산물 유통 단계가 현행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 도매시장 출하비율 : ('96) 43% → (2001) 50% → (2004년) 50%
 - 물류센타 출하비율 : ('96) - → (2001) 15% → (2004년) 25%
 - ※ 예약출하 비율 : ('96) - → (2001) 30% → (2004년)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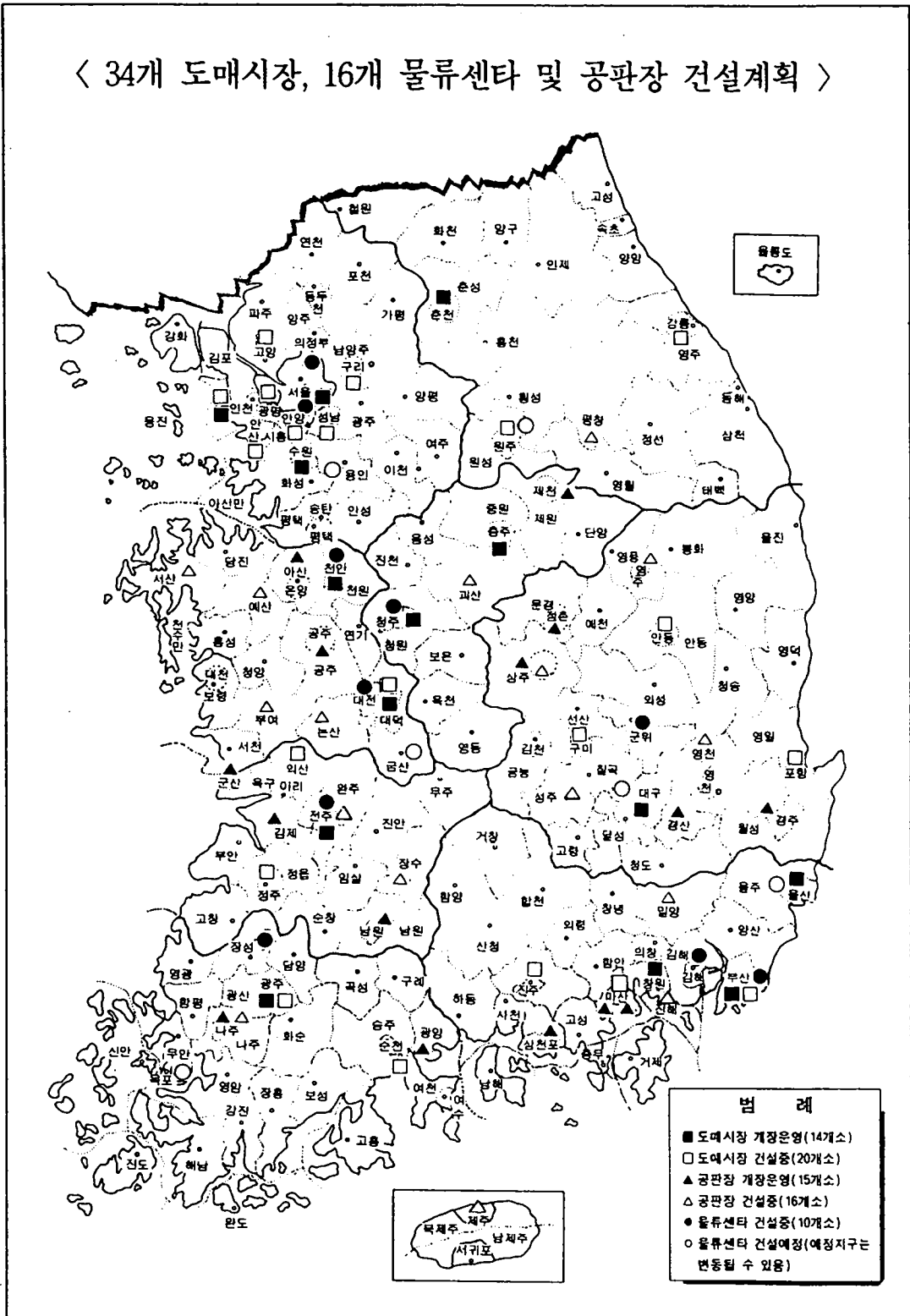
- 출하된 대량의 규격품이 파렛트에 의해 소비지시장까지 수송, 지게차에 의해 하역되고 파렛트별로 경매, 소비지 대형유통매장까지 운반된후 진열·판매되는 일관체제가 구축됨으로써 물류비용을 40% 수준 절감
 - 파렛트적재 출하 : ('96) - → (2001) 30% → (2004년) 50%
 - 하역기계화 이용 : ('96) - → (2001) 50% → (2004년) 90%

< 2004년의 농산물 유통모델 >



※ 물류센터 중심으로 유통단계를 현행 5~6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 34개 도매시장, 16개 물류센터 및 공판장 건설계획 >



V. 과제별 추진체계

(총 90개사업 : ★신규 43개, ○계속16개, * 기존대책보완 13개, ▲ 1단계 보완 18개)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1.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선정, 선진유통모델 확산			
1-1 주산지 산지유통시범농협 선정(★)	유통정책과	-	농 협
1-2 시설 및 운영자금 집중지원(★)	유통정책과 (채소,과수)	-	농 협
1-3 자율적인 속박이 근절(★)	-	-	농 협
2. 농협의 채소류에 대한 공동출하기능 강화			
2-1 채소류 계약재배 기금조성 확대(▲)	채소과	-	농 협
2-2 무·배추 중심의 계약재배(▲)	채소과	-	농 협
2-3 농협의 순회수집 완전정착(★)	-	-	농 협
3. 우수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원강화			
3-1 우수조직 위주로 정책자금 집중지원(○)	유통정책과 (채소,과수,농협)	시·도,시·군	-
3-2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협조 체제 강화(★)	-	-	농 협
3-3 작목반과 지역농협의 초고속정보망 연결(*)	통계정보	-	농 협
4. 대량규격품 출하 거점육성			
4-1 농산물포장센터중심의 대량포장규격출하 촉진(▲)	시장과	시·도,시·군	농 협
4-2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직거래(○)	식량관리과	시·도,시·군	농 협
4-3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냉장유통 체제 구축(○)	축산물유통과	-	축 협
5. 산지유통시설 운영활성화			
5-1 간이집하장의 포장센터화(▲)	시장과	시·도,시·군	농 협
5-2 산지가공공장의 시설확충 및 경영개선(▲)	가공산업과	시·도,시·군	-
5-3 산지가공업체 지원자금 지원방식 개선(*)	가공산업과	시·도,시·군	-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6. 민간유통회사에도 산지유통시설자금지원			
6-1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등 지원(★)	시장과	-	-
6-2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축소(★)	시장과	-	-
7. 포장·시설·장비를 ULS에 맞게 정비			
7-1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에 맞게 정비(★)	유통정책 (농검)	-	-
7-2 ULS규격에 맞는 차량개조 및 보급(★)	유통정책	-	-
7-3 산지유통시설 표준화 모델개발 및 기존시설 개보수(★)	시장과	-	-
8. 산지에서부터 무·배추 등 농산물의 포장 출하			
8-1 배추·수박 포장출하 확대(▲)	유통정책	시·도	농 협
8-2 포장출하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화(▲)	유통정책 (시장과)	시·도 (도매시장)	
8-3 무·배추 등 채소류의 가공처리 유도(★)	가공산업과	-	-
9. 파렛트 적재출하와 기계화 일관체제 구축			
9-1 파렛트, 지게차 등 구입자금 지원(*)	유통정책과	시·도	농 협
9-2 가락시장 하역인원 감축(★)	시장과 (유통관리)	서울시	-
9-3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유통정책과 (시장과)	-	농 협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10.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물류정보망 구축			
10-1 농산물물류센타 중심의 EDI거래체제 구축(★)	통계정보	시·도,시·군 (물류센타)	농 협
10-2 EDI를 위한 정보표준화(★)	통계정보	-	-
10-3 도매시장 정보망과 농산물 물류정보망 연결(★)	통계정보 (시장과)	시·도, 시 (도매시장)	-
11.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			
11-1 물류표준화 장기투자계획마련(★)	유통정책	-	-
11-2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		-	유통공사
11-3 농산물 물동량, 물류비 및 유통마진 조사(★)	유통정책	-	유통공사
12.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개장			
12-1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개장(○)	시장과	시·도, 시 (도매시장)	-
12-2 수도권 거점지역에 도매시장 건설 촉진(▲)	시장과	서울,경기	-
12-3 건설지연 도매시장에 대한 대책(▲)	시장과	시·도, 시	-
13. 주문·통명거래가 가능한 물류센타 건설			
13-1 물류센타 16개소 건설(○)	유통정책과	시·도,시·군	-
13-2 물류센타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유통정책과 (건설교통부)	-	-
13-3 물류센타 운영방식 다양화(▲)	유통정책과	-	-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14. 물류센타를 통한 새로운 거래체계 개발			
14-1 물류센타의 판매망 구매선 확보방안(★)	유통정책과	-	농 협
14-2 유통정보시스템 개발(★)	통계정보처리	-	농 협
14-3 물류센타에 정책자금 지원방안(★)	유통관리과	시·도,시·군	농 협
15. 생산자조직과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촉진			
15-1 농협 소비자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	시·군	농 협
15-2 축협 소비자 판매장 확대 및 다양화(○)	-	-	축 협
15-3 소비자 민간대형유통업체 지원방안(★)	유통관리	-	-
16.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 정착			
16-1 형식적 기록상장 근절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6-2 중도매인 신규허가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6-3 지방공영도매시장 상장예외제도 활용 방안 (*)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7. 다른 도매시장에 재반입된 물량의 경매 제도 보완			
17-1 도매법인간 거래활용 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7-2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 허용(○)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7-3 장기적으로 재반입 물량에 대한 경매지속 여부 검토(★)	시장과	-	-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18. 경매의 공정성 제고			
18-1 전산경매 시범도매법인 선정(▲)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8-2 전광판 설치로 경매결과 즉시공개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9. 도매시장의 운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			
19-1 도·소매분리 등 자체 발전계획수립(▲)	시장과	시·도, 시	-
19-2 도매시장내 적정도매법인수 유지, 규모화방안(★)	시장과	시·도, 시	-
19-3 영세 중도매인 통합, 법인화 유도방안(★)	시장과	시·도, 시	농 협
19-4 출하촉진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방식 개선(★)	시장과	-	-
20.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20-1 도매시장 평가내용 보완(○)	시장과	-	유통공사
20-2 도매시장 평가결과 반영 강화방안(▲)	시장과	시·도, 시	-
21. 생산유통단계에서 안전 및 품질저해요소 발굴, 차단			
21-1 품목별 안정성 검사강화 방안(*)	유통관리과	시·도,시·군	-
21-2 잔류농약 간이조사제 도입(★)	-	-	농 협
21-3 Cold Chain System 구축방안(★)	유통정책과	-	농 협
21-4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	가축위생과	-	축 협
21-5 간이도축장 폐쇄(○)	가축위생과	시·도,시·군	-
21-6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	축산물유통과	-	축 협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22.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			
22-1 농가대상 품질인증에서 생산자조직 인증으로 전환(★)	유통정책과 (농검)	-	농 협
22-2 품질인증 객관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유통정책과 (농검)	-	-
22-3 민간단체에 품질인증 위탁(★)	유통정책과 (농검)	-	-
22-4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도입(★)	유통정책과 (농검)	-	관련협회
22-5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가공산업과	-	-
23. 국산농산물 차별화제도 정착			
23-1 원산지표시 단속 효율성 제고(○)	유통관리 (농검)	시·도,시·군	-
23-2 지리적 표시제 도입(★)	유통관리	-	-
23-3 식육구분 판매제 정착(○)	축산물유통	시·도,시·군	-
24. 농산물 품질관리 체제정비			
24-1 품질관리법 제정 추진(★)	유통관리	-	-
24-2 농검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	유통관리 (농검)	-	-
24-3 농산물 품질등급판정사 도입(★)	유통정책	-	-
25.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 육성			
25-1 전국적인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할수 있는 전국생산자조직 육성(▲)	유통정책 (과수,채소,원특, 인력과)	-	농 협
25-2 손실보전을 위한 자조금 제도개선(*)	유통정책과 (채소과,무역 진흥과,농정 기획과)	-	농 협
25-3 전국생산자조직에게 정부수매사업 위탁(★)	유통관리과	-	농 협

과 제	관 련 부 서		
	중 앙	지 방	단 체
26. 품목별 농업관측 강화			
26-1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 강화(▲)	채소과	-	농 협
26-2 KREI에 품목별 전문가 양성 (▲)	채소과	-	KREI
26-3 재배의향조사시 주산지별 추가조사(★)	유통통계	-	-
27. 송아지 안정생산과 쌀 약정 구매제			
27-1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축산물유통과	-	-
27-2 쌀 약정구매제(*)	식량정책과	시·도,시·군	-
28. 과일생산시 사후가격안정대책 내실화			
28-1 채소류 산지폐기, 구매개선방안(*)	채소과	-	-
28-2 과일류 저장, 가공업체 구매개선방안(*)	과수화훼과	-	-
28-3 축산물 구매 및 가격안정방안(*)	축산물유통과	-	-
28-4 산지폐기가격 산정방안(★)	유통정책과 (채소과)	-	-
28-5 전국공영도매시장 정보망구축(○)	시장과	시·도, 시	-
29. 출하예약제 도입방안(★)	시장과	시·도, 시	-
30. 농안기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유통관리과	-	-

여 백

Ⅱ. 2단계대책 사업별 세부추진계획 내용

1. 산지유통체계 확립으로 공동출하·규격화 촉진
2.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용 절감
3.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투명거래 정착
4.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안전식생활 보장
5. 생산자 조직에 의한 수급안정체제 확립

여 백

목 차

1. 산지유통체계 확립으로 공동출하·규격화 촉진	49
1-1,2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육성, 선진유통모델 확산	51
1-3 자율적인 속박이 근절	58
2-1,2 채소류 계약재배사업 확대	61
2-3 순회수집 완전정착	64
3-1 우수조직 위주로 정책자금 집중지원	68
3-2 농협과 생산자조직과의 협조체제 강화	75
3-3 시설채소 작목반의 초고속 정보망 구축	78
4-1 농산물 포장센터 중심의 대량포장 규격출하 촉진	81
4-2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직거래	84
4-3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냉장육 유통체제 구축	89
5-1 간이일반집하장의 포장센터화	93
5-2,3 산지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	95
6-1 민간 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 지원	100
6-2 생산자조직과 민간 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축소	102
2.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용 절감	105
7-1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에 맞게 정비	107
7-2 ULS규격에 맞는 차량개조 및 보급	110
7-3 포장센터 표준화 모델 개발	113
8-1 배추·수박 포장출하 확대	115

8-2	포장출하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화	119
9-1	파렛트·지게차 구입자금 지원	123
9-2	가락시장 하역인원 감축	127
9-3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129
10-1,2,3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정보망 구축	132
11-3	농산물 물동량 물류비 및 유통마진 조사	135

3.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투명거래 정착

12-1,2,3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개장	143
13-1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147
13-2	물류센터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150
13-3	물류센터 운영방식 다양화	153
14-1	물류센터의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155
14-2	유통정보 시스템 개발	157
14-3	물류센터에 정책자금 지원방안	160
15-1	농협 소비지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162
15-2	축협 소비지 판매장 확대 및 다양화	167
16-1	형식적 기록상장 근절방안	170
16-2	지방 공영도매시장 상장예외제도 활용	173
17-1	도매시장법인간 거래활용 방안	175
18-1	전자식 경매 시범 도매시장법인 선정	179
19-1	도매시장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83
19-2	도·소매 분리로 시장운영의 효율화	185
19-3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유지 및 규모화	188

19-4	영세 중도매인 통합·법인화 유도	190
19-5	출하촉진자금 지원방식 개발	192
20-1	도매시장 평가내용 보완	196
20-2	도매시장 평가결과 반영 강화방안	200
4.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안전식생활 보장	205
21-1	품목별 안전성 조사강화 방안	207
21-2	잔류농약 속성검사제 도입	211
21-3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방안	215
21-4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	218
21-5	간이도축장 폐쇄	220
21-6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	222
22-1,2,3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 강화	224
22-4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도입	229
22-5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	234
23-1	원산지표시 단속 효율성 제고	238
23-2	지리적 표시제 도입	242
23-3	식육구분 판매제 정착	245
24-1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추진	249
24-2	농검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	252
5.	생산자조직에 의한 수급안정체제 확립	255
25-1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육성	257

26-1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강화	267
26-2	품목별 농업관측 전문가 양성	272
26-3,4	작물재배의향 조사시 주산지별 조사 추가	274
27-1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277
27-2	추곡약정 수매제	279
28-1	채소류 산지폐기 개선방안	282
28-2	과실류 저장, 가공업체 수매개선 방향	284
28-3	축산물 수매 및 가격안정 방안	288
28-5	전국 공영도매시장 정보망 구축	290
29	출하예약제 도입	292
30	농안기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298

1. 산지유통체계 확립으로 공동출하·규격화 촉진

- 1-1,2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육성, 선진유통모델 확산
- 1-3 자율적인 속박이 근절
- 2-1,2 채소류 계약재배사업 확대
- 2-3 순회수집 완전정착
- 3-1 우수조직 위주로 정책자금 집중지원
- 3-2 농협과 생산자조직과의 협조체제 강화
- 3-3 시설채소 작목반의 초고속 정보망 구축
- 4-1 농산물 포장센터 중심의 대량포장 규격출하 촉진
- 4-2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직거래
- 4-3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냉장육 유통체제 구축
- 5-1 간이일반집하장의 포장센터화
- 5-2,3 산지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
- 6-1 민간 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 지원
- 6-2 생산자조직과 민간 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축소

여 백

I. 산지유통체계 확립으로 공동출하·규격화 촉진

1-1, 2. 산지유통시범농협을 육성, 선진산지유통모델 확산

1. 추진배경

- 농산물유통개선 의 핵심과제는 유통단계축소와 물류비 절감이며, 이를 위해서는 산지에서 대량규격 농산물출하 체제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이에 대한 기반 미구축
 - 농가단위 : 영세한 영농규모에 따른 소량생산과 농촌의 인력난으로 농업인의 유통참여 어려움
 - 작목반·영농조합법인 : 농가별 재배기술·품종의 다양화에 따른 품질격차, 공동체의식 부족으로 인한 농가별 출하·속박이 등으로 대량의 규격농산물 출하곤란
 - 1개차량당 경매건수 : 120 ~130건
 - 속박이 비율 : 사과·배 10~15%, 딸기·참외 30~40%
 - 산지농협 : 손실우려 있는 경제사업보다 안전한 신용사업위주 영업으로 농산물유통에 대한 참여 저조
 - 산지농협의 농산물유통 점유비율 : 40% 수준 (일본 80%수준)
 - 농협의 계약재배율 : 고랭지 배추, 마늘·양파·파 등 생산량의 5%수준

- 소규모 영농구조나 농업인의 공동체 의식 부족, 영세한 작목반·영농조합법인 및 대형유통업체주도의 소비지 유통여건변화 등을 감안할 때, 산지에서 대량의 규격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산지 농산물유통을 책임지고 추진필요

⇒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한 품목의 주산지 농협을 시범농협으로 선정하여 계약재배·공동출하·공동계산과 포장화·기계화·파렛트화 및 대형유통업체·물류센타와 직거래하는 선진유통모델을 정착하고, 이를 전 지역농협으로 확대

2. 추진방향

-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한 채소류 주산지농협을 중심으로 계약생산·공동출하비율이 높은 농협을 시범농협선정
- 시범농협에 대해서는 '97년부터 지원가능한 정부 및 농협의 각종시설·장비 및 운영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우선 지원대상사업을 계속 확대
- 시범농협은 발전단계에 따라 계약생산·공동출하·공동계산과 포장출하·하역기계화·파렛트화 및 물류센타·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등 선진유통모델 사업 추진
- '97년 30개 농협을 선정하여 시범실시후 성과를 보아 타품목 및 농협 이외의 생산자조직에게도 확대

3. 세부추진계획

가. 시범농협 선정 : 사업계획시달 → 시범농협 신청 → 평가 → 선정

□ 대상품목 : 10개

- 중간상의 포전매취 비율이 높고, 농협의 유통참여 비율이 낮아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하나 산지농협 자체 능력만으로는 단기내 개선이 어려운 품목
- '97년에는 우선 주산지 생산비율이 높고, 기존의 사업내용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여 시범농협 사업의 조기정착이 가능한 품목

- 1단계 ('97) : 고랭지 무·배추, 마늘, 양파, 파, 고추, 토마토, 참외, 오이, 수박, 화훼
- 2단계 ('98이후) : 무, 배추, 딸기, 포도, 복숭아, 감귤, 당근, 호박, 감자, 상추 등

□ 대상농협 선정기준

- 해당품목 생산량의 공동출하 비율이 높고, 취급규모가 큰 농협
- 해당품목 관내 생산량이 전국 생산량의 10위이내 농협
- 규격농산물생산, 속박이 근절 등을 위한 영농지도사를 운영하는 농협
- 해당품목 작목반중 우수작목반 비율이 높은 농협
- 생산자조직 평가결과 우수생산자조직으로 평가된 농협
- 기타 품목별 전국협의회 가입한 농협이나 조합의 사업의지가 강한 농협 등

□ '97년 대상농협 : 30개

- 고랭지 무·배추(2) : 강원 평창 대관령, 정선 임계
- 마늘(3) : 충남 태안 이원, 전남 무안 해제, 경남 남해 고현
- 양파(3) : 전남 함평 엄다, 경남 창녕 계성, 제주 한림
- 파 (2) : 충남 아산 도고(쪽파), 부산 명지(파)
- 고추(3) : 전남 영광 영광, 경북 영양 영양, 강원 홍천 내촌
- 토마토(4) : 경기 안성 미양, 강원 춘천 신북, 충북 충주 충주, 충남 부여 세도
- 참 외(2) : 경기 여주 대신, 경북 성주 대가
- 오 이(4) : 경기 평택 안중, 충북 제천 금성, 충남 공주 우성, 전북 장수 장계

- 수 박(5) : 충북 음성 맹동, 전북 고창 무장, 전남 영암 신북, 경북 봉화 법전, 경남 합천 쌍책
- 화 훼(2) : 경기 화훼, 제주 중문
- ※ '98년 시범농협 사업대상 품목 및 시범농협 선정 ('98. 3월까지)

나. 시범농협의 역할

- 관내 생산량의 30% 수준계약재배로 중간상의 농간 견제
 - '96년 전국 계약재배 비율 : 고랭지 16%, 무·배추·대파 3%, 마늘·양파 5%
 - 시범농협 : 고랭지배추 38%, 마늘·양파 10%, 파 15%
 - 계약재배비율이 낮은 시범농협은 1단계(2001년)20%, 2단계(2004년) 30%까지 계약재배유도
 - 계약재배가 시급한 가을 무·배추의 시범농협 선정('98)
 - 계약재배비율이 높은 시범농협은 이행을 제고 등 사업내실화
- 관내 생산량의 80% 수준 공동출하로 시장교섭력 제고
 - '96년 전국 공동출하비율 : 채소류 33% (배추15.8%, 마늘8.1%)
 - 시범농협 : 토마토·오이·참외·마늘·고추 70% 수준, 수박·양파 50-60%수준, 고랭지 배추 40%수준, 파 20% 수준
 - 공동출하비율이 높은 시범농협은 공동계산·브랜드 출하로 발전
 - 공동출하비율이 낮은 시범농협은 공동출하비율을 1단계 50%, 2단계 80% 수준으로 제고
- 산물출하 채소류의 포장출하율은 90% 수준으로 제고
 - '96년 채소류 포장출하 및 규격출하비율
 - 포장출하율 : 참외 99%, 오이81%, 무11%, 수박4%, 배추0.1%
 - 동일등급 출하율 : 채소류 6%, 오이 12%, 참외 8%, 토마토16%

- 포장화율이 낮은 수박·배추 등의 시범농협은 1단계로 50%, 2단계로 90%수준까지 포장출하 유도
- 포장화율이 높은 시범농협은 동일등급 출하비율을 1단계로 30% 2단계로 70%수준까지 제고하고 속박이 근절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ULS 시스템에 의한 일관수송, 기계화 하역
 - 포장센타 등을 소유한 시범농협은 지게차, 하역·파렛트 출하
 - 저온저장고, 냉장차량에 의한 콜드체인시스템 구축

다. 시범농협 지원 : 기존사업 우대지원

- 정부 우대지원사업 : 7개사업
 - 간이집하장 시설보완 : '98년부터 간이집하장에 포장기, 선별기 등 시설보완자금 우선지원
 - '97년에는 '97예산중 잔여액(33억원) 시범농협에 우선 지원
 - 포장센타 건설 : '98년부터 포장센타건설과 시설개보수 자금 우선지원
 - 공동규격 출하자금, 매취자금 : '97년 농안기금 수정계획 증액분을 '97년중 우선 지원
 - '96년 26개 시범농협에 평균지원액 : 315백만원
 - 생산자조직육성자금 : '97년 농안기금 수정계획 증액분을 '97년중 우선 지원
 - '96년 11개 시범농협에 평균지원액 : 480백만원
 - 채소계약재배자금 : '97년 계약재배자금 2,475억원중 하반기에 마늘, 양파등 시범농협에 우선 지원
 - '96년 14개 시범농협에 평균지원액 : 693백만원
 -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지원: 부진한 '97년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범농협으로 하여금 파렛트·지게차 등

하역기계화 장비 구입 적극 추진 유도 ('97신규사업, 70억원)

- 포장재 보조 : 수집상의 포장출하기피로 부진한 배추·수박 포장활성화를 위해 시범농협의 적극 참여 유도 ('97신규사업, 68.5억원)

- 포장재보조지원 확대 ('97.7) : 배추·수박 → 무·양배추·마늘·양파·파 추가

- 정부수매나 산지폐기시 산지시범 농협관내 농산물 우선수매나 폐기

□ 농협 우대지원사업 : 2개사업

- 유통저리자금 : '97년중 30개 시범농협에 1~3억원씩 추가지원

- '97년 유통저리 자금규모 : 4,050억원(29개 시범농협에 평균 658백만원 기지원)

- 수송차량, 정보기기 지원 : '97년중 수송차량 10대, 냉동차량 5대, 핸드폰, PC 등 지원가능, 나머지 시범농협에 대해서는 '98년 예산 반영 지원

4. 투융자계획

“해당 없음”

5. 추진일정

- 30개 산지유통 시범농협 선정 : '97. 6월
- 산지유통시범농협에 우선지원 가능하도록 사업지침개정 : '97. 7월
- 산지유통시범농협의 산지유통개선 장단기계획 수립·보고 : '97. 9월
- 산지유통 시범농협 육성관리 : '97. 6 ~ 12월

- 산지유통 시범농협 사업평가 : '97. 12월
 - 평가결과, 사업실적이 부진한 시범농협에 대해서는 시범농협 취소 및 자금 회수
- '98년도 시범농협 사업계획 시달 : '97. 12월
- '98년도 시범농협 선정 : '98. 3월

1-3. 자율적인 속박이 근절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 필요
 - 유통시장 개방과 외국 대형유통업체의 국내 진출
 - 속박이 근절없이 신물류체계 조기 정착에 한계
- 농산물 거래 투명성 증대로 공산품 수준의 농산물 품질관리 기반 구축

나. 현황 및 문제점

- 속박이 출하 현황 (가락공판장 성출하기 기준)

품 목 별	속박이 비율	출하 포장형태 및 단량
사과, 배, 단감, 감귤, 복숭아	10~15%	골판지 상자 (15kg, 10kg) 2~3단 적재 포장
오이, 호박	20~25%	골판지 상자 (15kg, 10kg, 1접)
딸기, 토마토	30~40%	딸 기 : 스티로폴 상자(2kg, 8kg) 토마토 : 골판지상자 (15kg,10kg)

- 속박이 출하 문제점
 - 우리 농산물·농업인에 대한 부정적 정서 조장
 - 농산물 유통 효율성 저해로 유통비용 증가

2. 추진방향 및 목표 (단계별)

구 분	'97	'98	'99
	의식개혁운동전개	의식개혁 확산	속박이 배격 정착
속박이 비율	10% 이내	5% 이내	3% 이내
대상품목	7개 품목	16개 품목	30개 품목

3. 세부추진계획

가. 농업인 의식개혁 추진

- 작목반별 「속박이 추방 결의대회」 개최
- 전담 지도직원 지정 운용
- 생산자 스티카(고무인) 제작 배부

나. 작목반별 자율검사 체제 구축으로 공동선별 확대

- 작목반별 자율검사 기록부 조제 배부
- 작목반별 검사인 조제 배부

다. 중점 지도품목 및 시범조합 선정

- 중점지도품목

구 분	'97	'98 추가
중점지도품목	복숭아, 포도, 감귤, 오이, 토마토, 참외, 딸기	단감, 사과, 배, 당근, 느타리, 양송이, 풋고추, 단감, 호박

- 시범조합 선정 : 품목별 2~3개 시범조합 선정 및 집중 지도·지원

라. 주요품목 「표준규격출하 규격도」 제작 배부

마. 교육·홍보

- 생산자 표시, 속박이근절 포스터 및 리후렛 제작 배부
- 공동선별 우수·불량 사례 「농민신문 기획 시리즈」로 게재, 홍보
- 우리 농산물 신뢰성 제고 「농민신문 광고」
- 지역별 순회 현지도 강화 : 본부 유통관련 부서 합동
 - 산 지 : 생산자 미표시, 선별불량 다발지역
 - 소비지 : 중앙회 공판장, 공영도매시장

4.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 '97. 4월	○ 자체 추진계획 수립	중앙본부, 지역본부 시군지부
○ '97. 4월	○ 리후렛 조제·배부	중앙본부
○ '97. 4월~6월	○ 지역본부별 보고회	중앙본부, 지역본부
○ '97. 2/4~4/4분기	○ 농민신문 광고	중앙본부
	○ 자체추진결의대회 개최	품목별 초출하기 회원농협
	○ 현지도도 및 교육	중앙본부
○ '97. 11월	○ 포장개선 지도요원 평가회 개최	중앙본부
○ '97. 12월	○ 품질관리 대상 및 유공직원 표창	중앙본부

2-1.2. 무·배추중심으로 채소류 계약재배사업 확대

1. 추진상황 및 성과

가. 추진상황

- 정부와 농협이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회원농협에 용자지원
- 농협이 농가와 계약재배하여 생산 및 출하조절

	'95	'96
자금조성	625억원(정부용자500, 농협자금125)	475억원(정부용자380, 농협자금95)
대상품목	무, 배추	무, 배추, 파, 마늘, 양파
사업실적	81천톤 173억원	233천톤 723억원

나. 추진성과

- 사업대상품목의 확대
 - ('95) 무, 배추 → ('96) 마늘, 양파, 파추가 → ('97) 고추추가
- 사업량 확대
 - ('95) 81천톤 → ('96) 233천톤 → ('97) 370천톤(계획)
- 조성자금 확대
 - ('95) 625억원 → ('96) 1,100억원 → ('97) 2,475억원
- 산지가격 안정 및 농가수취가격지지
 - 계약가격이 산지가격의 기준이 되고 있으며, '96년 무, 배추 풍작으로 가격이 하락하였음에도 농가는 계약가격을 보장 받음으로써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과일생산으로 시장가격이 계약가격보다 크게 낮을 때 사업조합에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은 손실부담을 우려하여 사업참여 기피
⇒ 참여조합의 손실부담 경감대책 수립 필요
- 저장성이 있는 품목(마늘, 양파, 고추)은 출하기간이 길어 가격 변동이 심하므로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움.
⇒ 무, 배추등 저장성이 없고 출하기간이 짧은 품목 위주로 운영 필요

3. 추진방향 및 목표

- 산지유통개선이 시급한 무·배추 중심으로 주산지 재배량의 20%수준 계약 재배

(단위:천톤)

	적정생산량	계 약 재 배 량			
		'97	'98	2001	2004
○ 무·배추	4,370 (100.0)	250 (5.7)	290 (6.6)	480 (11.0)	874 (20.0)
○ 마늘·양파 ·고추등	1,847 (100.0)	120 (6.5)	120 (6.5)	120 (6.5)	247 (13.4)
계	6,217 (100.0)	370 (5.9)	410 (6.6)	600 (9.6)	1,121 (18.0)

- 중장기적으로 가격차보전제도 등 도입으로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가격안정 대책 보완

4. 세부추진계획

< 단기대책 > : '97년중 추진

- 과일생산으로 가격하락시 실시하는 출하조정사업, 하한가 구매 사업을 계약재배사업과 연계
 - 계약재배물량을 우선 구매하여 조합의 부담 경감

- 저장성이 높은 품목의 물량은 축소 내지 동결하고, 저장성이 낮은 무·배추 등 품목의 계약재배 물량 확대
- 사업활성화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업 일관처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 「계약 → 판매 → 정산 → 손실보전자금 적립(지원)」
 - 사업조합의 Need에 부응한 전산체계 개발

< 장기추진 과제 > : '98년이후 추진

-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실시
 - 정기적으로 사업자를 평가하여 우수조직·일반조직 등으로 구분
 -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운영자금 확대지원등 인센티브 부여
- 품목별 가격안정대 탄력 운용 검토

현	행	개	선
± 20%		조합자율로 ±10~±20% 범위내에서 결정 - 사업활성화 측면, 사업주체 손실 부담 정도를 감안하여 조정	

- 사업성과를 보아가면서 채소가격 안정기금 규모 擴大

5. 연차별 자금조성계획

	'95~'96실적	'97	'98	계
계	1,100억원	1,375	525	3,000억원
- 국고융자	880	1,100	420	2,400
- 농협자금	220	275	105	600

2-3. 순회수집 완전정착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소량의 농산물까지도 농협이 순회수집 판매하여 농가에 실익과 편의제공
- 생산농가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판매서비스 극대화

나. 사업연혁

- '80년대초 : 일부농협에서 자율적으로 농산물 순회수집 실시(짜집짓기)
- '94 ~ '96 : '94 중앙회에서 사업방식 체계화, 전농협에 보급
⇒ 농협 개혁 최우선 과제로 실시
- '97. 4월 현재 : 일부도시농협을 제외한 대부분 농협 (1,378개)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수집 판매사업의 내실화를 통하여 농업인 실익사업으로 정착

다. 현황 및 문제점

○ 순회수집유별실적

연도별	공동판매 실적 (A)	유별 순회수집 실적					비율(B/A)
		과 일	채 소	곡 류	기 타	계 (B)	
'94	60,135	7,092	9,587	3,014	2,668	22,361	38 %
'95	71,554	7,145	10,304	6,772	4,242	28,463	40 %
'96	80,233	9,460	12,009	9,990	5,239	36,698	45 %

○ 농협지원사항

- 화물차량 지원 : 1,254대 (8,821백만원)
- 휴대폰 지원 : 1,407대 (1,090백만원)
- 유공직원 표창 : 50명

○ 문제점

- 소량·다수 품목위주의 순회수집에 따른 상품성 미흡
- 다수 품목을 동일차량으로 수송하여 운송업무의 비효율 초래
-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소량품목 구입회피로 판로확대에 한계

2. '97 추진방향

- 순회수집 판매사업을 내실화하여 농업인 실익사업으로 완전 정착
- 임직원 현장체험운동 전개로 순회수집 추진 “붐” 재점화
- 순회수집 우선농협 선정 및 집중 육성
- 순회수집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3. 세부추진계획

가. 순회수집 판매사업 내실화

- 순회수집 물량의 규모화로 시장교섭력 제고
- 소량·다품목 생산체제의 개선
- 상품성 제고 : 종류별·등급별 구분포장,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 성출하기에는 시·군관내 전차량 운용등 수송차량 확보방안 강구
- 도매시장 전속거래처 확보, 직거래 확대 등 판로 다양화

나. 임직원 현장체험운동 전개

- 대 상 : 중앙본부 및 지역본부 책임자, 시·군지부 경제사업직원
- 내 용
 - 해당농협 순회수집 코스를 차량으로 순회하여 농산물 수집

- 수집 농산물의 도매시장 출하, 경매참관, 직판행사 참여등
- 선별, 포장작업 등 농가일손돕기 병행
- 기간 : 대상자별 1박 2일

다. 우수농협 선정 및 집중 육성

- 시·군지부별 우수농협 1개소씩 선정
- 순회수집 판매사업 모델로 육성
 - 교육 및 현장체험 장소로 활용
- 우수농협에 자금, 시설, 장비 등 우선 지원

라. 순회수집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중소형 특장차 (냉동차, 보냉차 등) 지원 : ('97) 80대 → ('98) 100대
- 화물차량 적재함 표준화 추진
- 유공직원 표창 (27명) 등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사업 량 (대)	특 장 차	-	80	100		
	국고보조	-	-	-		
사 업 비	용 자	-	-	15,500		
	지방비	-	-	-		
	자 담	-	2,000	2,500		
	계	-	2,000	18,000		

※ '97 : 특장차 (80대×25백만원) → 농협 자부담

※ '98 : 특장차 (100대×25백만원)→ 농협 자부담

※ 농안기금 : 155개 농협×100백만원

5. 추진일정

일 정	내 용	비 고
○ '97. 4월	○ 사무소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지역본부,시·군 회원농협
○ '97. 4월~6월	○ 차량 및 차량개조비 지원	유통종합지원부에 서 계획수립시달 (지역본부에서 대 상사무소 선정, 지원)
○ '97. 4월~10월	○ 임직원 현장체험운동 실시	중앙본부,지역본부 시·군지부
○ '97. 11월~12월	○ 유공직원 표창	유통종합지원부
○ '98. 2월	○ 우수 사무소 표창	

3-1. 우수생산자조직 위주로 자금 집중지원

1. 1단계 대책 추진계획

-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원체계와 심사분석 기능강화로 조직활성화 도모
 - 포장규격화, 공동출하, 자기상표 개발 등에 대한 시·군, 농검의 심사분석 강화로 유통사업시행에 불량한 조직은 차기 지원시 지원중단, 우수조직은 자금지원 강화 및 시상

2. 추진성과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국고)		지 원 대 상			비고
	'96	'97	작목반	법인	회원조합	
1. 생산유통지원사업	304,629	284,356				
○ 과 실	103,950	133,470	×	○	○	
○ 시설채소	92,263	48,312	○	○	○	
○ 양념채소	17,974	19,608	○	○	○	
○ 고랭지채소	6,140	8,346	○	○	×	
○ 화 혜	42,482	34,758	○	○	○	
○ 특용작물	41,820	39,862	○	○	○	
2. 간이집하장	24,405	16,790	○	○	○	'97년
3. 포장센터	7,200	11,880	×	○	○	'96년
4. 규격출하 포장재보조	11,191	13,122	○	○	○	'96년
5. 공동규격출하용자	145,000	154,000	○	○	○	'96년
6. 매취사업	40,300	40,500	×	○	○	'96년
7.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	100,000	103,000	×	○	○	'97년
계	632,725	623,648				

- 생산자조직에 지원되는 유통개선 사업자 선정시 사전 평가후 지원
 - '96년 평가사업 : 포장재보조, 규격출하사업, 매취사업,포장센터 건설
 - '97년 평가사업 : 간이집하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
- 유통관련 사업자금을 우수 생산자조직에게 우선 지원되도록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개정
 - '96년 8개사업 3,467억원, '97년 12개사업 6,236억원

3. 문제점

가. 생산자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평가체제 미흡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단위조합, 전국생산자조직 등 다양한 생산자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제 미흡
 - 유통정책과 : 생산자조직 육성, 지도 총괄
 - 농촌인력과 :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경영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 농업금융과 : 농림업분야의 협동조합업무의 총괄 및 종합 조정
 - 축산정책과 : 축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도·감독
 - 품 목 과 : 해당품목의 생산자조직 육성, 지원
 - 농 검 : 사업신청 작목반·영농조합법인·영농회 평가,관리
 - 농협중앙회 : 전 작목반 평가, 관리
- 영농조합법인, 단위조합, 전국생산자조직의 생산자조직으로서의 기능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포장재보조, 공동규격출하·매취자금,생산자조직육성자금 신청자만 평가
- 작목반에 대한 평가는 농검과 농협으로 이원화되어 평가중복과 평가상위성으로 조직 및 농가의 혼란초래

< 농검과 농협의 작목반 평가 비교 >

	농 검	농 협
○평가목적	포장재보조, 공동규격출하용자, 매취사업 사업자 지정	작목반 관리, 육성
○평가내용	공동 규격출하 정도	조직관리, 공동사업, 규격출하정도
○평가주체	농검 공무원	군지부 평가위원회 (농검관계관, 행정·지도소관계관)
○평가대상 및 작목반분류	사업신청 작목반 - 최우수 : 273 (5%) - 우수 : 4,361 (75%) - 일반 : 1,185 (20%) 계 : 5,819 (100%)	전작목반 - 선진 : 8,030 (34%) - 일반 : 7,151 (31%) - 기초 : 8,119 (35%) 계 : 23,300 (100%)
○관 리	수작업 관리	전산관리

나.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결여

- 평가대상조직수에 비하여 평가인력부족으로 평가의 객관성 결여
 - 사업신청자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농검의 평가대상조직은 총 13,888개로서 출장소당 101개
 - 유통공사에서 생산자조직육성사업만 평가함에도 인력부족으로 현지확인 평가보다 서류평가에 의존

	평가주체(협조)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대상조직
○간이집하장	시·군(농검, 농협, 지도소등)	공동규격출하	8개	-
○포장센터	유통공사(농협, 농검)	사업능력	12개	53개
○포장재보조	농검	공동규격출하	8개	9,787
○공동규격출하용자	"	공동규격출하	8개	8,672(4,785)
○매취사업	"	"	"	310
○생산자조직육성	유통공사, 농협	조직구성, 기능	단위조직	385

- 평가내용이 현실적으로 확인곤란하여 평가자의 주관에 따라 좌우
 - 동일등급포장여부, 규격출하량 비율 현실적으로 확인곤란
 - '96년 농검평가결과, 최우수조직이 56.5%, 합평균은 2.7%
- 향후 대량유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조직규모의 광역화가 필요
하나 조직의 규모는 평가항목에 미반영

다. 평가결과 우수생산자조직에 대한 우대가 미흡

- 우수 생산자조직에 대한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가 낮고 우대의 기준이 불명확함
 - 생산유통지원사업의 경우, 우수생산자조직에 대한 사업자선정 순위가 마지막이나 후순위
 - 단순히 대상자 선정기준에 “규격출하우수조직”으로 되어있어 우수규격출하 조직에 우선 지원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미흡
- 많은 조직과 품목에 지원하다보니 지원규모가 적을 뿐만아니라 지원조건도 유리하지 않아 평가에 대한 유인책이 적음
 - 포장재보조 : 7,788개, 조직당 1,433천원 보조 (농가당 41천원)
 - 공동규격출하용자(연 5%) : 8,521개, 조직당 18,718천원 (농가당 2,103천원)
 - 매취사업용자(연 5%) : 199개, 조합당 207백만원, 법인당 143백만원

4. 세부추진계획

가. 생산자조직에 대한 평가 및 관리체제 정비

- 유통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하는 생산자조직 평가위원회 설치
 - 생산자단체, 농검, 품목과, 유통공사 등으로 구성

- 평가계획 및 우수생산자조직에 대한 차별지원조건 등 의결
- 생산자조직의 평가기능 강화를 위한 농검·유통공사·농협 지원기능 강화
- 이원화된 농협, 농검의 작목반 평가의 통합
- 생산자조직의 현황 및 평가결과의 전산 관리

나. 발전단계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내용의 객관성 제고

- 발전수준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 초기단계 : 회원관리, 자금관리, 공동출하, 공동선별 등
 - 발전단계 : 공동계산, 자조금조성, 출하조절, 생산조정, 품종통일 등
- 벤치마킹 모델 설정을 위한 우수조직 실태조사
 - 우수조직의 운영실태, 운영 활성화요인, 발전방향 등 분석
 - 우수조직에 대한 사례집 발간
- 평가항목을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항목으로 재조정
 - 평가항목을 대폭적으로 단순화 (특징적인 3-4가지 기준에 의해 조직을 평가)
 - 산지 위주 평가에서 도매시장 출하상태 (속박이 출하, 비규격 출하등) 및 출하실적 등 소비지 시장 평가결과 반영
- 평가항목에 조직의 규모를 반영 (50% 수준)

다. 우수 생산자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간의 차별화 강화

- 농협이나 농검에서 평가한 우수조직 우선 지원
 - 우수 생산자조직에는 유통관련 뿐만아니라 생산관련 정책사업도 우선지원
 - 최우수조직이 아닌 조직에게는 유통관련 사업을 지원하지 않도록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개정

- 우수 생산자조직에게 집중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품목과 조직을 축소
 - 포장재 보조사업 지원품목 : ('96) 84개품목 → ('98) 30개이내
 - 포장재보조, 공동규격출하 지원대상조직 : ('96) 9,000개수준→ ('98) 3,000개수준
- 평가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자금을 대폭 확대하고 지원조건 차별화 강화
 - 생산자조직육성자금 확대 : ('97) 1,030억원 → ('98) 3,000억원 수준
 - 평가결과 우수 생산자조직에게는 금리 인하 및 보조금지급 등 우대

5. 투융자계획

“ 해당없음 ”

6. 향후 추진일정

< 단기과제 >

-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협에 대한 현황 및 평가 전산화 (농검, 농촌인력과, 유통공사) : '97년
- 생산자조직 평가 위원회 설치 (유통정책과, 유통관리과) : '97년
- 평가지표개발 및 평가항목 조정 (유통정책과, 유통관리과, 농협) : 6월
- 평가대상사업자금확대 및 지원조건 차별화 (유통관리과, 사업과) : 6월
- 농림사업시행지침서 개정 (사업과) : 11월

< 장기과제 >

- 이원화된 농협, 농검의 작목반 평가 통합 (유통정책과, 농검, 농협)
- 평가대상조직을 전생산자 조직으로 확대 (유통정책과, 유통관리과, 농검, 유통공사)

3-2. 농협과 생산자조직과의 협조체제 강화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품목별 전문화로 농업경쟁력 강화
- 농협과 생산자조직간 역할분담 체제 확립으로 농업인 실익제고

나. 현황 및 문제점

○ 생산자조직 현황

- 작 목 반 (회) : ('95) 23,300개 ⇒ ('96) 23,383개
- 영농조합법인 : ('95) 2,455개 ⇒ ('96) 3,483개
- 농업회사법인 : ('95) 1,179개 ⇒ ('96) 1,418개

☞ 작목반은 조직정비를 통하여 '95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 경영체는 1,267개소 증가

○ 생산자조직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이 농업법인경영체 위주로 시행

-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형식적인 농업법인경영체 설립
- 농업법인경영체의 급격한 증가 및 조직의 부실화 초래
- 농협의 농업법인경영체 지도·지원기능 약화 요인

○ 농협과 생산자조직간의 생산과 판매의 역할분담 미흡

- 생산자조직은 고품질 우수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농협은 판로확보등을 통한 제값받고 팔아주는 역할분담 미흡
- 농협과 생산자조직간 상호 신뢰도 부족
- 생산자조직이 발전함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있는 상급품은 농협 계통 출하를 기피하고 직접 판매하면서, 하급품에 대하여는 농협에서 팔아 주도록 요구

2. 추진방향 및 목표

-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도·지원체계 일원화
- 생산자조직은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생산계획에서부터 판매까지 일관지도·지원
- 농협의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도·지원기능 강화
 - 영농지도요원의 생산자조직 전담·육성체제 구축
 - 지역농업의 조직화 및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전문화 추진
 - 공동계산제 Bench - Marking 도입

3. 세부추진계획

가.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도·지원체계 일원화

- (현행) 작목반(회) : 농협이 주도적 육성
영농법인경영체 : 정부가 정책적으로 육성
- (개선) 작목반 및 영농법인경영체 : 농협이 주도적 육성
- 생산자조직 육성, 자금지원, 시설설치 등 생산자조직에 대한 정부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농협을 통하여 지원토록 유도

나. 농협과 생산자조직간의 역할분담 체제 구축

- 생산자 조직 : 고품질·저비용 우수 농산물 생산
- 농 협
 - 생산자재공급, 자금지원, 첨단 영농기술 보급 등 생산지도
 -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신물류와 연계, 대량수요처 개발 등을 통한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판매사업 수행
- ☞ 생산자 조직에 대한 생산계획-생산활동 지원-판매-경영까지의 일관지도·지원체제 구축

다. 농협의 생산자조직에 대한 지도·지원기능 강화

- 영농지도요원의 생산자조직 전담 육성체제 구축
 - 영농지도요원 확보 및 전문화
 - ⇒ ('96) 조합당 1.2명 ⇒ (2000) 조합당 3~5명
 - ⇒ 영농지도요원별 주특기 품목 집중 육성
 - 품목별 생산자조직 전담요원으로 운용
 - ⇒ 품목별 생산-판매 일관 지도·지원 수행의 주체자로 운용
 - 영농지도요원 시군단위 통합운용사업 확대
 - ⇒ ('96) 20개지역 → ('97) 40개지역 → (2000) 전 시군지부
- 지역농업의 조직화 및 생산자조직의 규모화, 전문화 추진
 - 시군단위 품목별협의회 육성
 - ⇒ 주산작목 위주로 4~5개품목을 선정, 생산자조직 규모화
 - ⇒ 점진적으로 시군단위 원예작목 연합회로 품목별협의회를 통합 (예:영암원예연합회)
 - 공동상표 개발, 포장재 개선 등을 통한 농산물의 브랜드화
 - 공동선별, 공동규격출하 등 품목별협의회 공동사업 정착
 - 생산자조직 단위 자율검사요원 운영으로 자체 품질관리활동 강화
- 공동계산제 Bench - Marking제 도입
 - 공동계산제 시범작목반 육성
 - ⇒ ('97) 300개 → ('98) 600개 → (2000 이후) 전조직 실시
 - ⇒ 류별(품목별) 공동계산제 모델 개발, 보급
 - 생산, 선별 등 상품성 제고, 출하, 대금정산에 이르는 공동사업 정착

3-3. 시설채소 작목반의 초고속정보망 구축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체계적인 농산물 생산 및 출하관리
- 농산물 가격표시 및 생산관련정보(종묘, 자재, 토양, 기상, 병해충, 식부면적 등) 제공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농산물 홍보 및 주문판매
- 정보통신망을 통한 주산단지 작목반간 협력관계 구축

나. 현황 및 문제점

- 산지의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생산·출하조절 기능 미흡
- 농업인(생산자)의 시장교섭기능 부족
- 농산물의 다단계 유통구조 및 유통마진 증가로 인한 생산 농가의 낮은 수취가격
- 신속·정확한 정보제공기능 및 기반구조 취약

2. 추진방향 및 목표

- 초고속정보통신 및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최소한 품목별 주산단지의 농업정보화 시범사례 구축 및 비전제시
- 시설오이, 풋고추 등 시설작목의 생산계획·출하상황 관련 종합정보를 작목반간의 초고속정보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공유가 가능한 생산자 중심의 품목별 생산·경영정보시스템 구축

3. 세부추진계획

가. 추진단계 및 일정

□ 1단계('96. 10 ~ '97. 12)

- 대상품목 : 시설채소 3품목(오이, 풋고추, 참외)
- 대상지역 : 시설오이(전남 :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경남 : 진주, 창녕)
 풋고추(경남 : 진주, 밀양, 창녕)
 참외(경북 : 성주)
- 장비보급 : 중앙서버 1조(농림수산정보센터)
 지역서버 4조(통계사무소 3, 성주군 1)
 전용PC 200대(작목반, 단협, 전문조합)

□ 2단계('98)

- 대상품목 : 시설채소 3품목(수박, 토마토, 딸기)
- 대상지역 : 수박(부여, 고령, 안동, 의령, 함안, 합천, 하동)
 토마토(광주, 청원, 부여, 익산, 담양, 달성, 김해)
 딸기(논산, 부여, 홍성, 완주, 담양, 곡산, 고령,
 김해, 창원, 합천)

- 1단계 추진품목 및 지역의 확대

- 오 이 : 남양주, 춘천, 부여
- 풋고추 : 광주, 예산, 나주, 화순
- 참 외 : 익산, 화순, 달성, 고령, 칠곡, 함안
- 수 박 : 성주, 진주, 창녕, 밀양
- 딸 기 : 진주, 밀양

□ 3단계('99 ~ '2004) : 11개 품목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0)
○사업량(단위)	-	3품목(11시·군)	6품목(28시·군)	11품목	
○사업비					
- 국 고		2,115	2,000	10,000	14,115
· 농특회계		690	-		690
· 농안기금		-	2,000	10,000	12,000
· 기타(정보화기금)		1,425	-		1,425

※ 초고속시범사업 : '96. 10 ~ '97. 12

4-1. 농산물포장센터 중심의 대량포장 규격출하 촉진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9)

구 분	계	'95~'98					'99~2004
		'95	'96	'97	'98	계	
○ 사업량	개소 160	21	21	21	21	84	76
	大 10	1	1	1	1	4	6
	中 50	5	5	5	5	20	30
	小 100	15	15	15	15	60	40
○ 사업비	백만원 155,000	18,000	18,000	18,000	18,000	72,000	83,000
- 국고보조	62,000	7,200	7,200	7,200	7,200	28,800	33,200
- 지방교부금	46,500	5,400	5,400	5,400	5,400	21,600	24,900
- 자부담	46,500	5,400	5,400	5,400	5,400	21,600	24,900

나. 추진성과('95~'96)

- 연차별로 21개소씩 42개소를 건설 할 계획이었으나 49개소 건설 추진
- 시설규모를 대·중·소로 구분하여 대·중규모는 군단위에, 소규모는 읍·면단위에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96년부터 사업자가 사업능력 및 입지조건에 따라 시설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을 최대화함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산지유통에 대한 지도·전담부서를 만들어 사업자 선정 및 사후관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직 정비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각 사업체가 시설완공후 운영 초기에는 자금조달과 판로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에 애로를 겪고 있음
- 포장센터 운영자는 매취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사업주관 기관이 농협중앙회인 관계로 영농조합법인 보다는 농협회원조합 위주로 지원이 되고 있음
 - '96년 매취자금 403억원중 20억원(5%)만 영농조합법인에 지원
- 다품목, 소포장으로 출하하는 업체는 운영이 잘 되고 있으나, 단일 품목만 주로 취급하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운영에 애로
- 보조 및 융자 지원이 많아 설립 및 공동유통활동이 일천한 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하여 부실운영으로 연계 될 소지가 있음

3. 세부추진계획

- 처음 지원은 사업자의 경험과 능력을 감안하여 지원하고, 사업성과를 보아 추가 지원
 - 포장센터의 대규모화, 지역 유통의 거점화 하고 대량포장·규격 출하촉진
- 운영자금(매취자금)은 매취사업으로 지원하되 사업주관기관을 당초 농협중앙회에서 농협과 농수산물유통공사로 이원화하여 농협중앙회는 회원조합이 운영하는 포장센터,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회원조합외 생산자조직이 운영하는 포장센터 지원
- 출하품 판로문제는 물류센터가 건설 운영되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98년부터 보조를 점차 감축하여 융자로 전환 :
('97) 60% → ('98) 50% 수준

4. 투자계획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 사업량	개소 49	29	40	42	160
○ 사업비	백만원 36,000	19,800	28,000	71,200	155,000
- 국 고	14,400	7,920	8,400	21,360	52,080
- 국고용자	-	3,960	8,400	21,360	33,720
- 지방비	10,800	3,960	5,600	14,240	34,600
- 자담	10,800	3,960	5,600	14,240	34,600

5. 추진일정

- '9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를 보완하여 영농조합법인이 운영하는 포장센타에 매취자금 지원
- 2004년까지 건설목표 160개소를 조기 건설하여 산지유통개선을 촉진하고 적정 소요량 검토후 추가지원 및 지역별 배치 방안 수립

4-2. 미곡종합처리장(RPC) 중심의 생산·유통 계열화

I.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9)

- RPC를 2004년까지 400개소 설치하여 쌀생산량의 40%를 산물로 처리
-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산업의 중심체로 육성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운영자금 확대지원
- 계약재배확대 및 각종 영농조직과의 연계로 원료비 안정적 확보체제 구축
- 얼굴있는 고품질의 지역특산미 생산공급으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

나. 추진성과 ('94~'96)

- RPC 확대설치('96까지 220개소)로 벼의 수확후 관리개선
 - 수확후 건조·정선·저장에 따르는 농촌노동력 및 유통비용 절감
 - 산물벼 매입량 : ('94) 83만석 → ('95) 174 → ('96) 327
- 미질개선, 계통출하, 소포장화로 쌀유통의 획기적 개선
 - 포장표시(산지등) 명확화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 고품질 청결미 생산, 포장재질·도안의 고급화, Brand화하여 판매
- 사업초기에는 사업주체의 경영능력이나 RPC에 대한 농가인식이 저조하였으나, '95년부터 산물수매실시로 이용농가 급속히 증가

- 농가와 계약재배 등으로 안정적 원료 확보 및 첨단설비로 청결미를 생산, 계통출하·직거래등 생산·유통의 계열화
- 계약재배실적 : ('94) 20천ha(46만석) → ('95) 33(77) → ('96) 90(144)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기 설치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능력 부족으로 농가 산물벼 수집·처리에 애로
 - 기존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증설 지원필요
- 수확기 산물벼 수집을 위한 자금조달 애로
 - 수확기 출하되는 벼를 매입하기 위하여는 일시에 많은 자금이 소요
 - 연간 6,000톤 매입 3회전시, 약24억원 소요
- 농가·작목반과의 계약재배 및 각종영농조직과의 연계체제 미흡
 - 계약재배확대 및 영농조직과의 효율적인 연계체제 구축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의 조기활성화 필요

3. 추진방향

- 미곡종합처리장을 산지 쌀 생산·유통의 핵심체로 육성
- 건조·저장시설 대폭확대로 수확기 산물(散物)벼 처리능력 제고
- 쌀 생산·유통 일관처리체제 구축으로 RPC운영효율 극대화 및 농가 경영규모 확대도모
-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목표관리 및 경영평가제 실시로 운영개선

4. 세부추진계획

-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지역 요건 및 신청자 자격기준 강화
 - 최소 6,000톤이상의 원료벼를 확보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을 중심으로 설치

- 기설치·운영중인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증설 지원확대
 - 건조·저장능력을 각 2,000톤 이상으로 확대하여 산물벼 처리능력 제고
 - 지원개소수 : ('95) 22개소 → ('96) 25 → ('97.P) 64 → (2004) 1,000

- 수확기 농가벼 매입자금 지원확대로 산물벼 수집지원
 - 지원액 : ('95) 860억원 → ('96) 1,343 → ('97.P) 2,180 → (2004) 8,000

- 농가벼 수집량 연차적 증대로 실질적인 산지 쌀유통의 중심체로 육성
 - 산물벼 수집처리 확대 : ('96) 327만석 (생산량대비) (9%) → (2000) 1,000 → (2004) 1,200

- 미곡종합처리장간 경쟁유도를 위한 경영평가제 실시
 - 평가방향 : 농협은 경영부분 중심, 민간은 농가와 계열화 정도를 중심으로 평가
 - 평가방법 : 농검·농협·곡협·KREI·한식연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평가결과 활용 : 각 단계별 목표관리 및 효율적인 경영관리 도모
 - 계약재배 및 농가산물벼 수집·처리실적 등을 평가, 각종 지원시 차등지원

- 미곡종합처리장별 “운영협의회” 구성 운용
 - 시·군 공무원, 작목반장, RPC 사업자등 10~15명으로 구성
 - 기능 : 계약재배, 가격, 품종등 지역영농계획 협의

- 농가·쌀작목반 등과의 생산·유통계열화 추진
 - 미곡종합처리장별 “지역영농계획” 수립, 계열화 촉진
 - 농가와의 계약재배 확대, 농작업 공동화계획 수립추진등
 - 조곡(벼)거래 활성화 유도 및 RPC 이용농가의 신뢰도 확보 추진

-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및 안정적 판매망 구축
 - 얼굴있는 고품질의 “지역특산미”를 생산, Brand화하여 신뢰도 제고
 - 품질인증 출하확대 : ('96) 100개소(111천톤) → ('97) 120개소(150천톤)
 - 생산제품의 표시명확화(산지, 산년, 등급, 공장명등)로 소비자 이미지제고

- 농협공판장, 슈퍼 등을 통한 계통출하 및 아파트단지, 공장 등과의 직거래 확대추진
 - 양곡유통단계 축소로 물류비용절감을 통한 쌀생산자와 소비자 동시보호
 - RPC 직거래비율 확대추진 : ('94) 9.3% → ('96) 14.8 → ('98) 20 → (2004) 35

5. 투자계획(RPC설치)

구 분	'94~'96 실적	'97 예산	'98 예산요구	'99 ~ 2004	계 ('94~2004)
○ 사업량(개소)	138	33	50	97	318
○ 사업량(백만원)	224,719	43,500	70,000	200,000	538,219
- 국고보조	64,200	18,000	30,000	100,000	212,200
- 국고융자	50,070	16,800	26,000	60,000	152,870
- 지방비	-	-	-	-	-
- 자부담	110,449	8,700	14,000	40,000	134,149

※ '94년 이전에 설치된 82개 포함시 400개소 설치

6. 추진일정

- '97 RPC 신규설치(33개소) 및 건조·저장증설(64개소)사업 조기 마무리
 - 금년산벼 수확이 시작되는 9월말까지 전공사를 마무리하고, '97년산 산물벼 수매에 참여하여 수확기 농가벼 흡수
- 쌀생산·유통 계열화체계 기반구축(4~5월중)
 - 계약재배농가, 작목반원 일제교육(RPC의 기능·편리성·효과등)
 - RPC별 경영실태 평가분석 (Bench Marking제 실시)
- 경영실태 조사결과 경영우수RPC의 성공사례 전파 확산(6~7월중)
 - 생산자단체·일반사업자별 특성을 살려 우수사례 선정 전파
- 수확기 농가벼 최대수집·처리를 위해 매입자금 차등지원(10~12월중)
 - '97 지원계획 : 2,180억원(8~15억원/개소)
- '98 RPC 설치·증설·운영자금 소요예산 요구 및 확보(4~11월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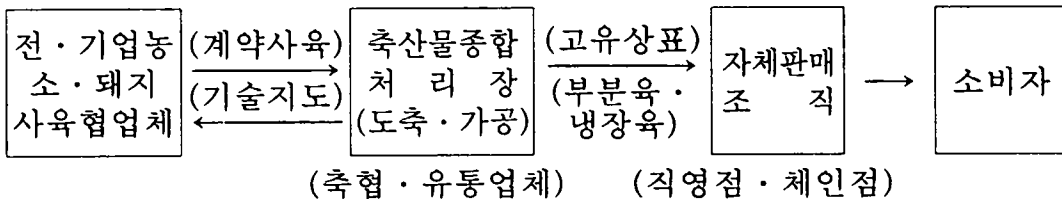
4-3.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냉장육유통체제 구축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9)

- 2000년까지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 건설하여 냉장육유통 전진기지 마련

〈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생산·유통 모델 〉



나. 추진성과 ('94~'96)

- 축산물종합처리장 5개소 선정 지원
 - '94 : 3개소(안성축산진흥공사, 서울경기양돈조합, 동아축산)
 - '95 : 2개소(북원농산, 부천산업)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개소당 150억원이상 투자되는 대규모사업으로 부지선정, 인·허가 관계등으로 당초계획(3년)보다 공사기간이 더 소요(4~5년)
 - 당초 '98년까지 선정토록 되어있는 것을 2001년 완전개방전에 정상가동토록 '97년 선정 마무리
- 안정적인 원료권 확보 및 판매유통망 확보를 위한 유통개선 자금 지원 필요
 - 단계적인 완공년도에 따라 지원검토

3. 세부추진계획

- 나머지 지원대상자 선정 마무리 ('97.3)
 - 진승산업(경기 연천)등 7개소 선정등, 총 12개소 선정마무리
- 안정적인 원료권 확보를 위한 생산기반구축
 - 한우비육우 및 돼지전업농·협업체·영농법인등과 계약생산체 계구축
- 판매유통망 확보
 - 직판점, 가맹점설치 및 대형 부분육 할인매장 설치

4. 투자계획

구 분	'94~'96실적	'97 예산	'98예산요구	'99~2000	계
○ 사업량	5개소 백만원	12	12	12	12
○ 사업비	31,677	27,067	53,835	29,174	141,753
- 융자	23,742	19,851	44,365	24,379	112,337
- 자담	7,935	7,216	9,470	4,795	29,416

5. 추진일정

- '97 사업대상자 7개소 선정 지원 : '97.3.19
- 1차 선정대상자 건설 완공 : '98년말
- 2차, 3차 선정대상자 건설완공 : '99년말
- 12개소 정상가동 시작 : 2000년

6. 기대효과

- 축산물종합처리장은 도축·가공하여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으로 진공포장된 BOX 상태로 공급되므로 단순도축후 지육상태로 유통되는 기존도축장 및 축산물도매시장에 비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육류 공급
 - 위생적인 육류 공급을 위한 HACCP 제도를 도입하여 냉장육유통기간이 30~60일로 길어짐 (세균수 1cm³당 10³이하 유지)
- 고급육을 신선냉장처리하여 공급함으로써 수입개방시 수입냉장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 (냉장육유통시스템)

〈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지원계획 〉

(단위 : 백만원)

선정 년도	업 체 명	총사업비 (표준사업비)	축 발 기 금					자 담
			계	'95	'96	'97	'98~'99	
'94 ('94~'98)	안성축산진흥공사 (경기)	15,332	12,091	4,760	952	4,000	2,379	3,241
	서울경기양돈조합 (경기)	15,332	12,091	4,759	952	1,569	4,811	3,241
	동 아 축 산 (경북)	15,332	12,091	4,760	952	4,000	2,379	3,241
	소 계	45,996	36,273	14,279	2,856	9,569	9,569	9,723
'95 ('95~'98)	북 원 농 산 (경기)	15,332	12,091	-	5,711	1,414	4,966	3,241
	부 천 산 업 (전북)	9,761	8,191	-	3,778	2,823	1,590	1,570
	소 계	25,093	20,282	-	9,489	4,237	6,556	4,811
'97 ('97~'99)	진 승 산 업 (경기)	8,000	6,320	-	-	700	5,620	1,680
	하 이 미 트 (강원)	8,000	6,320	-	-	700	5,620	1,680
	박달재한우마을 (충북)	8,000	6,320	-	-	700	5,620	1,680
	푸 른 육 원 (충남)	15,332	12,091	-	-	1,272	10,819	3,241
	거 평 유 통 (전남)	15,332	12,091	-	-	1,273	10,818	3,241
	명 신 산 업 (경북)	8,000	6,320	-	-	700	5,620	1,680
	거 창 축 협 (경남)	8,000	6,320	-	-	700	5,620	1,680
	소 계	70,664	55,782	-	-	6,045	49,737	14,882
합계	12개업체	141,753	112,337	14,279	12,345	19,851	65,862	29,416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년리 5%(생산자단체 3%)

5-1. 간이(일반)집하장의 포장센타화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9)

구 분	계	'94	'95	'96	'97
○ 사업량	개소 4,000	1,250	750	1,000	1,000
○ 사업비	백만원 200,000	62,500	37,500	50,000	50,000
- 국고보조	80,000	25,000	15,000	20,000	20,000
- 지방비	80,000	25,000	15,000	20,000	20,000
- 자담	40,000	12,500	7,500	10,000	10,000

나. 추진성과 ('94~'96)

- '94~'96년간 당초 3,000개소 건설계획이었으나 잠정적으로 3,032개소건설 추진중 ('94~'95 : 1,954개소 건설완료, '96 : 1,078개소중 1,043개소 건설 완료)
- 농산물 성출하기에 소량다품목을 집하하는 임시저장고 역할을 하거나 선별, 포장, 공동출하 작업장으로 활용하여 상품의 규격화를 촉진 하고 생산자의 조직화를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
 -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는 지역이나 시설채소를 년중 생산하는 지역은 활용도가 높음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농산물 특성상 특정시기에 편중 출하되어 연중 가동할 수 있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사용기간도 1~3개월로 제한적임
 - 비수요기에는 농자재보관, 마을공동 행사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활용도 등의 문제점이 거론되어 당초 건설목표량을 축소 조정하여 내실을 기할 필요성 대두

- 활용도제고와 규격상품화 촉진을 위해 기존 집하장 중 100평이상 규모의 집하장을 소규모 포장센터로 육성

3. 세부추진 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한 '97년 신규건설 목표량을 대폭 감축(△80%)
 - '97신규 건설 목표량 : 200개소
- 100평이상 기존 집하장에 포장센터 부대시설 지원
 - '97예산 : 200개소, 120억원(보조 80, 용자 40)
 - ※ 당초 매년 200개소씩 2001년까지 1,000개소를 지원 육성할 계획이었으나 사업희망자가 적어('98 사업신청물량 10개소) '98년까지 지원후 추세를 보아 계속 지원여부 결정

4. 투자계획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사업량	개소 3,032	200(200)	(50)	-	3,232(250)
○사업비	백만원 176,013	11,975 (20,000)	- (5,000)	-	187,988 (25,000)
- 국 고	70,405	4,790 (8,000)	- (1,500)	-	75,195 (9,500)
- 국고용자	-	- (4,000)	- (1,500)	-	- (5,500)
- 지방비	70,405	4,790 (4,000)	- (1,000)	-	75,195 (5,000)
- 자 담	35,203	2,395 (4,000)	- (1,000)	-	37,598 (5,000)

※ ()는 포장센터 부대시설 지원물량 및 사업비임

5. 추진일정

- 집하장 신규설치 및 기존 집하장 추가지원사업은 '98년까지 지원 후 추세를 보아 사업 계속 지원여부 결정

5-2,3. 산지 가공공장의 운영활성화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 9)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식품가공산업 참여규제완화
 - 시장·군수에게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토록하고 품목제조허가제 폐지
 - 주류제조의 기준자본금 자율화, 주조사 고용의무제 폐지
- 가공공장시설비 지원확대 및 용자조건개선
 - 시설비지원한도액 상향조정 : 120 → 180백만원
 - 원료구입자금 용자기간 연장 : 1년 → 2년
 - 우수업체에 대한 증설 또는 운영자금 우선지원
- 기술 및 경영교육 강화로 가공산업의 내실화 유도
 - 생산자단체 위주로 공장당 전문경영인 1명, 전문기능인 1명 육성
 - 경영 및 기술지원단 설치운영으로 현지 순회지도 강화
 - 주기적인 경영진단 및 업체실태조사를 정책에 반영
- 신제품연구개발 및 상품성 향상
 - 수입대체 또는 수출가능 신제품 개발
 - 디자인 및 포장표기방법 개선
- 전통가공식품 국내판매 촉진
 -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 ('95)1개소 → (2004) 10개소
 - 우편판매제도, 택배제도 적극활용

- 중앙 및 지방단위 전시판매행사 지속실시
- 수출 등 판촉지원단 운영 : 농수산물유통공사

나. 추진성과 ('94~'96)

□ 농어업인, 생산자단체가 신고만으로 가공사업 참여가능토록 제도개선

- 시·도지사의 인·허가 사항을 시장·군수 신고사항으로 변경
- 식품가공 업종조정 : 28개업종 → 1개업종으로 통합
- 주류면허제도개선 : 자본금 자율화, 주조사의무고용 면제, 시설기준완화

□ 시설비 지원확대 및 용자조건개선

- 시설비지원한도액 상향조정 : ('94) 120 → ('96)250백만원
- 원료구입자금 용자기간 연장 : ('94) 1년 → ('96) 2년
- 원료구입자금 확대지원 : ('94) 300억원 → ('96) 700억원
- 우수업체에 대하여는 지원횟수 제한없이 추가지원('97지침반영)

□ 기술 및 경영교육 강화

- 한식연 기술지원부를 산업지원부로 개편 보강('97.2)하여 기술지원 강화
 - 기술지원실적 : ('94) 235회, ('95) 201회, ('96)137회
- 유통공사에 경영지도처 신설로 경영지도 강화
- 경영·기술지도 계획수립 및 지도업무 수행중('97. 4현재)

□ 신제품연구개발 및 상품성 향상

- 신제품개발 기술이전 실적 : ('94) 6 → ('95) 9 → ('96) 2건
- 포장개선지원사업비 확대지원 : ('94)12 → ('95)19 → ('96)63억원

- 산지업체와 전문디자인업체 연결: 한식연, 농림수산정보센터, 디자인전문회사 등

□ 전통가공식품 판매촉진

- 서울 서초동에 전통식품상설전시판매장 1개소 설치('96)
- 우편판매제도, 택배제도 : 라디오홍보(MBC-R 실시중)
- 우리농수산식품대축제 행사개최 (매년 1회)
- 지방단위 전시판매행사 지속실시(지자체에서 업체지원형태로 추진)
- KBS-TV 등에 전통식품 소개프로 방영('97.1~3월중5회)
- 미주지역 수출증대를 위한 한미식품조사연구소 설립('97.6월 개소)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의욕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부족한 일부 농어업인이 가공산업에 참여함으로써 자생력이 약함
 - 경영능력·가공기술의 부족 및 자체 운영자금 부족 등
- 원료농산물의 계절성으로 수요·공급편중과 일부품목은 외국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격이 고가임.
- 대부분 소규모 기업으로 대기업에 비하여 제품인지도, 판매망확보 및 제품홍보 등에서 열세에 있음.

3. 세부추진계획

- 신규사업자가 보다 신중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줄이고 융자로 전환
 - 보조율 : ('96) 50% → ('97) 40 → ('98) 30 → ('99이후) 폐지
 - 융자율 : ('96) 30% → ('97) 40 → ('98) 50 → ('99이후) 70%수준

- 원료구입자금의 지원제도개선
 - 농안기금으로 지원하는 다기화된 가공용수매 자금을 가공원료 구입자금으로 일원화 방안 검토
 - 지원대상확대 : 정부지원업체 → 모든 농산물 가공업체
 - 원료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 ('96) 700 → ('97) 770 → ('98.P)1,500억원
 - 업체당 지원규모 확대 : 10억원 → 상향조정
- 공장현대화·자동화설비, 환경보전형시설 설치 등에 용자지원 확대
 - 기존 노후화설비를 대체하는 현대화·자동화시설 지원
 - 환경문제 대두에 따른 공장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지원확대
- 기술 및 경영지도 강화
 - 경영지도 (유통공사) : 제품생산, 재무상담
 - 기술지도 (한 식 연) : 위생 및 품질관리
- 산지가공업체에 대한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활성화방안 마련추진
 - 기본계획수립('97. 4월), 실태점검('97.5~9월)
 - 실태점검 결과에 따른 사후관계 방안 마련 ('97. 10)
- 판매활성화 추진
 - 우리 농수산물식품대축제 행사개최(매년)
 - 농협 하나로마트내에서 전통가공식품을 판매토록 추진
 - 주문자상표부착(OEM)방식과 반가공제품 생산으로 대기업과의 상호협력을 유도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수집전파(한미식품조사연구소 운영)
- 품질인증제도, KS제도, ISO제도 등 운용

4. 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89~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가공공장건설 >					
	개소				
○ 사업량	1,231	134	101	534	2,000
○ 사업비	3,708	609	430	2,202	6,949
- 국 고	1,101	185	93	-	1,379
- 국고융자	1,689	298	239	1,542	3,768
- 자 담	918	126	98	660	1,802
<원료구입자금지원>					
	회				
○ 사업량	1,538	600	700	2,162	5,000
○ 사업비	2,986	1,100	1,429	8,771	14,286
- 국고융자	2,090	770	1,000	6,140	10,000
- 자 담	896	330	429	2,631	4,286

5. 추진일정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 : '97.9
- 산지가공산업육성 장기방향 마련 : '97. 9
- 경영실태조사후 활성화 방안 마련 : '97. 10
- 원료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 : '97. 12
- '99사업대상자 부터 국고보조지원 폐지

6-1.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지원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수집상등 민간유통업체에 의한 농산물규격출하 촉진
 - 무·배추등 대부분 물량이 수집상에 의하여 포전매취후 산물로 출하되는 농산물을 포장하여 출하하도록 유도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문수집상과 생산자가 공동으로 영농조합법인을 결성하여 포장센터를 설치할 경우 우선지원하고 있으나 여건조성이 어려움
 - 전문수집상과 생산농업인의 연합이 용이하지 않음
 - 생산농업인과 연합하더라도 조직 결성 경력이 짧아 법인경영체 지원강화 방침(법인 운영경력3년이상)에 불부합
 - 전문수집상등이 단독으로 사업에 참여코자하나 사업지침상 법인화된 생산자 조직외에는 참여 불가

2. 추진방향 및 목표

- 유통전문 농업회사법인과 민간유통업체에도 포장센터를 지원하여 농산물 규격 상품화 촉진
 - 무, 배추, 대파, 양파, 당근 등 규격상품화가 부진한 품목위주로 추진
 - 시설 및 처리물량의 규모화로 가동을 제고

- 전문수집상을 중심으로한 규격출하 선도 및 유통기지화(수확, 포장, 상차 등을 위한 장비와 인력공급기지)

○ '98~2004까지 무, 배추등 주산지 중심으로 20개소 목표

3. 세부추진계획

- '98년 시범사업실시(3-5개소)
 - 전문수집상 또는 민간전문유통업체 참여
- '98사업 실시요령에 반영
- '98 예산요구(5개소)

4.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 적	'97 예 산	'98 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사업량 (단위:개소)	-	-	5	15	20
○사업비	-	-	5,000	15,000	20,000
- 국고보조	-	-	-	-	-
- 국고융자	-	-	3,500	10,500	14,000
- 지방비	-	-	-	-	-
- 자담	-	-	1,500	4,500	6,000

※ 재원 : 농특세

6-2.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축소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을 축소하여 경쟁여건조성

나.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1) 미곡종합처리장 (RPC) : 농특회계

사 업 자	국고보조	국고융자	자 부 담	융자조건
생산자단체	50%	30%	20%	연리5%, 3년거치7년상환
민간유통업체	-	80%	20%	연리8%, "

2) 농수산물 물류센터 : 농특세 전입금

- 생산자단체 : 건설공사비의 50%국고보조,
부지구입비의 50%국고융자
 - 융자조건 : 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민간유통업체 : 건설공사비(부지구입비 제외)의 60%국고융자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상환

3) 농산물 포장센터 : 농특세 전입금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20%, 지방비 2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5%, 3년거치 7년상환

4) 축산물 종합처리장 : 축발기금

사 업 자	도 축 장	오·폐수시설	육가공시설	용 자 조 건
생산자단체	융자80%	융자100%	융자70%	연리3%, 5년거치10년상환
민간유통업체	"	"	"	연리5%, "

5) 계란가공시설 및 운영 : 축발기금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산란계계열업체, 계란가공업체, 농가등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총 사업비의 70%이내 융자

- 지원조건 :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5%(계란가공업체 8%)

6) 한우전문판매점 설치 및 운영 : 축발기금

○ 지원대상 : 축협, (주)축산유통, 한냉(주), 농협, 축산관련 협회, 한우농가협업체 및 영농조합법인, 백화점 협회, 일반식육판매업소 등

○ 지원조건 : 연리 5%(민간 8%),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문 제 점

○ 민간유통업체와 생산자단체 등과의 지원조건이 상이하여 민간유통업체가 불리한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와 경쟁을 함으로써 불만의 소리가 높음

○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경쟁력없는생산자 단체가 보조금을 받기위해 사업신청하는 사례가 발생

2. 추진방향

- 생산자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연차별로 축소
 - 1999년 이후 보조금 중단 검토, 대신 융자조건은 완화
- 민간업체에 대한 융자금은 지원조건 완화
 - 금리인하, 지원을 상황조정 등
- 민간 유통업체에게도 유통시설 지원 확대

3. 세부추진계획

- 민간업체에 대한 시설자금 융자조건(금리)완화
 - RPC의 민간유통업체 융자금리 인하 : 8% → 5% 조정
 - 농수산물물류센타의 민간유통업체 융자금리 : 5% → 3% 조정 검토 등
- 생산자단체의 국고보조 하향조정
 - 농산물 포장센타 보조율 축소 : (1997) 60% → (1998) 50% 수준
 - 산지가공공장 보조율 축소 : (1997) 50% → (1998) 40%
 - RPC·물류센타 등의 보조율도 축소 검토 : → (1999) 중단
- 지원대상에 민간유통업체도 포함
 - 농산물 포장센타 건설사업에 수집상 등 민간유통업체 지원

2.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용 절감

- 7-1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에 맞게 정비
- 7-2 ULS규격에 맞는 차량개조 및 보급
- 7-3 포장센타 표준화 모델 개발
- 8-1 배추, 수박 포장출하 확대
- 8-2 포장출하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화
- 9-1 파렛트, 지게차 구입자금 지원
- 9-2 가락시장 하역인원 감축
- 9-3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 10-1,2,3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정보망 구축
- 11-3 농산물 물동량 물류비 및 유통마진 조사

여 백

2.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로 물류비용 절감

7-1.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에 맞게 정비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농산물 포장규격을 물류표준화 규격인 한국표준파렛트규격 (1,100mm×1,100mm)에 맞도록 정비 농산물 유통의 효율증대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표준출하규격의 구성 : 포장규격 + 등급규격
 - 포장규격 : 포장크기, 단량, 자재 등을 규정
 - 등급규격 : 품질에 따라 특, 상, 보통으로 구분
- 규격제·개정 절차
 - 제·개정권자 : (농산물) 농검소장, (임산물) 산림청장
 - 제·개정절차 : 규격자료조사 → 규격(안)작성 → 의견조회 → 심의회 심의 → 제정 및 고시
- 표준출하규격 제정품목 및 물류표준화 적합 품목 현황

구 분	합계	농 산 물							임산물
		계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화훼류	
표준규격제정품목	115개	103	14	20	51	2	8	8	12
(물류표준화 적합품목)	(41)	(39)	(4)	(8)	(19)	(2)	(3)	(3)	(2)

* 사과, 배, 배추, 무 등 유통량이 많은 주요 20개품목('95 가락동 도매시장 출하량의 76%점유)은 물류표준화에 맞도록 '96년 포장규격 정비

□ 문제점

- 표준출하규격 제·개정에 장기간 소요 : 4~ 5개월
 - 자료조사, 시험, 제·개정안 작성 : 2 ~ 3개월
 - 제·개정안 의견조회, 심의, 확정 및 고시 : 2개월
- 전문인력 및 시험기자재 부족
 - 전문인력 : 2명(시험소)
 - 시험기자재 : 4종(만능재료시험기, 파열강도시험기 등)
- 농산물 출하의 계절성으로 인하여 연중 개정작업 추진 지난
 - 연중출하 품목 외에는 성출하기에만 자료조사, 시험 가능

2. 추진방향 및 목표

- 포장규격을 단위화물적재시스템(ULS)에 맞게 정비
- 소비자기호에 맞는 소포장, 1단포장, 분포장 등 개발
- ULS규격과 안전성을 고려한 포장재료 및 강도기준 제정

3. 세부 추진계획

가. 포장표준화 실무작업팀 구성 운영

- 구 성 : 포장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 구성원 : 농림부 유통정책과, 산림청, 농검, 농협, 농유공, 축협
 골판지조합 등 관계 전문기관, 단체 직원
- 장 소 : 농유공
- 작업기간 : '97. 3월 ~ '97. 12.
 - '98년 이후는 농검이 주관하여 추진하되, 필요시 실무작업팀
 연장운영

나. 대상품목

- 농산물 표준출하규격 115개 품목
- 정비대상 품목은 물류표준화 기준에 맞지 않는 74개 품목
- 기존 품류표준화 기준에 맞게 정비된 41개 품목도 재검토
- '98년 이후는 유통실태 및 특산품화를 감안 지속적인 개정정비 추진

4.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대상품목수	기 간	비 고
1 차	포 장 규 격 체정(안)작성	28	3 ~ 7 월	
2 차	"	17	7 ~ 8	
3 차	"	15	9 ~ 10	
4 차	"	17	11 ~ 12	
'98년 검토	"	38*		
계		115 (77)	-	

* 생산량, 유통량이 적은 품목으로 특산품화 등의 검토가 필요한 품목

7-2. ULS규격에 맞는 차량개조 및 보급

1. 추진 배경

가. 추진목적

- 농산물 수송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4.5톤 및 5톤트럭을 표준 파레트(T-11형) 2열 적재가 가능하도록 개조하여 차량적재효율을 향상
- 표준파레트 사용을 통한 일관운송체계구축으로 유통시장개방, 교통량증가, 인력난가중등 물류환경악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물류효율향상.

나.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농협보유 화물자동차 현황

(96년말 현재)

구분	4.5톤미만	4.5톤	5톤	8톤	기타	계
대수	3,414	375	990	13	18	4810

- 보유차량중 광폭적재함 보유차량이 없음.
- 개조대상차량(900대):4.5-5톤트럭중 내용년수 3년이상차량
- ☞ '97.10.1부터 중형트럭 광폭적재함 생산의무화

문제점

- 농산물수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4.5-5톤 트럭적재함이 표준파레트 2열 적재가 불가능하여 적재효율이 낮음.

- 적재함폭이 2120mm로 적재효율 46.3%
- 산지농협등의 개조기피로 광폭적재함 개조전무
 - 개조기피사유 : 필요성인식부족, 교체비용과다,차량내용연수
- 적재함개조 경험있는 정비업소가 적음.
- 개조후 차량안전문제 미검증

2. 추진방향 및 목표.

가. 추진방향

- 개조대상차량(900대) '98년중 일제 개조추진
- 표준형파렛트 2열 적재가 가능하도록 광폭으로 개조
 - 개조폭 : 2120mm ⇒ 2280mm
 - 적재효율 : 46.3% ⇒ 86%
- 신규구입차량 광폭적재함보급토록 홍보 및 지도강화.
 - 표준적재함 : 6000mm*2340mm
- 운송회사차량도 개조토록 홍보(건교부와 협조)

나. 목 표

- 농협보유차량 일시개조로 일관수송체계기초 확립

3.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04	계('94-'04)
○ 사업량 차 량 (4.5-5톤)		900대			900대
○ 사업비		630			630
-국 고		315			315
-국고음자		-			-
-지방비		-			-
-자 담		315			315

주) 지 원 비 율 : 국고보조(농안기금) 50%, 자담50%

1대당 개조비용 : 700,000원 기준

* 개 조 비 용 : 승인비용+개조비용+검사비용

4. 추진일정

- 국고보조비율 반영검토 : '97.5
- 홍보용 팜플렛 제작 배포 : '97.6
 - 국가물류표준화 사업과 병행추진
- 적재함 개조 희망농협 파악 : '97.7
- 우수정비업체 선정추진 : '97.8
- 차량적재함 개조 및 보급안 최종확정 : '97.9-12
- 성과보고 및 결과보고 : '98년 상반기

7-3. 포장센타(저온저장시설) 표준화 모델 개발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정부에서 지원하는 간이집하장, 포장센타를 규격출하의 거점시설로 육성

나. 현황 및 문제점

- 유통시설 대부분이 표준화된 출입구나 보관시설 등을 갖추지 않고 있음
 - 간이집하장은 '96년도 표준설계도가 제작되었으나 보급이 저조
 - 포장센타에 설치된 저온저장시설은 대부분 ULS기준에 맞지 않고 있음

구분	기둥간격	천정높이	출입구높이	출입구폭
ULS기준	7.5m이상	6~8m	4m이상	3.5m이상
포장센타평균	4.9m	5.5m	2.6m	2.6m

※ 자료 : 농산물유통시설의 물류표준화 실태(유통공사) P28

- 하역기계화의 기본이 되는 데크시설 및 랙시설이 부족

2. 추진방향 및 목표

- 기존시설 개보수보다는 신규로 설치하는 포장센타를 대상으로 ULS규격에 맞도록 제반시설 설치
- 포장센타의 저온저장시설 표준모델 개발
 - 랙, 데크시설을 포함하여 검토

- 농산물 물류표준화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 농산물 물류표준화 실무작업반(시설장비표준화팀) 활용

3. 투자계획 : 없음

4. 추진일정

- 저온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 조사 : '97. 4~6월
- 저온저장시설의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방안 연구 : '97. 7~8월
- 표준모델(안) 확정 : '97. 9~10월
- 표준모델 도면 작성 : '97. 11~12월

8-1. 배추·수박 포장출하 확대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산물출하 배추·수박(등)을 산지에서부터 포장화 함으로써 운송중 감모 및 상품성 저하를 방지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소비지 환경개선
- 포장가 고시로 유통마진 축소 및 소비지 공정거래 실현
- 포장출하시 하역기계화가 가능하게 되어 물류비용 절감

나. 현황 및 문제점

포장화 현황

- '96. 8월이후 가락시장내 고랭지 배추 포장출하 시범사업 실시
- '97년 산지포장개선시범사업 실시
 - '97년예산 : 6,300백만원
 - 지원조건 : 포장재 매당 단가별로 국고 33%, 지방비 25%
 - 지원대상 : 가락, 구리, 안양도매시장에 배추, 수박 포장출하자.
- 포장화율 ('96. 9)
 - 과실, 과채류 : 사과 93.4%, 배 97.9%, 토마토 99.1%
 - 엽·근채류 등 : 배추 1.3%, 무 21.2%, 수박 5.9%, 파 0.0%
- '97(1-3월) 배추포장출하동향

구 분	총반입량	포 장 출 하			산물출하
		계	골판지	그물망	
물량(톤)	49,683	32,108	6,454	25,654	17,575
점유율(%)	100	64.6	13.0	51.6	35.4

□ 문제점

- 배추, 무, 사과 등 쓰레기유발이 많은 품목은 포장화 자체가 안되고 있음
 - 산지의 포장출하 기반시설미비(집하장등) 및 인력부족
 - 포장재 비용부담 기피 및 포장화인식부족
- 포장출하품의 선별미흡, 외부표시사항과 내용물불일치
- 포장화 지원상 문제점
 - 지원품목이 배추, 수박에만 한정
 - 지원대상이 가락, 구리, 안양시장으로 한정

2.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산지수확단계에서 선별·포장화 체제구축
 - 골판지·플라스틱상자에 선별 포장하여 광폭차량, 지게차 등 이용하여 수송, 하역
 - 포장상태로 도매시장에서 차상경매, 견본거래 기반구축
 - 중간 유통단계에서 최종 소비지까지 포장상자 유통
- 비규격 산물출하품의 전량규격포장화유도
 - 포장재중점지원,규격포장우대 및 산물출하품제재강화
- 규격포장 출하상품의 유통인,소비자 신뢰성확보

□ 목 표

- 채소포장비율: ('96) 10%미만 ⇒ ('2001) 70% ⇒ ('2004) 90%

3. 세부추진계획

□ 향후 추진계획

- 산지 포장개선사업 물량 및 시장확대
 - 대상시장 : ('98) 가락·구리·안양 광역시 → (2000) 전국
 - 대상품목 : ('97) 배추, 수박 → ('98이후) 배추, 수박, 무, 양파, 대파, 마늘, 양배추 등
 - 출하물량 : ('98) 출하물량의 70% → (2000) 100%
- 향후 관리공사 쓰레기유발부담금예산을 활용하여 포장재비 지원(97.4월 현재 7억원 확보)
- 포장 및 산물출하 차별강화
 - 다듬기 단속 강화, 유발부담금 부과 확대, 총량제 실시 강화로 비포장 출하제재
 - 최우선 경매, 포장품 가격 지지, 비가리 시설 확대로 포장품 우대

□ 세부추진체계

- 포장소요물량파악 - 도매시장관리공사의 포장물량산정 관할시의 공사제출사업계획서 검토 및 농림부제출
- 사업확정 및시행 - 기본계획수립,사업계획검토, 소요자금배정

4. 투자계획

< 산지 포장개선(골판지) 시범사업 >

(단위: 천매, 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 사업량 (단 위)		(골)31,500	90,000	125,000	246,500
○ 사업비		18,900	54,000	75,000	147,900
- 국 고		6,300	18,000	25,000	49,300
- 국고융자					
- 지방비		4,725	13,500	18,750	36,975
- 자 담		7,875	22,500	31,250	61,625

○ 배추 플라스틱은 '96-'98에 걸쳐 자담 50%, 국고50% 지원

5. 추진일정

○사업추진체계에 따른 사업계획 ,확정실시: 98-2004

8-2. 포장출하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락시장 농산물 포장출하 실태

구 분	거래품목수	포장출하 실태
계	147	
과실류	37	○전량 포장출하 - 포도,금귤 일부는 스티로폼상자 포장 - 기타 과실류는 골판지상자 포장
채소류	110	○산물출하품목 : 7개품목 - 배추,무,알타리,마늘,대파,쪽파,수박 ○그물망(마대) 포장 : 5개품목 - 배추일부,양배추,양파,마늘(저장), 무(저장) ○골판지 상자 : 서류, 기타채소류 ○스티로폼상자 : 딸기 일부

문제점

- 포장 출하품의 선별미흡, 품질불량, 외부표시사항과 내용물의 불일치 사례로 유통인 및 소비자에 신뢰성 저해
 - 속박이 비율 : 사과·배 10~15%, 오이·호박·20~25%, 딸기·참외 30~40%
- 산지의 포장출하 기반시설(집하장,상차장비등) 미비 및 인력 부족으로 엽채류의 포장화 부진
 - 포장화율 : 배추 0.1%, 무 10.7%, 수박 4.4%

- 포장출하에 기울인 노력과 비용에 대한 보상(경락가격 반영 등) 불투명 및 포장출하 필요성 인식부족

2. 추진방향 및 목표

- 비규격 산물출하품의 전량 규격포장화 유도
 - 포장재 중점지원
 - 규격포장 출하품 우대조치 및 산물출하품 제재 강화
- 규격포장 출하상품의 유통인, 소비자 신뢰성 확보
 - 출하단체를 통한 계도 및 숙박이 등 불량출하자 제재조치
- 규격포장·파렛트 출하 유리점 중점 홍보 실시

3. 세부추진계획

포장출하품 우대 조치

- 포장재 비용지원 ('97년 신규사업)

< 배추 · 수박 >

- 지원자금 : 8,680백만원(국고4,960 , 서울시비 3,720)
- 지원규모 : 가락시장 배추·수박 반입량의 50% 수준
- 지원기준 : 포장재 비용중 58% 지원(매당)

< 마 늘 >

- 지원자금 : 84백만원
- 지원규모 : 가락시장 마늘 반입 전량(100%)
- 지원기준 : 포장재 비용중 58% 지원(매당)

- ※ 기타 비포장 출하품(무,파등)은 관리공사 쓰레기유발부담금 예산 활용 지원추진(확보액 7억원)

○ 비가림시설 우선사용

- 설치계획 : 도매시장법인별 1개동 이상(총639평)
- 설치현황 : 5개동 439평은 설치운영중
(2개동 200평은 설치추진 중)

※ 향후 소요판단 필요시 추가 설치

○ 포장·파렛트 출하품 하역료 대폭 인하 ('97. 4. 15)

- 하역료 단가 : 파렛트당 1,800원

< 사과외의 경우 하역료 비교 > --- 5톤차량 400상자 기준

- 비파렛트 출하품 : 차량당 72,000원(상자당 180원)
- 파렛트 출하품 : 차량당 18,000원(상자당 45원)

○ 쓰레기유발부담금 면제

- 쓰레기유발부담금 (톤당) : 마늘·배추 5,000원, 무·양배추 700원,
대파 500원, 양파 400원

□ 비포장 출하품 제재조치

○ 배추 쓰레기유발부담금 인상 ('97. 2. 1)

- 인상금액 : 톤당 3,000원 ⇒ 5,000원
(5톤차량 기준 : 18,000 ⇒ 30,000원)

○ 쓰레기유발 행위부담금 부과 ('97. 1. 1)

- 대상품목 : 무, 배추, 대파, 마늘, 양배추, 양파, 미나리, 쪽파 등
- 징수기준 : 다듬기 행위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량에 따라
차등적용 (건당 20,000원 ~ 50,000원)

· 작업량이 1m³이상이거나 500kg이상시 부과

· 작업인원 1인 추가시마다 10,000원 추가

○ 쓰레기 종량제 시행 ('97. 4. 1)

- 처리비용 : 산물출하품은 5톤차량당 종량제 봉투비용으로
80,000원 징수

-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최소한의 다듬기로 쓰레기 발생량 대폭 감소 : '96 동기대비 51%감소
 - '96. 4. 1 ~ 4.30 : 19,936m'(일평균 : 664m')
 - '97. 4. 1 ~ 4.30 : 9,660m'(일평균 : 322m')

4. 향후 추진계획

- 포장재지원 대상품목 및 시장 확대
 - 품 목 : ('97) 배추·수박 → ('98이후) 배추, 수박, 무, 양파, 양배추, 대파, 마늘 등
 - 시 장 : ('97) 가락, 구리, 안양시장 → ('98이후) 전국공영도매시장
- 쓰레기유발부담금제 시행확대 및 쓰레기유발부담금 인상
 - '97년중 5개광역시 도매시장 실시, '98년이후 전체공영 도매시장으로 확대추진
 - 쓰레기유발부담금 인상 : 현행 5,000원/톤에서 단계적으로 인상 조정
- 비포장출하품의 도매시장 반입 금지 조치 검토
 - 품목별 포장 출하율이 일정율(70%) 이상 도달시 비포장품 반입금지

9-1. 팔렛트·지게차 구입자금 지원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대외적으로 농산물시장및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대내적으로 물동량 증가, 노동력 부족, 교통체증에 따른 물류환경 악화에 대응하여 유통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기계화하여 (시설·장비 표준화) 물류흐름 효율화

나. 현황 및 문제점

장비보유현황

구 분	공판장	RPC	집배센터	비료수송	산지유통 시설(추정)	공영도매 시장	합 계
지게차	3	201	5	79	300	12	600
팔레트	1,600	81,966 (33,500)	1,700 (1,700)	3,870 (3,870)	35,000 (47,000)	1,250	125,386
컨베이어	18					41	59
전동차	29					55	84

※ 괄호안은 표준팔레트 수치임.

문제점

- 물류표준화의 기본인 팔레트 등 보급비율 및 활용도 낮음
 - 자가제작으로 표준팔레트의 보급비율이 낮고, 비용과다 소요
 - 표준팔레트 보급율 : 포장센터 63%, 저온창고 26.3%

- 물류표준화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산지·소비지 물류기반 취약
 - Deck시설미비, 저장창고 등의 입구면적협소로 지게차 이용곤란
 - 저온저장고 등 적정 보관시설 부족하여 상품성 유지 어려움
 - 시설이 임의로 제작·사용되어 시설·기기의 정합성 저하
- 하역기기 이용 부진으로 인력에 의한 하역 관행화
 - 시설영세 및 구입비용 과다로 지게차 등 기기보유 부족
 - 시설 등의 정비가 되지 않아 이용할 공간없음
 - 가락시장의 경우 하역노조 문제 타결안됨
- 시설장비 등 파악정보 부족 및 정보체제 부족

2.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농산물 운송, 보관, 하역등과 관련된 기기, 설비 규격화보급
 - 지게차, 전동차, 컨베이어등은 개별 유통주체에 대한 보급
 - 표준파렛트의 보급확대 및 공동이용시스템 보급
 - 기기,장비 미보유업체에 대한 지원 및 장비대여업의 육성책과 연계추진
- 농산물 및 비료,사료 분야와 연계추진

□ 목 표

- 파렛트적재 출하: ('96) - ⇒ ('2001) 30% ⇒ ('2004) 50%
- 하역기계화 이용: ('96) - ⇒ ('2001) 50% ⇒ ('2004) 90%

3. 세부추진계획

□ '97 지원계획

- 내 용 : 표준파렛트와 하역장비인 지게차 등 구입자금 지원
- 지원품목 : 파렛트 · 지게차 · 전동차 · 컨베이어
- 용자조건 : 연리5%, 2년거치 3년상환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터 등

□ 주요 검토사항

- 시설장비 표준화 대상확대
 - 대 상 : 지게차, 전동차, 컨베이어, 차량 (저온수송용, 광폭차량)
 - 시설자동화 기기 구입자금 : 선별기, 세척기, 포장기 등
 - 유통시설 개보수 자금 등
- 지원형태 및 수준개선
 - 국고보조 40%, 국고융자 40% (연리3%, 3년거치 5년상환)
- 지원조건
 - 물류표준화 시책에 적합한 (ULS통칙에 맞는)시설·장비.

4. 투자계획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 사업량					
- 파렛트		100,000매	50,000매	360,000	510,000
- 지게차		175대	100대	729대	1,004대
- 전동차		300대	200대	1,465대	1,965대
- 컨베이어		30대	20대	108대	158대
- 차량(저온수송, 광폭차량)		-	100대	712대	812대
○ 시설자동화기기구입자금 ('98-2004) (선별,세척,포장기 등)		-	20대	150대	170대
○ 유통시설 개보수자금 ('98-2004)		-	50개소	360개소	410개소
○ 사업비 (백만원)		8,750	13,530	116,250	138,530
- 국 고		-	5,475	46,500	51,975
- 국고융자		7,000	5,160	46,500	58,660
- 지방비		-	-	-	-
- 자 담		1,750	2,895	23,250	27,895

5. 추진일정

○97년 사업평가보고 : '97 하반기

○사업계획에의거 지침수립및 시행 : '97-2004

9-2. 가락시장 하역인원 감축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하역기계화의 진척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토록 유도하여 원활한 하역기계화 및 하역비 절감 도모

나. 현황 및 문제점

- 가락시장 청과부류 하역인원 현황
 - '96년말 현재 3개 하역노조에 총 1,411명
- 고령자 등도 노조에 신규 가입자가 없으면 탈퇴하지 않아 인원 감소 요인이 발생해도 자연감소는 없음
- 하역의 기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잉여인력 발생 예상
 - 잉여인력이 순조롭게 감축되지 않으면 하역기계화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

2. 추진방향 및 목표

- 기계화 진척도를 고려,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하역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 3~5년간 현원(1,411명)의 1/2수준 감축
- 인원감축으로 인한 도매시장 거래에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도매시장 법인·하역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
- 중·장기적으로 하역인원의 도매시장법인 직원화 또는 하역노조의 전문하역회사 전환 추진

3. 세부추진계획

- 서울시에서 인원감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
 - 하역기계화 진척 속도를 감안한 실현가능한 연도별 감축목표 설정
 - 현재 하역노조원을 등록하는 등 신규 유입발생 억제장치 마련
 - 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 하역노조 대표로 구성되는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추진

- 감축되는 하역노조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농안기금 100억원을 서울시에 대여
 - 1인당 지급액, 연도별 소요재원, 지급방법 상환재원 마련을 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기금 적립은 서울시에서 도매시장법인, 하역노조등과 협의하여 결정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수준

4. 투자계획

- 서울시의 인원감축계획수립후 농안기금 용자신청을 검토하여 결정

5. 추진일정

- 계속 추진

9-3.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농산물 유통의 전단계를 표준화하여 일관수송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파렛트를 표준화하고 상호교환사용하는 공동이용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 물류비 절감과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포장센터등에 파렛트가 보급되어있으나 내부이동용. 깔판으로 사용
- KPP설립되어 파렛트 대여 사업 수행중
- 농협에서 비료의 일관파렛트화를 위해 한국파렛트풀(주)와 풀이용계약을 맺고 일관파렛트화 실시계획
- 물류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파렛트 보급중
 - '97년도 100,000매 생산자단체 등에 80%음자제공

□ 문제점

- 보급율저조 및 표준파렛트보급 저조
 - 전체파렛트중 농업부분은 1.7%(전체 4400만매)
 - 파렛트구입비용과다(30,000원)와 연계된 장비부족
- 상품의 계절적 집중출하로 파렛트 적시.적기공급의 어려움

-파렛트 1회전 장기간 소요(최대 15일 추정)

○ 농산물파렛트 풀시스템은 국내 KNOW-HOW축적업체가 없음

2.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농산물부분에서 파렛트 풀 시스템구축하여 초기에는 농산물수. 배송을 구축하고 양곡, 생활물자,가공식품,영농자재 등에 확장
-농협,파렛트 협회담당
- 비료의 파렛트 풀 시스템 성과분석하여 기존의 KPP공동이용방식 또는 농림부분의 농협중심 파렛트 풀 시스템 운영방안 강구
- 플라스틱 상자등 물류장비의 풀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 고랭지배추 성과 분석하여 전농산물 확대 방안 강구

□ 목 표

농협 자체 풀 교환방식의 기반구축 및 한국파렛트 풀(주)와 렌탈 계약체결등의 보완을 통해 파렛트 풀 시스템의 조기구축으로 물류비절감.

3. 세부추진계획

- 목재파렛트와 플라스틱 파렛트의 경제성 분석 : '96. 5
- 농협중심 운영시 비용분석 : '97. 6
- KPP렌탈 사용할시 비용분석 : '97. 7
 - 1회전 소요기간,렌탈비용등 분석
- 파렛트 보급계획수립 : '97. 9
 - 산지농협 수요조사하여 수립
 - 농협중앙회가 정부지원받아 일괄구매하여 보급

- 파렛트 풀 시스템 운영 표준모델 개발 : '97.10
 - 농협중심과 KPP중심 구축모델 개발
-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최종안 작성 : '97.11
 - 물류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연도별 파렛트소요량과 예산반영
 - 품목별 운영주체 선정
 - 파렛트구입시 종류선정(품목별로 나무,플라스틱구분)
 - 파렛트보급 및 관리방안 제시.

4.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04	계
○ 사업량 (파렛트)		100,000매	50,000매	360,000매	510,000매
○ 사업비		3,000	1,500	10,800	15,300
- 국 고			600	4320	4,920
- 국고융자		2,400	600	4320	7,320
- 지방비					
- 자 담		600	300	2160	3,060

주) 지원 비율 : 국고보조 40%,국고융자40%,자담20%

파렛트 단가 : 30,000기준

5. 추진일정

- 세부투자계획에 의거 파렛트 보급 및 운영지도 :98년 중

10-1,2,3.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정보망 구축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농산물유통 효율성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EDI(전자자료교환 방식) 도입으로 상거래 방식의 정보화 촉진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농산물물류센타 및 관련 유통시설 등 간의 농산물 물류정보망 및 정보지원 시스템 구축(농산물 EDI/EC)

나. 현황 및 문제점

- 공영도매시장, 농협, 생산자(작목반), 산지공판장 등 농산물 유통관련 기관·단체의 가격정보 중심의 시스템운영 및 정보제공
- 농산물 코드 및 거래전표등의 정보표준화 미흡
- 농업경영 관련 생산·기술·자재·유통, 시황정보등의 종합정보 부족으로 수급조절의 통합정보제공 체계 미흡

2. 추진방향 및 목표

가. 추진방향

- 산지유통체계, 물류센타, 공영도매시장, 생산자(작목반)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생산, 출하등의 상거래의 전자화를 위한 농산물전자상거래(EDI/EC)의 물류정보 인프라 구축

나. 추진목표

- 농산물 물류정보 인프라 구축 및 전자상거래(EDI/EC)의 도입으로 물류정보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물류정보망을 기반으로 하는 SCM(Supply Chain Management)체제 구축 및 농산물 EDI/EC 지원센터운영

3. 세부추진계획

가. 추진내용 및 일정

□ 1단계 ('97~'99)

- 농산물 물류·유통 프로세스의 재설계(BPR) 및 거래양식, 코드표준화('97. 4~12)
 - 정보입력 방식의 표준화 : DATA규격, 형식, 항목, 기술방법
 - 정보교환 및 공유를 위한 규칙 표준화 : DB형식, 분산DB, DB 통합등
 - S/W 시스템의 표준화 : 응용프로그램, OS, 하드웨어, 통신규약 등
- 농산물전자상거래(EDI/EC) 정보전략계획 수립('97. 6~12)
- 농산물전자상거래(EDI/EC) 시범지원시스템 구축('98~'99)
 - 공영도매시장, 도매법인, 물류센터, 산지공판자, 포장센터 등과 산지주산단지(작목반)등과 연계, 통합운영되는 one-stop service 유통통합정보
 - 농산물 one-stop service의 전자상거래 (EDI/EC)체제 시범사업 실시

□ 2단계 (2000 ~ 2001)

- 농산물전자상거래 (EDI/EC) 체계 확대
- 농산물 EDI/EC 통합지원 및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 농산물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전자경매시스템 구축

□ 3단계(2002 ~ 2004)

- 농산물전자상거래 (EDI/EC) 구현 및 확산
-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물류정보망을 연계한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체간의 전자상거래 및 정보서비스 구현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 실 적	'97예산	'98예산 요 구	'99~'2004	계 ('94~'2004)
○ 농산물전자상거래 계획 수립	-	300	100	-	400
- 유통·물류정보표준화	-	100	100	-	200
- 농산물 물류 정보화 ISP 수립	-	200	-	-	200
○ 유통통합정보화 및 전자상거래(EDI/EC)의 물류정보망 구축	-	300	8,000	63,500	71,800
- 농산물유통통합정보체계	-	-	3,500	30,000	33,500
- 농산물전자상거래체계	-	-	4,000	30,000	34,000
- 전자 경매시스템	-	300	500	3,500	4,300
○ EDI/EC 정보지원센터 정보화지원	-	-	1,000	18,000	19,000
계	-	600	9,100	81,500	91,200

11-3. 농산물 물동량 물류비 및 유통마진 조사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농산물 유통정책 추진시 기초적 데이터의 조사 필요
- 주요 농산물의 유통실태 및 유통비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유통개선의 기초자료를 제공
- WTO 출범 및 OECD 가입에 따라 국제협력 및 우리나라 농산물 보호 차원에서 농산물 물류비의 정확한 파악이 요구됨

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조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
- 조사품목 : 매년 일부 품목(9~13개품목)을 교대로 20여개 품목조사(2~4년주기)
- 조사내용 : 산지 및 소비지 유통실태, 주요 유통경로, 유통마진 등
- 조사방법 : 조사대상 품목별로 성출하기에 주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경로상 유통주체에 대하여 청취 및 확인조사
- 기 타 : 매년 일부품목을 교대로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 하였으나 '96년부터 조사 중단

(2) 문제점

- 농산물 유통실태 및 마진조사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로서 단기

- 적인 수익이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조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속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곤란함
- 품목별로 1회적인 출장조사로서 유통경비 산출에 있어 대표성과 객관성등이 결여됨

2. 추진방향 및 목표

- 농산물 물류비 및 유통마진의 대표성,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표본조사 방법을 도입
- 매년 일관성 있는 자료를 조사, 집계함으로써 유통마진 통계조사로서의 일관성 및 지속성 유지
- 조사자료의 지수화(Marketing cost index : 유통비용지수) 추진
 - 매년 품목별, 유통비용 변화요인의 비교 등 유통현황 Monitoring 가능

3. 세부추진계획

가. 조사내용

- 물 동 량 : 유통경로별 물량점유비율 조사(표본조사)
(예) 대형소매기구의 직거래비율
- 물류비 및 유통마진 : 유통단계별 포장비, 운송비, 하역비, 물류정보비, 물류일반관리비 등 물류비용 및 마진조사
- 기 타 : 거래단위, 포장, 운송방법, 판매처, 판매방법, 판매가격 등 거래실태 조사

나. 조사품목

- 조사품목의 확대 및 세분화 : 27품목 36종류

〈 품목의 세분화 〉

- 무, 배추, 감자 : 봄, 고랭지, 가을 품목으로 구분
- 토마토 : 일반토마토와 방울토마토로 구분
- 고 추 : 풋고추와 건고추로 구분

〈 품목 확대 〉

- 축산품목 포함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다. 조사대상, 지역 및 시기

- 조사대상 : 조사품목의 유통경로별 생산자(생산자 조직), 산지 수집상, 저장업체, 도매상, 소매상 등 각 유통주체
- 표본수 : 품목별 적정수의 표본추출
- 조사지역 : 품목별 주산지 및 소비지
- 조사시기 : 조사품목에 대하여 매년 조사

라. 단계별 추진내역

□ 1단계: '97 (추적조사)

(1) 조사방법

-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동일품목에 대해 유통경로를 따라 조사
- 조사경로
 - ① 생산자 → 수집상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② 생산자 → 포장센터 → 도매상 → 소매상 → 소비자
 - ③ 포장센터 → 대형유통업체 → 소비자
- * 조사경로 및 시기를 과거와 동일하게 하여 조사결과 비교 분석
- 조사대상 품목 : 27개중 14개 중요 품목 조사

(2) 조사내용

- 판매량, 판매시기, 판매처, 판매방법, 판매가격, 출하비용 내역 등

□ 2단계: '98 (혼합조사)

(1) 조사방법

- 추적조사와 시점조사를 병행
- 시점조사 : 동일한 시점에서 일정지역의 생산자(생산자 조직), 수집상, 도매상, 소매상 등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유통비용을 항목별로 측정

(2) 조사내용

- 품목 : 27개 품목
- 유통단계별 내용을 세분화하여 심층조사
 - 기존의 유통마진 조사항목중 물류비용 항목 등을 세분화하여 조사품목에 대한 유통단계별 마진조사
- ※ 물류비용 항목 등의 중점조사

□ 3단계: '99이후 (혼합조사)

(1) 조사방법

- 추적조사와 시점조사를 병행
- 조사자료의 지수화(Marketing cost index : 유통비용지수)
 - 조사 년도, 조사시점별 비교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유통단계별 개선 방안마련
 - 유통비용지수 편제 및 대외공표(2000년)

○ 조사유통경로

생산단계(생산지, 수집상, 포장센타 등) → 도매단계(도매시장, 물류센타, 대형유통업체) → 소매단계(대형소매점, 일반소매점) → 소비자

(2) 조사내용

○ 2단계 조사내용과 같으며 조사자료의 지수화 추진

* 조사내용 : 2단계와 동일

4. 투자계획

○ 농안기금사업으로 수행

5. 추진일정

○ '97. 4 : 예비조사 및 '97유통실태 조사계획 수립

(별첨 '97 월별 조사품목 및 지역 참조)

○ '97. 5 : 대형유통업체 직거래 물량 추정

○ '97. 12 : 제 2단계 유통실태 조사계획 수립

- 표본 설계, 조사표 등

○ '99. 10 : 제 3단계 유통실태 조사계획 수립

- 품목별, 지역별 가중치 설정 등 유통비용지수 산정방안 수립

< 별첨 >

단계별 조사항목

구 분	2~3단계	
	1단계 ('97년)	2~3단계 추가 ('98년 이후)
양곡류	쌀	참쌀, 대두
양념채소	고추(건고추, 풋고추) 마늘(한지형, 난지형)	양파, 대파
엽채류	무(봄, 고랭지, 김장) 배추(봄, 고랭지, 김장)	양배추, 상추
기타채소		당근
과일류	사과, 배, 단감, 포도, 감귤	
과채류	수박, 참외, 오이	토마토(일반, 방울)
서 류	감자(봄, 고랭지, 가을)	고구마
축산부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계	14품목 22종류	27품목 36종류

3.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투명거래 정착

- 12-1,2,3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개장
- 13-1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 13-2 물류센터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 13-3 물류센터 운영방식 다양화
- 14-1 물류센터의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 14-2 유통정보 시스템 개발
- 14-3 물류센터에 정책자금 지원방안
- 15-1 농협 소비지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 15-2 축협 소비지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 16-1 형식적 기록상장 근절방안
- 16-2 지방 공영도매시장 상장예외제도 활용
- 17-1 도매시장법인간 거래활용 방안
- 18-1 전자식 경매 시범 도매시장법인 선정
- 19-1 도매시장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19-2 도·소매 분리로 시장운영의 효율화
- 19-3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유지 및 규모화
- 19-4 영세 중도매인 통합·법인화 유도
- 19-5 출하촉진자금 지원방식 개발
- 20-1 도매시장 평가내용 보완
- 20-2 도매시장 평가결과 반영 강화방안

여 백

3. 소비지 유통경로간 경쟁촉진과 투명거래 정착

12-1,2,3.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개장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9)

- 도매시장 건설사업은 '79년부터 추진하였으며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 ('91.6.10)의 일환으로 2001년까지 34개소 공영도매시장을 건설키로 함
- '94년 농어촌발전대책 및 농수산물유통개혁대책 수립시 당초 2001년까지 34개소 건설을 '98까지 앞당겨 추진

나. 추진성과('94~'96)

- 기개장운영(9개소) : 가락동, 대구, 광주, 대전, 청주, 울산, 수원, 전주, 부산
- 개장운영(5개소) : 인천, 천안, 창원, 충주, 춘천
- 건설추진(19개소) : 구리, 안산, 안양, 익산, 서울서남, 부산동부, 광주제2, 인천제2, 포항, 진주, 원주, 강릉, 정읍, 안동, 대전제2, 고양, 성남, 순천, 구미
- ※ 건설목표 34개소중 '96까지 미선정된 1개소는 '97부터 마산시가 추진중임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농수산물 도매시장건설은 유통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환경·건축 등 종합행정으로 업무가 복잡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함

- 지방의회의원, 지역주민들의 유치 경쟁등으로 위치선정의 어려움과 토지 소유주들의 반발, 각종행정절차 이행등으로 도매시장건설 지연사례빈발
- 건설추진중인 20개소중 구리, 안양등 4개소는 '97년도에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나머지 16개소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이 '98까지는 공사완료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기히 개장중(14개소)인 도매시장의 경우, 기본계획 확정 후 실제 개장시까지 대략 4~7년 소요
- 특히, 우리나라는 도매시장 시설물 배치와 관련된 정형화된 틀이 없어 시설물의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 신중한 검토보완이 필요함

3. 세부추진계획

가. 전국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개장

- ('97년까지) 18개소 → (2001년까지) 34개소 개장
- 현재 추진중인 16개 도매시장의 착실한 건설 추진
 - 효율적인 시설물 배치를 위한 신중한 검토 보완
 - 안전공사 추진 도모

나. 수도권 거점지역에 도매시장 건설 촉진

-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물량의 수집과 분산 원활화 유도
- 수도권 도매시장 건설 추진계획
 - '97개장(3개소) : 구리, 안양, 안산
 - '99개장예정(3개소) : 성남, 고양, 인천제2
 - 2000개장예정(1개소) : 서울서남

다. 건설지연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평가를 거쳐 개장시기 조정

- 도매시장 34개소 건설 목표년도를 2001년으로 연장하고 현재 추진중인 16개 도매시장은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개장시기 조정

4.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4~'96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9~2004)
○ 사업량 (단위)	15	17	12	14	16
○ 사업비	463,683	222,920	151,287	207,182	1,045,072
- 국 고*	183,287	90,749	64,378	83,438	421,852
- 국고융자*	-	-	-	-	-
- 지방비	280,396	132,171	86,909	123,744	623,220
- 자담	-	-	-	-	-

* 농특세, 농특회계, 일반회계, 농안기금, 축발기금 등

5. 추진일정

구 분	개 소 수	지 역
	개소	
'97 개 장	4	○ 구리, 안양, 안산, 익산
'98 개 장	2	○ 정읍, 안동(확장)
'99 개 장	10	○ 부산제2, 인천제2, 포항, 진주, 고양, 성남, 강릉, 원주, 순천, 구미
2000개장	3	○ 서울서남, 대전제2, 광주제2
2001개장	1	○ 마산

※ 추진상황을 평가하여 사업기간 조정

< 참 고 > 도매시장 건설 추진상황

(단위:천평,억원)

시 장 명		규 모		총 사업비	총국고	'95까지 투 자	국고예산		추진상황 (시도계획기준)
		부지	건설				'96	'97	
합 계		969.3	423.2	14,080	5,182	2,508	721	907	
개장 (15개소)	가라동	165.5	60.0	933	347	347	-	-	○ '85. 6.19개장
	대전	21.2	8.0	844	10	10	-	-	○ '87.11. 2 "
	대구	31.4	12.0	164	40	40	-	-	○ '88.10. 7 "
	청주	10.4	4.0	51	10	10	-	-	○ '88.11.10 "
	울산	12.0	4.9	65	27	27	-	-	○ '90. 3.20 "
	광주	16.9	10.2	64	17	17	-	-	○ '91. 2.27 "
	수원	13.7	4.6	110	23	23	-	-	○ '93. 2.27 "
	전주	18.2	7.3	152	52	52	-	-	○ '93.10.29 "
	부산	43.3	27.6	572	125	125	-	-	○ '93.12.21 "
	인천	18.2	7.8	301	75	29	-	46	○ '94. 1.11 "
	천안	11.5	2.8	76	32	24	-	8	○ '95. 7.18 "
	창원	17.2	8.8	350	133	133	-	-	○ '95.10.14 "
	충주	7.9	1.9	73	24	24	-	-	○ '95.11.15 "
	춘천	9.5	4.8	94	47	47	-	-	○ '96. 9. 2 "
	구리	56.5	32.7	1,094	547	521	26	-	○ '97. 6. 9 "
건설중 (7개소)	안산	12.9	6.0	75	38	38	-	-	○ '91-'97(97상)
	안양	25.2	19.2	722	361	304	57	-	○ '93-'97(97상)
	안산	34.5	6.1	180	90	43	41	6	○ '93-'97(97말)
	부산동부	45.2	21.4	934	280	134	15	50	○ '94-'99건설
	진주	17.2	10.9	362	181	48	66	26	○ '95-'99건설
	성남	25.5	16.7	772	386	-	38	139	"
	안동	13.0	3.7	105	25	-	-	25	○ '97확장
추진중 (12개소)	서울서남	44.0	28.0	1,500	450	291	65	-	○ '94-'99건설
	광주제2	50.0	13.0	400	120	68	1	-	○ '94-'99건설
	인천제2	31.4	17.3	809	243	45	67	6	○ '95-'99건설
	포항	20.0	8.0	200	100	7	30	55	"
	원주	16.0	6.0	240	120	48	15	17	"
	강릉	16.0	4.0	184	92	37	35	-	"
	정읍	19.7	4.0	112	56	16	20	10	○ '96-'98건설
	대전제2	34.0	14.0	700	210	-	30	90	○ '96-'99건설
	고양	40.9	20.5	912	456	-	160	182	"
	순천	20.0	7.0	200	100	-	30	21	"
	구미	25.0	8.0	250	125	-	25	20	"
	마산	25.0	12.0	480	240	-	-	88	○ '97-'99건설
***							119	○ 대구제2 사업포기	

※ 사업비 : 개장지역은 실적기준, 추진중인 지역은 예산 기준

13-1.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설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 9)

- 기존 도매시장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선진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로 농어민의 출하처 확대
-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판매상과의 직접 연결로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물류비용 절감
 - 2004년까지 전국 대도시 주변에 16개소 설치

나. 추진성과 ('94-'96)

- '96까지 물류센터 8개소 선정 추진
 - '95선정 : 창동, 양재동, 청주, 부산
 - '96선정 : 천안, 전주, 장성, 군위
- '95선정지구는 '98개장이 가능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문제점 >

- 물류센터 부지매입 지연으로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매년 막대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
 - '95이월 : 453억원, 불용 : 108억원
 - '96이월 : 604억원, 불용 : 265억원
- 물류센터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시키지 못해 부지형질변경, 건축허가 등에 애로
 - 창동, 양재동, 청주, 부산 등

< 보완과제 >

- 물류센타 대상자 선정시 사업의지가 확고하고 부지확보가 확실한 자를 사업자로 선정
- 물류센타가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관련 법령 개정

3. 세부추진계획

- '97년까지 10개소를 선정하고, '98년부터는 사업의지가 확고하고, 부지확보가 확실한 자를 사업자로 우선 선정
 - '98년은 신규지정을 일단 보류
- '95선정지구의 개장 운영
 - '98. 1/4분기중 개장 운영될 수 있도록 양재, 창동, 부산지구의 건축공사 완공 촉구
 - ※ 청주는 '98년말 완공예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까지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사 업 량	8개소	10 (2)	12 (2)	16 (4)	16
○사 업 비	150,268	193,953 (60,437)	76,375	1,494,240	1,914,836
- 국 고	47,563	84,941 (44,937)	23,810	430,286	586,600
- 국고융자	57,046	41,220 (15,500)	20,000	316,834	435,100
- 자 담	45,659	67,792	32,565	747,120	893,136

※ ()는 전년이월액임.

<참고> 물류센타 건설추진현황

- '95 사업승인 4개지구 건축공사중, '96사업승인 4개지구 부지매입중,
'97. 2개지구 부지매입 준비중
- 지구별 추진상황

구 분	사업규모(평)		사 업 승인일	사 업 추 진 현 황('97.3)				준 공 예정일	비 고
	부지	건물		부지매입	착공일	현공사	공정율		
양 재	20,420	17,932	'95.6.23	'95.12.30	'96.2.14	골조공사	36%	'97.12	
창 동 (서울시합작)	10,291	11,597	'95.2.2	'95.12.29	'96.6.20	골조공사	22	'98.3	
청 주	20,000	5,559	'95.6.23	'95.12.30	'96.12.1	파일시공	8	'98.5	
부 산 (수 협)	5,000	6,505	'95.6.23	'90.6	'96.1.26	1층골조 공사	38	'98.7	정상
전 주	10,000	6,000	'96.4.12	7,000평 확보	-	-	-	'98.하	확보토지로 건축가능
군 위 (군39, 농51,동10)	35,500	7,900	'96.4.12	30,000평 확보	-	-	-	'98.하	확보토지로 건축가능
천 안 (도49,농21 축30)	39,757	10,000	'96.4.12	'97.4	-	-	-	'98.10	건설설계 추진중
장 성 (거 평)	32,160	7,226	'96.4.12	25,000평 확보	-	-	-	'99.2	'97.4까지 부지매입완료
대 전 (농51,대49)	13,700	5,000	'97.3.26	-	-	-	-	2001	'97.12부지매입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
김 해	20,000	7,000	'97.3.26	-	-	-	-	2001	'97.12부지매입 -경남이 조성하 는 유통단지

※ 나머지 6개소는 수도권2, 강원권 1, 광주·목포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로 계획 중

13-2. 물류센타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1. 도시계획시설 포함 필요성

- 물류센타는 1만평~3만평규모로서 도시계획시설 미포함시 토지형질변경허가(통상1만m²이내)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움
- 이에따라 4개소(양재, 창동, 전주, 청주)의 물류센타는 창고 등으로 허가 받는등 편법으로 사업시행

2. 그간 관계기관과의 협의상황

-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요구 ('95. 2. 21 농림부 → 건교부)
 - 물류센타 설치근거법(농안법)에 허가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규모, 구조 및 설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개정 검토 회신 (건교부 '95. 3. 6)
- 행정쇄신위원회의 과제로 검토 ('95. 7)
 - 농안법 시행규칙에 물류센타 사업대상, 시설,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에 포함요구
 -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도시계획시설인 유통업무 설비의 요건에 맞도록 농안법령상 관련 규정보완토록 결과 통보 ('95.9.16)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개정안에 농수산물 물류센타 포함토록 재검토 요구 ('96.10.22, 농림부 → 건교부)
- 관계부처간 협의해서 농안법시행규칙,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규칙 개정 (감사원 권고사항 '96.12.28)

□ 당부요구 및 건교부 주장

< 당부요구 >

- 농안법시행규칙에 물류센타의 시설기준을 정하고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물류센타를 도시계획시설에 포함

< 건교부 주장 >

- 법률에 물류센타의 허가, 사후사업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근거가 불충분하여 토지수용까지 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로 인정곤란
- 근거법(농안법령)에 허가에 관한 사항(법률)과 시설의 규모 설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시행령)할 경우 검토

3. 관계기관 합의내용

- 당부, 건교부 차관보간 법령개정에 합의('97.5.7)

(농림부) : 농안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농안법시행령에 물류센타의 시설기준설정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시설기준을 정함.

(건교부) : 도시계획시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건교부령)개정

- 정부가 지원하는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시장 및 유통업무설비에 포함 시켜 도시계획시설로 건설가능토록 함

- 건교부는 인허가 대상이 대상시설만이 도시계획시설대상이 된다는 주장 철회
- 당부는 시행규칙 개정만을 주장하였으나 건교부요구사항 일단수용
 -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시행규칙개정사항으로 판명될 경우 시행규칙만 개정하기로 구두약속
-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합의 과제로 상정 ('97.5.15)

4. 추진일정

- 건교부와 합의내용에 대해 경제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농안법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개정 추진 ('97 하반기)

13-3. 물류센터 운영방식 다양화

1. 문제의 제기

- 물류센터는 산지의 생산자·생산자조직과 소비지 대형매장, 대량 소비처, 직판장 등을 직접 연결하는 새로운 소비지 유통시설
- 2004년까지 대도시 주변에 16개소를 건설하여 농수산물유통량의 25%를 물류센터가 담당
- 물류센터의 개장이 임박함에 따라 물류센터 운영방안 등에 대해 현 시점에서 재검하여 방향정립필요

2. 물류센터 운영방향

가. 운영방향 설정시 고려사항

- 기존도매시장과 차별화
 - 산지의 생산자와 소비지 대형소매점, 대량소비처를 직접 연결
 - 수집상 등 유통단계상의 개입자를 과감히 배제
 - 물류표준화·기계화로 물류비용을 최소화
- 다양한 기능수행
 - 집·배송뿐만 아니라 저장·소포장·가공과 상품개발 등 기능수행
 - 출하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기호와 정보를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기능유도

나. 거래의 원칙(3대 운영방향)

- 도매거래 원칙 : 물류센터는 대규모 집·배송시설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 도매거래에 적합하도록 건축된 시설임

- 경매절차 생략 : 물류센타에 경매절차 도입시 또 하나의 도매 시장이나 공판장으로 전략, 경매에 따르는 문제들이 물류센타에서도 나타날 것임.
- 물품의 산지조달 :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산지유통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물류센타 거래물량은 반드시 산지에서 조달하여야 함.

3. 추진일정

- 물류센타 기본 운영방안 확정 : '97년말까지
 - 물류센타 건설사업시행자간 충분한 협의검토를 거쳐 운영방안을 최종 확정
- 물류센타 운영방안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확정 : '98 상반기
 - '98 상반기 개장운영이 가능한 창동·양재동 물류센타에 실행계획 적용

14-1. 물류센타의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취급물량의 규모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 운영 기반 구축

나. 현황 및 문제점

- 대량수요처 요구물량의 수시 변동으로 물량 조달상의 불안정 발생
- 품목별 차량단위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류센타 경쟁력 상실

2. 추진방향 및 목표

- 고객에 부합한 상품개발 및 조달체계 구축
- 물류센타 거래회원 다수 확보 및 대량 수요처 중점 확보

3. 세부추진계획

가. 경쟁력있는 상품개발을 통한 안정적 사업량 확보

1) 경쟁력있는 상품개발

- 차별화, 전문화, 브랜드화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
- 개발상품 시험판매(Test-Marketing) 실시
 - 시험판매처 : 농협계통판매장, 한국마크로 등 신규개발 거래처
- 물류센타 출하규격 개발
 - 기존 표준출하규격을 정부표준화 사업추진방향에 부응하여 보완
 - 물류센타 중심으로 전계통사업장의 물류체계를 정비

2) 물류센타 전속출하조합 집중 육성

- 주산지조합중 신물류체제에 적합한 규격상품의 안정생산·공급이 가능한 조합 우선 선정
- 유통저리자금 ('97 : 80억원), 개발상품 도안·포장자재비등 지원 ('97 : 5억원)

나. 대량 수요처 확보

1) 물류센타별 대량거래처 확보 : 양재 (120), 창동 (70), 청주 (70)

- '98 양재물류센타 거래회원 확보 계획 : 10,000명

2)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전담 공급 추진

- 국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우리농산물 전담공급 추진
 - 농심그룹, 선경유통, KRSC(요식업체 물류센타)등과 협력협정 추진중
- 물류센타 사업기반 확대 및 외국농산물 수입 최소화 유도

3) target 시장별 마케팅전략 수립

- 대상 : 체인본부, 백화점, 자영소매업자, 요식업체, 벤더
- target 시장별 요구, 정보의 D/B화
- 사업설명회 순회개최 등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
- 역할분담을 통한 상호경쟁력 제고를 위해 협력협정 체결

4) 계통조직의 물류센타 전이용 추진

- 대상 : (주) 농협유통 판매장, 회원농협 전판매장
- 계통조직의 힘을 결집시켜 신유통체계 조기 구축
- 물류센타 전속 이용조합에 대한 저리자금지원 등 우대방안 강구

14-2. 유통정보시스템 개발

1. 추진배경

가. 현 황

- 단위사업장별 전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 회원농협 경제종합시스템, 양곡마케팅본부 판매시스템, 공판장 경매자료 관리시스템, 농가공물류센타의 창고운영 시스템, (주) 농협유통의 체인본부 시스템, 슈퍼의 POS 시스템 등
- 농산물물류센타 건립으로 물류센타 운영시스템 필요

나. 문제점

- 단위사업장별 전산운용을 통합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의 부재
- 일부사업은 기존 신용온라인 의존도가 높아 경제업무 고유 전산시스템 필요
- 농산물 물류센타 운영에 필요한 작황정보, 시황정보 등 유통물류종합정보망 필요
- 농산물 특성상 상품 표준화가 저조하여 전산화의 장애요소로 남아있음
- 물류유통 정보체계의 저효율, 고비용으로 국가경쟁력 저조

2. 추진방향 및 목표

가. 추진방향

- 신유통물류체계로 업무처리절차 개선
- 물류표준화로 물류시스템의 전산화 추진

- 생산자, 유통업체, 소비자를 연결하는 종합시스템 구축
- 적용가능한 부문에는 전자거래방식의 도입

나. 목 표

- 현장중심의 유통정보 분산으로 거래의 투명성 도모
- 물류시스템과 연계체제 구축으로 농산물의 유통비용 절감
- 농어민의 시장교섭력 증대로 농어민 소득 증대
- 물류유통통합체계 구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공동이익 증대
- 농산물의 적정 수급 파악으로 가격안정 도모

3. 세부추진계획

대상 사업장	추진 계획	정보화 대상 업무
회원 농협 경제종합시스템	○ 1단계 업무개발완료 ('97. 2) ○ 2단계 확대적용추진 ('97. 4 ~)	○ 판매사업 : 포장센터·공판장 등 ○ 가공사업 : RPC, 가공공장 등 ○ 이용사업 : 창고, 운송사업 ○ 관리업무 : 조합원관리 등
농산물물류센터	○ 양재물류센터 ('97. 12. 완료) ○ 창동물류센터 ('98. 3. 완료) ○ 청주물류센터 ('98. 5. 완료)	○ 산지영농정보 ○ 포장센터 운영시스템 ○ 물류센터 운영관리 ○ 예약판매, 현장판매 관리
양곡유통	○ 수도권 양곡마케팅 본부 ('96. 5. 완료)	○ 수발주, 물류관리, 통신판매, 전문점관리, 수발주 등
농특산가공유통	○ 성수동 농협가공물류센터	○ 창고 및 물류관리, 통신판매, 전문점관리, 수발주 등
계통생활물자	○ 기흥물류센터 ('97. 12. 완료) ○ POS시스템 도입(기적용중)	○ 물류센터관리, 수발주·수배송관리
소매판매장	- 판매장 특성, 규모에 적합한 시스템 보급	○ 소매 판매장 관리
유통자회사	○ 체인본부 시스템 (농협유통 자체개발중)	○ 농협 VAN을 이용한 수발주 ○ 직·가명점 관리
농협공판장	○ 공판장 관리시스템 (기적용)	○ 중도매인 관리·산지정산·경작 자료관리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	'99~2004	계 ('94~2004)
사 업 비	2,200	6,800	1,200	6,700	16,900

5. 추진일정

구 분	개발 1단계	개발 2단계	확대적용 단계
기 간	'96. 10 ~ '97. 3	'97. 4 ~ '98. 5	'98. 6 ~ 2002
내 용	농산물	상세설계 완료	프로그램 작성 및 테스트
	생활물자 및 농가공	상세설계 및 기본프로 그램 작성	테스트 및 적용 ('97. 12)
	EDI	기본설계, 표준문서개발 및 시범적용	- 수발주 적용 ('97. 4) - 대금결제 등 업무별 확대 적용
			지역물류센터 적용 적용부문확대 농산물부문 업무개발

14-3. 물류센타에 정책자금 지원방안

1. 추진배경

- 농수산물 유통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건립되는 농수산물 물류센타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한 매취자금이나 출하선도금 등 지원
 - 2004년까지 전국 대도시 인근에 16개소의 물류센타 건설
-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공영도매시장과 달리 사업자의 고정투자 부담이 매우 큼.
 -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으로 물류센타 사업의 조기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물류센타 운영활성화를 위해 개장초기에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점차 축소
- 공영도매시장 지원 기준에 준하여 지원
 - 출하선도금 (35%), 결제자금 (15%)

3. 세부 추진계획

- 농수산물 물류센타 운영에 필요한 농수산물 출하선도금, 매취자금, 대금결제 자금 등 지원
- '98년부터 개장되는 물류센타 운영정상화를 위해 '97 하반기부터 소요자금 지원 추진

4.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7	'98	비 고
출 하 선 도 금	7,520	21,800	
매 취 자 금	5,640	8,200	
대금결제자금	-	-	자담으로 해결
계	13,160	30,000	

5. 추진일정

- '97 하반기부터 지원될 수 있도록 '97 농안기금 수정계획 및 '98 지원 계획 수립

15-1. 농협 소비지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1. 현황 및 문제점

추진성과

(단위 : 개소)

시 설 별	'93	'96	증 감
공 판 장	68	87	19
(공영도매시장 입주)	(9)	(15)	(6)
하 나 로 클 럽	-	7	7
하 나 로 마 트 (수퍼, 전시판매장, 직판장 등)	368	533	165
신 토 불 이 창 구	724	830	106
계	1,160	1,457	297

문제점

- 우리나라 총 소매업매출액중 농협의 비중이 4% 수준에 불과
 - 총 소매업매출액 ('96) : 96조 5,000억원
 - 농협소매업매출액 ('96) : 4조 180억원
- 외국 및 국내유통업체는 대형화, 체인화, 할인점화 되는데 비
해 농협소매점은 변화에 대응 미흡

2. 추진방향 및 목표

- 소비지 유통시설을 소비자 선호추세에 맞게 대형화, 전문화하여
민간유통업체와의 경쟁여건 마련
- 산지 농산물포장센터, RPC등과 소비지 유통시설과 직거래 사업
의 내실화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3. 시설설치 세부추진계획

가. 회원농협 공판장 시설확충 : ('96) 74개소 → (2004) 131개소

연 도	'96말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설치수	74 (19)	9 (3)	12 (6)	6 (3)	6 (3)	6 (3)	6 (3)	6 (3)	6 (3)
누 계	74	83	95	101	107	113	119	125	131

※ () 내서는 경매식 집하장의 공판장 전환

나. 하나로클럽 확충

1) 설치추진 기본방향

- 농협보유 대형 유희창고 등의 적극적 활용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추진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유 유희토지 활용

2) 설치추진계획

연 도	'96말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설치수	7	23	12	32	32	32	32	-	-
누 계	7	30	42	74	106	138	170	170	170

다. 하나로마트

1) 전시판매장 형태

- 장기적으로 춘천·대전·청주(지방대도시)와 수원·안산 등(수도권지역) 신설추진
- 운영방향 :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전시·홍보하는 농산물 전문판매장으로 육성

< 연도별 확충계획 >

연도	'96말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설치수	8	3	3	2	2	2	2	2	2
누 계	8	11	14	16	18	20	22	24	26

2) 유기농산물 판매장 형태

-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추진 (현재 서울시와 추진중)
- 향후 안전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감안하여 6대도시까지 확대추진

< 연도별 확충계획 >

연 도	'96말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설치수	4	5	16	6	6	6	6	6	6
누 계	4	9	25	31	37	43	49	55	61

3) 신용점포내 농산물 판매장 설치

- 대 상 : 신축건물 또는 기존건물중 여유면적 확보가능 신용점포
- 지 역 : 6대도시 및 지방 중소도시
- 규 모 : 100평 내외

< 연도별 확충계획 >

연 도	'96말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설치수	5	2	10	20	30	30	10	-	-
누 계	5	7	17	37	67	97	107	107	107

4) 도시농협 수퍼마켓 형태 판매장 운영 활성화

- 추진현황 : 시소재 이상 지역에 회원농협이 332개소('96말)설치운영

- 농협 수퍼마켓의 대형화, 차별화 추진
 - 매장규모 200평이상은 통합, 공동투자 등으로 확대 추진
 - 매장규모 100평미만은 점진적 폐쇄 및 신토불이창구로 전환
- 1차 상품 취급비율 제고 : ('96년) 50% ⇒ (2000년) 80%

라. 신토불이 창구 확충

< 연도별 확충계획 >

연 도	'96말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설치수	830	100	50	50	50	20	20	20	20
누 계	830	930	980	1,030	1,080	1,100	1,120	1,140	1,160

마. 농협식품 전문판매점 확충

- 기 능 : 주요 소비지에서 농협식품의 홍보·판매기능 수행
- 설치형태 : 체인형 농협식품 전문점

< 연도별 확충계획 >

연 도	'96말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설치수	100	200	300	300	300	200	200	200	200
누 계	100	300	600	900	1,200	1,400	1,600	1,800	2,000

바. 직거래사업의 내실화

- 농산물 『직판사업단』 운영활성화
 - 우수 농산물 판촉을 위해 서울지역·수도권내 각종 행사전담 및 농협 이미지 제고 홍보팀으로 운영
 - 주요행사 : 유관기관 연계, 신제품·명절 기획특판행사 등
- 지역단위 직판행사 강화

- 도단위 기획행사 전용 판매장 확충 (2001년까지 도별 1개소씩 확보)
-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
- 통신판매사업 내실화 도모
 - 우편배달 위주에서 『택배방식』 도입 병행
 - 신용카드에 의한 주문제도 개발
 - 홈쇼핑 참여기반 확충 및 참여품목 확대
- 농산물 상품권 사업 확대

15-2. 축협 소비지 판매장 확대 및 다양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 축협 판매장 설치운영 현황

('96. 12. 31현재)

구 분	중앙회			축산유통	회원조합				합 계
	한우 전문	목우·촌 가맹점	소 계		한우 전문	종합 판매	생활 물자	소 계	
개소수	18	24	42	16	113	83	250	446	504

- '96년말 현재 국내 식육판매업소 40,533여개 비하여 우리축협의 소매기능을 수행하는 판매장수는 504개소로 전체 1% 정도로 점유비가 극히 미미함.

나. 축협 판매장 축산물 취급물량 현황

(단위 : 톤, %)

구 분		'95(A)	'96(B)	대비 (B/A)
한우고기	국내전체	155,000	172,786	111
	축협전체	6,027 (3.9)	7,447 (4.3)	123
돼지고기	국내전체	625,000	647,610	104
	축협전체	8,548 (1.4)	9,611 (1.5)	112

- 국내 축산물 소매시장 점유비중 한우고기가 축협 전체 판매장의 4.3%로 점유비가 극히 미약하여 한우고기 소비촉진 및 소값안정에 선도적 역할이 지난함.

다. 판매장 규모 영세 및 시설자금 부족

- 판매장 설치에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임대료의 지속적인 상승 (평당 9,000천원)과 시설설치에 따른 비용증가로 경영부실 초래
 - 판매장 개설시(100평 기준) 소요금액 : 1,400백만원 (임차료 900, 시설 및 운전자금 500)
- 일반 대형유통업체 다수 생성에 따른 경쟁의 심화로 규모가 영세(100평이하)한 축협 판매장의 경영불리 (고객의 One Stop Shopping 욕구충족 불가)
- 개방화시대 대비 다양한 상품구비로 소비자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매장으로서의 전환시급 : 시대적 필요성 (고객만족)

2. 세부추진계획

가. 추진목표

- 축협의 소매기능 활성화로-국내 한우고기 점유비율 제고 : ('96) 4.3% → (2000) 10%
- 대도시 위주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주로 신도시)을 중심으로 축산물 판매점 확대 설치 : ('96) 254 → (2000) 660
- 축산물의 One Stop Shopping이 가능하도록 판매장 규모를 확대 (전용면적 150평 이상)
 - 대중 교통편리 지역 및 원활한 주차공간 확보

나. 연차별 한우고기 점유비 제고 및 판매장 설치계획

구 분		'96	'97	'98	'99	2000
국내산 한우고기 전체(A)		172,786톤	189,000	197,000	205,000	213,000
축 협	취급물량(B)	7,447톤	10,395	13,790	17,420	21,300
	점유비율(B/A)	4.3%	5.5	7	8.5	10
판매장 설치확대		254 개소	321	426	538	660
(중앙회)		(18)	(-)	(24)	(35)	(48)
(회원조합)		(196)	(229)	(258)	(307)	(388)
(축산유통)		(16)	(18)	(20)	(22)	(24)
(목우촌)		(24)	(74)	(124)	(174)	(200)

- 주) 1. 회원조합 생활물자 판매장은 한우고기 취급규모가 극히 미미하고, 주 판매품목이 생활물자이므로 계획수립시 제외하였음 (다만, 판매물량 만큼 축협의 소매 점유비는 항상 요인이 됨)
2. 목우촌 체인점 판매실적은 '96년도 취급물량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향후 계획에는 포함하였음.

3. 투자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92-'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0	계 ('92-2000)
○ 사업량	254	67	105	234	660
(중앙회직영)	(18)	(-)	(6)	(24)	(48)
○ 사업비	(14,981)		(17,600)	(38,400)	(70,981)
- 축발용자	(10,623)		(6,600)	(14,400)	(31,623)
- 자 담	(4,358)		(11,000)	(24,000)	(39,358)

주) 사업비는 중앙회 판매장 설치비임.

16-1. 형식적 기록상장 근절방안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 9)

- 중도매인의 포전매매와 수탁판매행위를 금지하고 도매시장에 입하되는 전품목의 상장거래 추진
- 특히 가락시장에서의 무, 배추 등은 '95.1.1부터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수탁판매토록 개선
 - 그동안 중도매인이 수탁거래하고 기록상으로만 상장하는 관행 불인정
 - 도매시장의 분산능력 보강을 위하여 일정수준이상의 중판은 중도매인으로 흡수
 - 도매시장법인의 직접수탁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 신규 도매시장법인 설립

나. 추진성과

- '95. 1. 1 부터 농산물의 전품목 상장거래 추진
 - 가락시장은 대아청과를 설립, 규모가 큰 위탁상을 흡수하여 무·배추 상장거래 추진, 분산능력이 있는 중도매인 신규허가
 - 이외의 시장은 개설자가 시장별 여건 감안하여 추진
- ※ 공영도매시장 상장경매율(유통공사 조사)

년 도	물 량	금 액
'94	73%	85%
'95	89%	92%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시장별로는 가락시장의 경우 감자·고구마·대파등, 부산·대구는 무·배추등 엽채류, 기타 수원·천안등 일부 지방시장은 양채류등 구색상품이 이에 해당
- 품목별로는 과일류·과채류·포장채소류는 대부분 정상 상장경매되고 있으나, 엽·근채류등 포장출하가 미흡하고 수집상에 의한 출하가 많은 품목 경우 상장경매 정착이 지연
- 상장경매 정착 지연사유
 - 중도매인의 위탁관행을 일시에 근절하기는 곤란
 - 경매장 협소 등 시설부족
 - 개설자의 적극적 개선 노력 미흡
 - 도매법인의 매취상장 활용도 저조
 - 포장화가 미흡한 일부 엽·근채류는 소수 중도매인이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

3. 세부추진계획

- 도매시장별로 개설자가 상장거래 정착방안 수립, 추진
 - 도매시장별로의 집하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시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매취상장 지시, 도매시장법인의 정가·수의매매방법도 적극 활용
 - 경매장 확충 및 실질적으로 분산능력이 있는 앞자리상 등을 중도매인으로 신규 허가하여 경쟁 유발
 - 기록상장 등 편법거래에 대한 단속 강화
- 공영도매시장 관리사무소 공무원 교육 강화
 - 운영담당 공무원에 대한 거래제도, 도매시장정책에 대한 교육 강화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도매시장별로 개설자가 '97년 중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97. 7월까지 농림부에 계획 제출

16-2. 지방공영도매시장 상장예외제도 활용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9)

- 중도매인의 관행적인 수집·수탁행위를 근절하되, 품목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상장거래가 부적합한 품목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중도매인의 집하를 인정

나. 추진성과 ('94~'96)

○ 농안법 개정·공포 ('94.11.1)

- 농림부령이 정하는 상장거래가 적합하지 아니한 농수산물 기타 이에 준하는 농수산물로서 그 품목과 기간을 정하여 개설자의 허가를 받은 농수산물의 경우 상장예외거래 허용

○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95.6.30)

- 반입물량이 아주 소량이거나 품목의 특성으로 취급 중도매인이 소수인 농수산물, 기타 상장거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을 비상장거래 허가대상 농수산물로 규정

○ 상장예외거래 운용현황

- 가락시장 : 도라지, 취나물, 아스파라가스 등 61개 품목을 상장예외거래 허가
- 부산도매시장 : 마늘, 고추, 생강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지방 공영도매시장은 거래량이 극히 적어 상장거래에 적합치 아니한 품목까지 상장거래토록 하고 있어 기록상장등 편법거래 유발

○ 가락시장 상장예외거래 운영상의 문제점

- 상장예외품목은 예외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중도매인별로 1~2개품목만 취급하는 위탁품목으로 고착화되고 1개품목당 소수 중도매인만 취급함에 따라 독과점화 하는 경향이 있음
- 취급중도매인수 및 대상품목이 과다('95년 107명→'96년 153명)
- 거래실적이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으며, 공정가격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 상장거래토록 해 달라는 출하자들의 민원 제기

3. 세부추진계획

○ 개설자가 도매시장별로 여건을 고려하여 '97년중 거래량이 극히 작은 품목은 상장예외거래품목 지정

- 개설자는 생산자단체,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과 협의하여 대상품목을 신중히 결정
- 가락시장은 상장예외품목의 거래실태, 포장화 정착 정도, 출하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품목을 축소

○ 상장예외품목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상장예외품목 거래시 중도매인은 보증금 납부, 대금의 즉시 결제, 수수료 징수제한 등에 있어서 도매시장법인과 동일한 책임 (농안법 제28조 제3항)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97년 중

17-1. 도매시장법인간 거래활용 방안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중소도시 도매시장에서 출하자로부터 수탁받기가 곤란한 품목을 도매시장법인이 타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서 매입토록하여 중도매인이 개별적으로 반입함에 따른 과도한 유통비용 축소 및 기록상장 근절

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도매법인 또는 중도매인이 반입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은 주로 엽채류, 양채류 등 채소가 대부분임
- 반입사유는 양채류등 거래량이 극히 적은 특수품목은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무·배추등 대중 품목은 일시적인 출하물량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반입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타 시세차익이나 고급품의 확보를 위한 경우도 있음
 - 타 도매시장(공판장)으로 부터의 총 반입량은 도매시장 거래량의 약 5% 가량
- 반입처는 가락시장등 대도시 공영도매시장 또는 산지 공판장이며, 중도매인에게서 구입하거나 또는 수집상을 통해 구입하고 있음
- 시장내 거래는 도매법인이 집하한 것은 상장경매, 중도매인이 집하한 것은 기록상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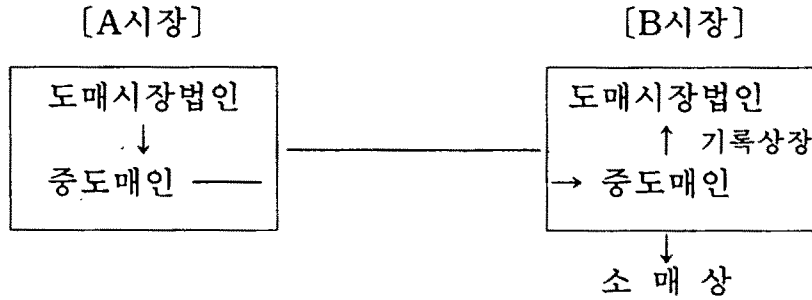
<도매시장별 실태>

시장	품 목	반입주체	반입처	반입물량	반입방식	반입사유	시장내 거래방식
부산	엽채류(상치, 시금치,썩갓등)	중도매인	가락시장	1일평균 5-8톤	가락시장 중도매인에게 구입하여 5톤트럭1대로 여러품목 운송	가락동 물품이우수하여 대량 납품 등에 적합	기록상장
인천	엽채류,양채류, 구근류	도매법인	가락시장	연간1,849톤 (청과 8%)	수집상 통해 구입	구색맞추기	상장경매
광주	고추	도매법인	전주공판장	연간290톤 (고추 전체중 45%)	도매법인이 공판장 중도매인에게 구입	3-4월 일시적으로 출하물량이 부족한때 반입	상장경매
수원	엽채류,양채류, 구근류	중도매인	가락시장	연간1,975톤 (채소3.4%)	가락시장 중도매인에게서 구입	시세차익, 품질 특수	기록상장
	수박,사과,참외	도매법인	산지공판장 (고창양주등)	연간1,206톤 (과일2.9%)	산지공판장 중도매인에게서 구입	수급조절	상장경매
천안	엽채류,양채류, 구근류	중도매인	가락시장 광주공판장	2,112톤 (청과8.7%)	수집상을 통해 타시장 중도매인에게 구입(5톤 트럭에 여러품목 동시 운송)	구색맞추기	기록상장
청주	오이,호박, 고추,부추	도매법인	부산,진주, 광주,순천	각품목거래 물량30-10%	수집상을 통해 구입	1-5월까지의 청주지방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	상장경매
울산	엽채류(무, 배추,알타리)	중도매인	부산,대구 시장	각 품목거래물량의 40-50%	중도매인에게서 구입	구가격 불안으로 반입이 저조	기록상장

(2) 문제점

- 타 도매시장에서 최종 거래된 물량을 중도매인이 개별적으로 구입하여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 과도한 유통비용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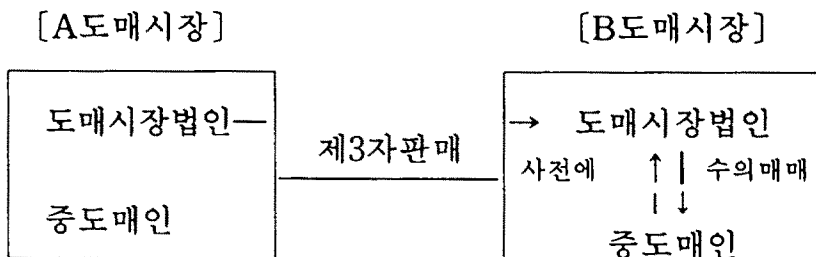
- 중도매인이 반입하여 도매시장내에서는 기록상장이라는 편법 거래를 유발하고, 도매시장법인의 부당수수료 징수라는 문제 발생



- 도매시장법인이 반입하는 경우도 타 도매시장에서 최종 거래된 물량을 수집상을 통해 구입하고 있어 불필요한 유통비용의 문제가 있음

2. 주요 추진시책

- 타 도매시장(공판장)으로 부터의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는 도매시장법인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규칙 제23조의 2)
 - 도매시장법인이 중도매인·매매참가인 외의 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대상에 “다른 도매시장에 출하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 당해 도매시장에 입하된 물량 중 개설자가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 다른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 중도매인들이 사전에 필요량을 주문하면 도매시장법인은 다른 도매시장에 상장된 물량을 구입한 후 중도매인에게 수익매매
- 도매시장법인의 반입이 어려운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중도매인의 상장에외거래 허가
-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을 구축하여 도매시장별로 적정물량이 출하되도록 유도하고, 도매시장법인간 거래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재반입물량 전체에 대한 경매여부는 장기 연구과제로 검토

3. 투자계획

- 해당없음

4. 추진일정

-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 '97년 상반기
- 공영도매시장 정보망 구축
 - '97년 5월 가락시장·5대광역시장 정보 분산
 - '97년 6월 전체 공영도매시장 정보분산 실시

18-1. 전자식경매 시범 도매시장법인 선정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 9)

- 경매의 전산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 1단계 : 기 거래된 내역을 출하자가 요구한 대로 제공('95년)
 - 2단계 : 경매결과를 현장의 모니터에 즉시 출력하고, 출하상담실의 전광판에도 게시
 - 3단계 : 전자식 경매 추진(규격포장출하 정착이후)
-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정보전달체계 구축
 - 1단계 : 반입물량, 거래가격 등을 팩시밀리, 전화에 의해 전파
 - 2단계 : 공영도매시장간 유통정보 전파

나. 추진성과

- 경매의 전산화 추진
 - 가락동 도매시장, 부산도매시장의 일부 법인에서 전광판을 설치하였으나, 경매결과의 즉시 게시가 어려워 활용도가 떨어짐
 - ※ 경매결과의 즉시 전광판 게시를 위해서는 경매시작전에 출하내역이 전산입력되어야 하나 경매건수가 많고(법인별 일일 약5천~7천건), 송장작성도 정착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
 - '96년부터 가락시장 일부 도매시장법인에서 경매전에 출하내역의 전산입력을 위해 메인컴퓨터와 무선으로 연결되는 휴대용 PC등 필요한 입력장치 개발 및 경매결과 즉시 전광판 표출을 추진중임
-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망 구축

- '96년부터 13개 공영도매시장의 매일의 거래정보(품목별·등급별 거래량, 경락가 등)를 수집·전파하는 전산망 구축 추진
- '97. 5월부터 6~7개 공영도매시장의 당일 거래정보를 농림수산정보센터에서 공중망을 통해 제공
- '97년 상반기내 전체 공영도매시장의 정보 수집·분산 예정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출하자·중도매인 양측으로부터 경매사가 공정하게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불신이 잔존하며, 전자식 경매 실시 요구
 - 그러나 경매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고, 피해 당사자가 즉시 알 수 있는데 실제 적발되는 실적은 없음
- 경매에 대한 신뢰성의 제고와 장기적으로 전자식 경매의 제반 기술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전자식 경매의 시범 도입도 필요

3. 추진방향

(1) 전자식 경매실시의 제약 요인

- 전자식 경매의 업무 흐름도
 - 경매전 전체 출하내역의 전산입력(메인컴퓨터에 송신하여 경매시에 경매대상 물품의 전광판 표출)→기계장치에 의한 경매(중도매인이 단말기 등을 이용하여 가격제시, 낙찰자 자동결정)→경매결과의 전광판 표출
- 출하자의 상품 송장 작성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출하내역의 전산입력시 과다시간 소요
 - 송장을 별도 작성않고 상품box(심지어는 담배종이)에 쓰거나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송장을 작성한 경우도 신뢰성이 없어 일일이 물건을 재확인
 - 예) 비표준송품장 비율이 수박 약80%, 사과 약50% 등

- 전자경매를 위해서는 경매전에 송장을 기초로 출하내역을 확인하여 사무실에서 재차입력해야 하므로 시간이 과다 소요
- 전자식 경매는 고정된 장소에서 sample 경매를 해야 하나 이를 위한 여건 미비
 - 선별·규격화가 미흡한 농산물이 경매장 전체에 분산·적재되어 있어 sample 경매가 곤란
 - 무선방식에 의한 이동식은 에러발생으로 기술적으로 어려움
- * 양재동 화훼공판장, 알스메어 화훼시장도 고정식임
- 전자식 경매(가격제시, 낙찰자 결정)는 수지식에 비해 2~3배의 시간 소요
 - 수지식은 경매건당 3~5초, 화훼공판장 전자식 경매는 9~12초
 - 일본에서도 청과부류는 시간문제로 수지식 경매 실시

(2) 추진방향

- 시범 도매시장법인을 선정하여 일부 품목에 대해 시험적으로 추진후 그 성과를 평가하여 장기 추진방향 결정
 - 전자식 경매와 절충형(수지식 경매·경매결과 즉시 전광판 표출)을 병행 추진

(3) 세부추진계획

- 시범 도매시장법인 선정
 - 서울시에서 가락동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을 지정(농협 공판장 포함)
- 대상품목
 - 출하자의 송장작성이 정착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규격화가 잘 되어 있으며 단위 거래물량이 많은 감귤·사과·배 등 일부 품목을 시범 도매시장법인이 정하여 실시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97년 상반기중 시범 도매시장법인을 정하여 추진
 - '97. 5월중 관계기관 회의 개최하여 대상품목등 결정
- '97년내 시범법인은 경매결과 즉시 전광판 표출 완료 및 전자식 경매기기 개발 추진
- '97년말 추진상황 평가후 품목 및 대상 도매시장 확대 결정

19-1. 도매시장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도매시장별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상장거래 확립하고, 유통경로간 경쟁의 격화에 대비한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

나. 현황 및 문제점

- 공영도매시장의 취급물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농산물 유통량중 약32.8%('96년)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가장 경쟁력 있는 유통경로로 볼 수 있음

		개장연도	거 래 량 변 화 (단위:천톤)		증가율 (%)
가락동시장		'85.	('90) 1,859	('96) 2,532	36.2
광 역 시	부 산	'93.12	('94) 268	('96) 355	32.4
	대 구	'88.10	('90) 108	('96) 310	187.0
	인 천	'94. 1	('94) 193	('96) 243	25.9
	광 주	'91. 2	('92) 254	('96) 312	22.8
	대 전	'87.11	('90) 104	('96) 264	153.8
기 타	수 원	'93. 2	('94) 97	('96) 122	25.7
	청 주	'88.11	('90) 40	('96) 97	142.7
	전 주	'93.10	('94) 79	('96) 90	13.9
	울 산	'90. 3	('91) 49	('96) 87	77.5

- 최근 소비지에서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소매점이 확산되고 있으며, 민간보유 물류센타도 증가되어 유통경로간 경쟁의 격화 예상

- 정부지원 물류센타 : 2004년까지 16개소 건설 예정

- 신유통업체의 등장으로 도매시장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감소
하지는 않을 것임
 - 백화점, 할인점등 유통업체는 아직 비중이 낮은 수준이며,
산지 직구입보다는 도매시장으로부터의 물량조달이 많고
 - ※ (주) LG유통 : 취급량의 30% 정도만 산지 직구입
 - 산지여건상 상당기간 물류센타 등에 의한 직거래보다는 도
매시장이 주요한 유통경로 역할을 하게될 것임
 - ※ 일본 : 도매시장 유통량이 전체의 85% 가량임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신유통업체의 확산에 따른 유통경
로간 경쟁의 격화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도매시장도 발생 가능

2. 추진방향

- 도매시장별로 상장거래질서의 확립과 입주상인의 규모화 등 경
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고, 개설자는 이를 기초로
시장별 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발전계획 수립

3. 세부추진계획

- 도매시장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작성·시달 : '97년 상반기 이내
 - 계획 수립시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기구 구성문제, 발전계획의
기본방향
- 개설자는 발전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도매시장별 자체발전계
획을 수립하여 '97. 7까지 농림부에 제출
- 개설자의 발전계획을 검토하여 계획 보완 및 계획 추진토록 지시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19-2. 도·소매 분리로 시장운영의 효율화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 9)

(1) 추진목표

- 도·소매기능의 분리를 추진하여 도매기능의 효율성 제고

(2) 주요시책

○ 소비자 차량의 출입시간대 지정

- 개설운영중인 도매시장에서는 경매시간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 차량의 출입시간대를 정하여 소비자 차량의 출입을 통제

○ 도·소매 판매구역 분리

- 신설도매시장은 도·소매 분리하여 건설
- 기존 도매시장의 증축 또는 시설개선시 도·소매 판매구역이 분리될 수 있는 방안 모색

○ 도매시장 운영관리 강화

- 도매시장내 앞자리상, 노점상 등의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

나. 추진성과 ('94~'96)

○ 신설시장은 설계시부터 도·소매구역을 분리하여 건설

- 도매시장건설 기본계획 수립시에 직관시설, 관련상가 등은 도매구역과 분리되도록 지도

- 기존시장은 주차료 징수, 개장시간 제한등 소매행위 제한 유도
 - 가락시장 :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주차료 징수로 소비자의 도매시장 이용 감소 유도
 - 인천시장 : 개장시간을 02:00~12:00로 제한하여 순수 도매거래기능 유지
 - 시장별로 잡상인 단속 등을 지속 추진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기존 도매시장은 인천을 제외하고는 도·소매 기능이 충분히 분리되어 있지 못함
 - 소매행위는 소비자 이용차량으로 혼잡을 초래하여 도매기능에 장애 초래
- 도·소매 구역분리를 위한 시설 정비노력도 거의 부재
- 도·소매 구역을 분리하여도 중도매인의 규모가 영세하여 도매구역내에서 중도매인의 소매행위 유인 잔존

3. 주요추진시책

- 중도매인의 규모화를 지속 추진하여 중도매인의 소매행위 억제
- 신설시장 건설시 도·소매 구역분리 정책의 지속 추진
- 기존시장은 개설자가 시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97년내에 도·소매 분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일반 소비자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
 - 소매상 및 비허가 상인의 단계적 정리
 - 도·소매 구역 분리를 위한 시장 정비
 - 이후 출입증명서 발급 및 일반 이용자 출입제한 (일반 이용자 출입시 주차료 및 입장료 징수)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도매시장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19-3. 도매시장별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 유지 및 규모화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도매시장법인을 규모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적으로 도매시장간·유통경로간 경쟁의 격화에 대비하여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

나.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법인수별 공영도매시장 현황(청과부류 공판장 포함)

2 개	3 개	4 개	6 개
청주,울산,전주, 창원,천안,충주, 춘천(7개소)	부산,대전,수원, 구리(4개소)	인천,광주 (2개소)	서울,대구 (2개소)

- 일부 도매시장은 도매시장법인수가 과다하여 원활한 시장관리와 운영이 곤란(특히 대구 도매시장)
 - 도매시장법인별로 입하물량과 중도매인이 분산되어 원활한 경매진행이 어렵고, 적정시세 형성도 곤란

2. 추진방향 및 목표

- 도매시장별로 개설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도매시장법인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
 - 가락시장 4개이내, 광역 도매시장 3개이내, 기타시장 2개이내

3 주요시책

- 도매시장법인 재지정시 기록상장 등 범위반 정도가 심각한 도매시장법인은 재지정에서 제외
- 가락시장, 광역시장은 제2시장 개장시 기존 도매시장법인 1개정도 이전
- 신규 도매시장 법인 지정시 적정수 지정 유도
- 도매시장 평가결과에 따라 면적조정 등을 강력하게 시행하여 통폐합을 유도하고, 연속 부진법인은 재지정시 제외
- 통폐합 추진 법인에 대한 매장배정, 자금지원 우대
 - 통폐합된 신설법인의 시장은 통합되는 매장의 계속 사용 인정
 - 통합년도의 출하촉진자금 지원을 위한 전년도 거래실적 및 선도금 운용실적 산정시 통합 추진법인들의 실적 합산 인정
- 출하촉진자금 지원시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을 강화하여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도매시장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19-4. 영세 중도매인 통합·법인화 유도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중도매인의 통합·법인화를 통한 규모화로 도매시장의 분산능력을 강화

나. 현황 및 문제점

- 중도매인의 영업형태가 영세한 개인영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도매시장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전국적으로 중도매법인은 청과부류 공영도매시장 4,500여명 중 125개업체에 불과(가락 : 124개, 대구 : 1개)
 - 구리시장은 중도매인 선정시 법인을 우대하여 입주예정자 470명중 법인이 468개
 - ※ 일본은 중도매법인 비율이 89%
- 중도매인 1인당 연간 거래실적이 평균 6억원 가량으로(일본 : 약64억원) 중도매인의 유통마진 축소에도 걸림돌로 작용

2. 추진방향 및 목표

- 중도매인의 통합·법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도매인 수 감축 및 분산능력 확대

3. 주요시책

- 신설시장은 중도매인법인에 대해서 우선 허가하고, 점포 사용면적도 우대
- 기존시장은 영세 중도매인의 통합·법인화를 적극 유도하고, 중도매인 결원시에도 신규 허가는 억제
- 중도매법인의 품목별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품목 전문취급 중도매인간의 통합·법인화는 제한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도매시장 발전계획 수립에 반영

19-5. 출하촉진자금 지원방식 개선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업체간 차등지원 확대 등으로 도매시장법인간의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하고 지방 및 신설도매시장에 대한 지원 강화

나. 현황 및 문제점

(1) 도매시장법인 출하촉진자금 지원현황

○ 지원목적

- 출하선도자금과 대금결제자금의 융자지원으로 도매시장으로의 안정적 출하를 유도하여 생산농어민과 소비자 보호

○ 연도별 지원액(재원 : 농안기금)

(단위:백만원)

년도	'82~'91	'92	'93	'94	'95	'96	'97
금액	64,900	29,500	36,250	42,500	55,000	62,000	62,000

○ 지원대상

- 상반기 : 청과·수산 도매시장법인
- 하반기 :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 법인
- 대금 즉시결제 불이행 법인, 거래질서 문란등 자금지원 효과가 없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자금의 종류

- 출하선도금 :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와의 출하약정을 위한 선도금(연리5%, 융자기간 1년)

- 대금결제자금 : 도매시장에 출하되어 상장된 농수산물의 대금결제자금 (연리8%, 용자기간 1년)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로부터 수탁받은 농수산물이 매매된 즉시 출하자에게 대금결제하고 있으나, 중도매인은 도매시장 법인에게 20~30일후 대금 지불

○ 기타 지원기준

- 지방도매시장 및 신설도매시장에 대한 우대를 위해 가락시장을 '95 하반기부터 지원수준을 동결하고, '97상반기에는 축소지원
- 법인의 대금결제자금보다는 출하선도금의 지원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93년부터 도매시장 평가결과를 자금지원시 반영
 - 최우수업체20% 가산, 우수업체10% 가산, 부진업체10% 감액

(2) 문제점

- 공영도매시장의 지속적인 추가 개장으로 도매시장법인별 지원액의 축소 불가피
- 가락동 시장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어 자금지원도 집중
 - 지방의 도매시장은 담보능력이 없어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도 발생

※ 연도별 가락동 시장 지원비율

년 도	'94	'95	'96	'97상반기
비 율	65.3%	61%	59.4%	38.1%

- 선도금 지원비율이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대금결제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공영도매시장 청과부류의 선도금 지원 비율은 '94년 하반기 37%, '95년 하반기 39%, '96년 하반기 41%
- 선도금은 출하자에게 무이자 지원해야 하므로 지방의 도매시장법인이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선도금 지원비율을 높이면 가락시장 집중을 초래
- 도매시장 평가결과 반영비율이 낮아 공정거래 법인에 대한 우대지원 미흡

2. 추진방향

- 신규 도매시장 개장으로 도매시장법인별 지원액 축소가 불가피하므로 대금결제자금 및 가락동 시장에 대한 지원비율을 계속 축소 조정
 - 급격한 지원축소는 자금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단계적 축소 추진
- 도매시장 평가제의 실효성 제고 및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대폭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 가락동 시장에 대한 지원비율 조정
 - '96) 59.4% → '99) 30%
 - 연도별 지원액은 시장별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전년도 지원액·지원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
- 선도금 지원비율 확대
 - '96) 40% → '99) 70% 수준
- 도매시장 평가결과 반영조치 강화
 -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감액 비율 확대

평가결과 \ 반영비율	현 행	'96년이후 평가결과
최우수(1개법인)	20% 가산	30% 가산
우 수(상위10%법인)	10% 가산	20% 가산
부 진(하위10%법인)	10% 감액	50% 감액

- 연속 부진법인은 출하촉진자금 지원 중단
- 도매시장업무와 무관한 분야에 과다투자하는 법인에 대해 자금 지원을 중단하여 도매시장법인의 경영효율화 및 출하자에 대한 서비스 분야에의 투자 유도
- '97년부터 자본금의 20% 이상을 비업무용 부동산,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97계획	'98	'99
농안기금 용자	159,500	62,000	65,000	70,000

※ 연도별 농안기금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

5. 추진일정

- 가락동 시장 지원비율, 선도금 지원비율은 연차적으로 조정 ('97~'99)
- 도매시장평가반영 강화 : '97하반기 자금지원부터 적용

20-1. 도매시장 평가내용 보완

I.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 9)

(1) 추진목표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제 강화로 공정거래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

(2) 주요평가지표 ('94 평가지표)

평 가지 표	가 중 치	비 고
○ 종합경영관리	10	○ 계량지표 : 48 ○ 비계량지표 : 52
○ 산지개발 및 집하노력	17	
○ 공정거래노력	26	
○ 업무수행능력	24	
○ 경영합리화	23	
계	100	

(3) 평가대상

년 도	계	개 설 자	도매시장법인	공 판 장
'93	19	6	13	-
'94	42	10	22	10
'95	57	10	33	14
'96	66	13	36	17

나. 추진성과 ('94 - '96)

(1) 평가대상 및 범위의 확대

- 공영도매시장내 농협공판장 평가대상에 포함('94부터 평가실시)
- 공영도매시장내 수산물도매시장 평가대상에 포함('97부터 평가실시)

(2) 평가지표의 수정 보완(도매시장법인 지표)

- 공정거래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평가지표 및 가중치 조정

'94 평 가 지 표		'96 평 가 지 표	
평 가 지 표	가 중 치	평 가 지 표	가 중 치
○ 종합경영관리	10	○ 물량집하노력	19
○ 산지개발 및 집하노력	17	○ 공정거래노력	31
○ 공정거래노력	26	○ 업무수행능력	31
○ 업무수행능력	24	○ 경영관리	19
○ 경영합리화	23		

-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량지표 확대
 - ('94) 43% → ('96) 52%
- 공정거래노력 및 업무수행능력 가중치 상향조정
 - 공정거래노력 : ('94) 26 → ('96) 31
 - 업무수행능력 : ('94) 24 → ('96) 31
- 정부의 중점추진시책 지표화 (세부지표)
 - 수집상등록제 정착 노력
 - 경매최저가격제시제 및 손실보전제 운영실태
 - 하역업무 개선노력
 - 쓰레기 발생억제노력
 - 시장환경유지 및 물류효율화 노력 등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도매시장 육성정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도매시장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한 평가지표의 지속적인 개발 및 가중치 조정이 필요함
 - 정부시책에 대한 호응도, 고객편의 제공노력 등
- 유통시장개방과 유통경로의 다원화에 대응한 도매시장의 유통효율화 및 물류비용 절감노력 등에 대한 지표개발노력 필요

3. 세부추진계획

- 유통개혁 2단계 대책 내용(도매시장 관련부분)을 평가지표에 반영
 - 〈 물류비용 절감노력 〉
 - 무·배추 등 농산물의 포장출하촉진
 - 하역기계화 노력
 - 〈 도매시장 공정거래질서 정착 〉
 - 전산경매 실시 및 경매결과 즉시 공개
 - 도매시장별 자체발전계획 수립 추진
- 도매시장 이용자를 대상으로한 고객의견 수렴지표 설정
 - 중도매인 및 출하자들의 거래만족도 조사 ('97년에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시험적으로 실시)
- 도매시장 평가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설자의 계량화 평가 추진
 - '98년 평가부터 개설자 계량화 평가
- 평가결과 종합득점이 개선된 업체에 가산점 부여
 - 전년대비 10점 이상 신장 : 5점 가산
 - 전년대비 7점 이상 10점 미만 : 3점 가산
 - 전년대비 5점 이상 7점 미만 : 2점 가산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유통개혁 2단계 대책내용 평가에 반영 : '98 평가계획에 반영추진 ('97.12)
- 개설자 계량화 평가 실시 : '98 평가계획에 반영 추진
- 고객의견 수렴지표 설정 : '98 평가계획에 반영 추진
- 개선실적 우수업체 가산점 부여 ; '97 평가지침에 기반영

20-2. 도매시장 평가결과 반영 강화방안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 9)

(1) 추진목표

- 도매시장법인에 대한 평가제강화로 공정거래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

(2) 주요시책

- 공정거래, 산지출하촉진, 경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와 출하농어가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등에 따라 매장면적 재배분, 자금 지원 차등화 등에 활용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기간연장여부 결정에 반영

(3) 평가대상

년 도	계	개 설 자	도매시장법인	공 판 장
'93	19	6	13	-
'94	42	10	22	10
'95	57	10	33	14
'96	66	13	36	17

나. 추진성과 ('94 - '96)

- 정책자금 차등지원 ('95 평가결과)
 - 최우수(1개소) : 배정금액에 20% 가산
 - 우 수(6개소) : 배정금액에 10% 가산

- 부진(2개소) : 배정금액에 10% 감액
- 부진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도 실시 (농수산물유통공사)
 - '95 평가결과 : 2개소 (부산 항도청과, 대구 대한청과)
- 부진업체에 대한 운영정상화 추진계획수립 및 시행 (개설자)
-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실시 ('95 평가결과)
 - 최우수업체 : 인천농산물 (철탑산업훈장, 농림부장관 표창)
인천원협 구월공판장 (농림부장관 표창)
 - 우수업체 : 대구중앙청과, 대전중앙청과 (농림부장관 표창)
농협가락공판장 (농림부장관 표창)
 - 개설자부문 (최우수) : 인천시 (농림부장관 표창)
- 우수업체에 대한 지정유효기간 설정시 우대 ('95 평가결과)
 - 인천시의 사례
 - 최우수업체 : 지정기간 5년 (인천농산물)
 - 일반업체 : 지정기간 3년 (건영농산, 덕풍청과)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개설자의 평가결과 반영의지 미흡
 - 평가결과에 따라 시설배분 등에 있어 차등화한 개설자 전무함
- 평가결과에 따른 정책자금 차등지원 폭이 작아 평가결과 조치로는 미흡

3. 세부추진계획

- 도매시장법인 지정유효기간 중 도매시장 평가결과 일정회수 이상 부진업체로 평가될 경우 차기 재지정시 지정에서 제외 ('96 평가결과 부터 반영)
 - 지정유효기간 6년이상인 경우 : 연속 3회 또는 4회 이상

- 지정유효기간 5년인 경우 : 3회 이상
- 지정유효기간 3년인 경우 : 2회 이상
- 정책자금 차등지원 확대
 -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 감액비율 확대

구 분	현 행	'96 평가결과 이후
○ 최우수 (1개법인)	20% 가산	30% 가산
○ 우수 (상위 10% 법인)	10% 가산	20% 가산
○ 부진 (하위 10% 법인)	10% 감액	50% 감액

- 연속 부진법인은 출하촉진자금 지원 중단
-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해외 선진도매시장 연수
- 평가결과 2년 연속 우수업체는 차년도 평가면제
- 부진업체에 대한 운영개선지도 강화
 - '96 평가결과 : 3개소
 - '97 이후 : 평가대상의 하위 10% 법인
- 개설자에 대한 평가결과 조치계획 수립 및 부진업체에 대한 자체운영활성화계획 수립 권고 및 점검실시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평가부진업체 재지정 제외 : '96 도매시장 평가지침에 기반영 ('97년 부터 적용)
- 정책자금 차등지원 확대 : '97 도매시장 출하촉진자금(하반기)지침에 반영

< 별 첨 > '97 평가지표

가. 개설자

평가 부문	평 가 지 표
도매시장 육성 시책 추진	○ 도매시장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실행도 ○ 규격포장화 유도노력 ○ 쓰레기 유발부담금제 운영관리 실태
공정거래질서확립	○ 공정거래확립노력 ○ 법인 지도감독실적 ○ 중도매인 지도관리노력
도매시장 기능 활성화	○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의 규모화 및 경영효율화 노력 ○ 도매시장 전산화 및 유통정보관리 ○ 하역업무개선 노력 ○ 도매시장 관리위원회 운영활성화 노력
위생 및 시설환경 개선	○ 도매시장 시설의 효율화 운영노력 ○ 쓰레기 감량유도 노력 ○ 상품의 품질 및 위생관리 노력

나.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평가 부문	평 가 지 표	가 중 치
물량집하노력	○ 물량집하노력 ○ 거래증가율 ○ 거래점유율	8 6 6 (20)
공정거래노력	○ 상장경매율 ○ 공정거래 노력도 ○ 정부시책에 대한 호응도 ○ 경매불신해소 및 효율화 노력	10 6 4 17 (37)
업무수행능력	○ 하역업무효율화 노력 ○ 쓰레기 발생억제 노력 ○ 물류효율화 노력 ○ 평가관리 ○ 교육실적 ○ 연구개발노력	5 6 2 2 4 2 (21)
경영관리	○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및 실행 ○ 업무전산화 ○ 조직관리 ○ 재무관리	2 2 2 16 (22)
	○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50 50

여 백

4.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안전식생활 보장

- 21-1 품목별 안전성 조사강화 방안
- 21-2 잔류농약 속성검사제 도입
- 21-3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방안
- 21-4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
- 21-5 간이도축장 폐쇄
- 21-6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
- 22-1,2,3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 강화
- 22-4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도입
- 22-5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 (전통식품)
- 23-1 원산지표시 단속 효율성 제고
- 23-2 지리적 표시제 도입
- 23-3 식육구분 판매제 정착
- 24-1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추진
- 24-2 농검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

여 백

4.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으로 안전식생활 보장

21-1. 품목별 안전성 조사강화 방안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증대에 부응
- 우리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제고
- 수입농산물의 검역과 조화를 이루어 국제통상마찰을 예방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농수산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추진계획 수립 ('96.2)
 - 조사기관 : 농산물은 농산물검사소, 축산물은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 조사대상 품목 및 범위
 - 농산물 : ('96) 33개 품목, 752점 → ('97) 51개, 3,300점 → ('99 이후) 대부분 품목, 1만점 이상
 - 축산물 : ('96) 소·닭 규제검사 → ('97) 돼지추가

□ 문제점

- 농검의 조직개편 지연으로 조사체계 확립 미흡
 - 전담조직, 전문인력 배치, 분석요원의 전문분석 교육실시, 분석시설·장비의 확보 등

- 일부 생산농업인의 안전농산물 생산인식 부족
 - 농약 및 동물의약품 등 안전사용기준 미준수

2.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토양 및 수질오염도 조사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 농축산물의 생산·저장·출하단계에서의 안전성 저해요인을 발굴하여 안전성 제고 및 품질향상대책 강구
 - 안전성조사를 통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공급
 - 원활한 안전성조사를 위한 안전성 조사체계 확립
-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지도·홍보 및 교육강화

□ 추진목표

-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공급함으로써 우리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농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향상시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

3. 세부추진계획

- 토양 및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활용
 - 정기적인 토양비옥도 조사와 함께 토양오염도 조사
 - 농업용수 수질측정망을 확충하여 농업용수 수질조사
- 안전성 조사능력 증대를 위한 조직 및 시설·장비 확충
 - 농점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 품질관리전담기구화
 - 전문분석요원 및 안전성 조사원 양성
 - 첨단분석장비의 확충

- 분석장비확충과 연계하여 시험소 분석실 증축 및 지소 분석실 설치

○ 조사물량 및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성확보 수준향상

○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관계자 교육 및 홍보지도 강화

- 매년 생산자, 소비자유통업자, 관계공무원등의 교육 및 홍보실시

- 안전성조사 실시후 부적합품 생산자에 대한 지도 강화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	'97예산	'98 예산요구	'99~ 2004	계 ('94~'2004)
○ 사업량 (단위)	-	-	-	-	-
○ 사업비	5,479	9,111	10,090	34,812	59,492
- 국 고	5,479	9,111	10,090	34,812	59,492
- 국고용자					
- 지방비					
- 자담					

※ 농산물 및 축산물 안전성조사 분석장비등으로 농특회계

5. 추진일정

- 토양 및 수질오염도 조사
 - 토양은 4년 1주기 조사 : 시설('96), 밭('97), 논('98), 과수('99), 시설(2000), 밭(2001), 논(2002), 과수(2003), 시설(2004)
 - 수질측정망 운영 : ('97) 154개소 → ('2000) 534
- 농점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 ('97년도)
- 안전성조사 인력·시설·장비등의 확충
 - 전문분석요원 : ('95) 38명 → ('96) 62 → ('97) 92 → ('98) 128
 - 첨단분석장비의 확충 : ('95) 161대 → ('96) 409 → ('97) 652 → ('98) 885
 - 분석실 신·증축 : ('95) 2개소 → ('96) 5 → ('97) 8 → ('98) 12
- 조사물량 및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안전성 확보수준 향상
 - ('96) 33개 품목 752건 → ('97) 51개 품목 3,300점 → ('99) 대 부분 품목 10,000점

21-2. 잔류농약 속성검사제 도입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가. 추진목적

-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 부응
- 산지, 소비지 안전농산물 체제 구축으로 대농업인 지도 효율화
- 농산물 신뢰성 제고로 마케팅 차별화

나. 현황 및 문제점

- 검사방법의 효율성 미흡
 - 정밀검사방법의 비용과다(건당 1,500천원내외) 및 검사물량 한계
 - 검사기일의 과다 ⇒ 농산물의 소비후 결과통보
- 사전지도보다는 농약검출내용 언론보도로 전체농산물 이미지 실추
 - 해당 농산물 소비기피 및 생산지역 농산물 가격폭락 초래

2. 잔류농약 속성검사의 개요

가. 검사 원리

- 유기인제 및 카바마이트계 살충제는 신경전달 관련 효소인 아세틸콜린에스 테라제에 작용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냄
- 채소류에서 농약성분을 추출하여 파리에서 추출한 아세틸콜린에스테라제와 반응시켜 잔류농약 성분의 존재여부를 측정

나. 장 점

- 빠르다 : 검사시간 10분
- 경제적이다 : 검사비용 150원
- 간단하다 : 비전문가도 가능

다. 단 점

-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이외의 농약은 속성검사제 도입이 불가능
- 카바메이트계 농약중 논 잡초약(치오벤카보 등), 살균제 농약(가벤다짐, 이프로디온 등)은 적용 불가
- 적용 가능한 농약도 개별 정성·정량 분석이 불가능

라. 대만의 운용실태

- '96. 6월 현재 69개소 운영 : 정부기관, 농회(33개소), 공동작목반, 도매시장, 흥농식품 등
- 대북시 도매시장의 경매전 검사 (0:30 ~ 04:00)
 - 대북시 조레로써 검사 의무화 (1일 70 ~ 80건 검사)
- 농 회 : 농약판매자가 공동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사전검사
- 흥농식품 : 속성검사를 필한 신선채소에 『안전채소』로 유통차 별화
- 기타 다른나라의 응용사례 : 필리핀, 아르헨티나, 타일랜드, 말레이시아등에서 도입 또는 준비 중

마. 잔류농약 간이검사 병행 추진

- 특정농약에만 반응하는 항체를 만들어 추출된 농약성분과 반응시켜 잔류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잔류농약 속성검사에서 측정 불가능한 엔도설판, 프록시미돈의 양을 측정

바. 질산염 검사

- 질산염과 반응하여 발색반응을 일으키는 시약을 처리한 발색지를 추출액과 반응시켜 질산염의 양을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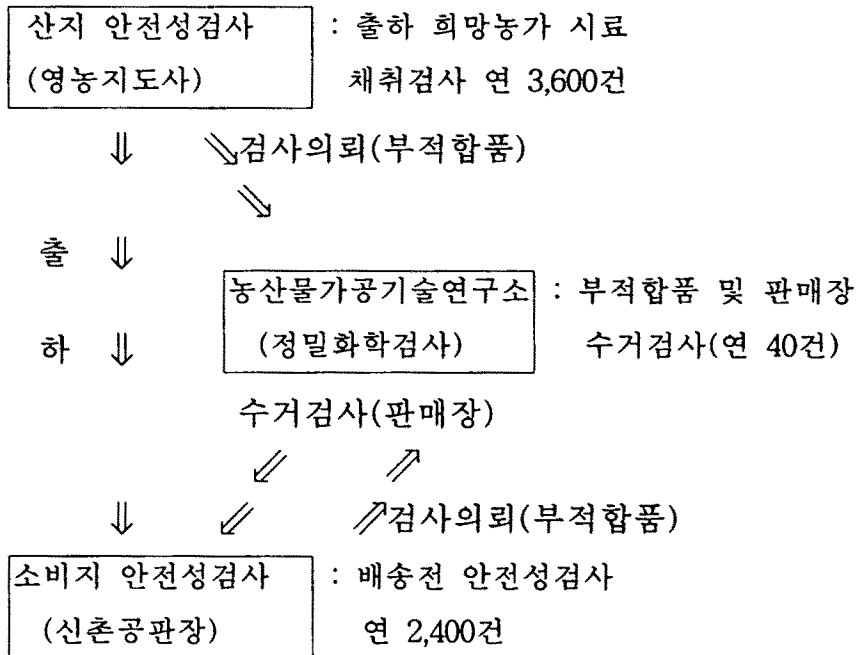
3.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시범사업 추진 경과

- 기 간 : '97. 3. 1 ~ 12. 31
- 사무소 : 농협신촌공판장, 고양신도농협
- 개소당 소요예산

구 분	실험기기(원)	검사비용(건/원)	비 고
○ 잔류농약 속성검사	3,347,300	220	2가지 성분
○ 잔류농약 간이검사	1,100,000	44,000	
○ 질산염검사	1,181,400	770	
합 계	5,628,700	44,990	

4. 사업 세부추진계획

가. 안전성검사 체계도



※ 산 지 : 부적합품 계통출하 중지 ⇒ 연구소에 정밀검사 의뢰

※ 소비지 : 판매중지 ⇒ 연구소에 정밀검사 의뢰

나. 사업추진 계획

- '97 : 시범사무소 선정·실시 : 신촌공판장, 고양신도농협 (2개)
- '98 : '97시범사업결과를 토대로 산지, 소비지까지 설치 확대
 - 대상사무소 : 200개소 (소비지 판매장 및 산지농협)
- 전담판매처 지정으로 마케팅 차별화 도모
- 잔류농약 속성검사 시약개발
 - 가공기술연구소와 대만성 농업연구소 공동개발
 - 「농산물가공기술연구소」를 민간단체 최초의 공인검사기관으로 지정 추진

5. 연도별 소요예산 산출

(단위 :백만원)

구 분	년차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 재원				
	'94~96실적	'97 예산	'98 요구	'99~2004	계
사업량	-	2	10	300	312
국 고	-	-	-	1,689	1,689
국고융자	-	-	-	-	-
지방비	-	-	-	-	-
자 담	-	22	110	1,627	1,759
계	-	22	110	3,316	3,448

21-3. Cold - Chain System 구축방안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적정온도하에서 보관-하역-수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상품성 제고
- WTO 출범 등 외부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 점유

나. 현황 및 문제점

- 산지의 냉장, 보냉탑차의 보유율이 저조하여 수송과정에서 상온으로 유통되어 상품성 저하
- 도매시장의 저온저장시설 및 저온경매시설의 미비로 선도유지 곤란
- 저온저장업체의 저온저장고 보유면적 및 1개 동당 면적이 협소하고, 별도의 예냉시설 보유업체가 적음

2. 추진방향 및 목표

가. 추진방향

- ULS 규격에 맞는 냉장 및 보냉탑차의 보급확대를 통한 저온유통체계 구축으로 상품성 유지
- 국내 콜드체인 관련 기반시설 및 기술 현황조사와 농산물의 상온유통에 따른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콜드체인 시스템의 도입방안 제시

나. 목 표

- '97년에는 표준형 예냉시설의 모델확립 및 콜드체인 단계별 도입을 위한 방안마련 및 경제성 검토
- '98년중에 콜드체인 시스템의 표준화 모델 최종 확정

3. 세부추진계획

- 국내 콜드체인 관련 기반시설 및 기술현황 조사 : '97. 4~9
예냉시설, 저온저장시설, 수·배송설비, 자재·포장관련 자재 등
- 국내 주요농산물의 상온유통에 따른 문제점 도출 : '97. 7~8
- 하절기 신선 청과물 대상 : 3품목
- 수송 및 소비지유통 과정중 품온, 품질변화 분석
- 농산물의 품목군별 적정 콜드체인 유통기술 제시 : '97. 7~9
- 과일류, 채소류, 화훼류
- 콜드체인시스템 도입방안 제시 : '97. 7~10
- 예냉시설의 도입방안
- 콜드체인시스템의 단계별 도입방안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 실 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04	계 ('94-'04)
○ 사 업 량			880		880
- 콜드체인시스템의 시범도입 설치비용			780		780
· 차입예냉시설			180		180
· 진공예냉시설			600		600
- 콜드체인시스템 도입 을 위한 관련기술개발			100		100

구 분	'94-'96 실 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04	계 ('94-'04)
· 품목별 적정 콜드체인 유통기술 확립			45		45
· 산지예냉시설의 모델 및 표준설계서 작성			15		15
· 콜드체인시스템기술 지침서 작성.			20		20
· 콜드체인시스템 시범 설치 및 운영기술지원			20		20
○ 사 업 비			880		880
- 국 고			880		880
- 국고용자			-		-
- 지방비			-		-
- 자 담			-		-

5. 추진일정

- 농산물의 품목별 적정 콜드체인 유통기술 확립 : '98
- 산지 예냉시설의 모델 및 표준설계서 제작 : '98
- 콜드체인시스템의 시범시설 설치 및 운영 : '98
- 콜드체인시스템의 조기정착을 위한 기술지침서 제작 : '98

21-4.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HACCP 방식에 의한 안전축산물 생산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에서 채택되어 세계적으로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과학적인 도입 필요성이 제기됨. (미국은 '97. 1월부터 대장균검사)
 - 따라서, 국내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

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HACCP 제도 도입내용

- HACCP 제도시행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추진
 - 대한수의사회에서 (서울대 수의대 신광순 교수 주관) '95-'97 (3개년)까지 연구용역 실시
- 작업장에 적용할 위생표준관리요령(SOP) 마련 시행추진
- 육류중 미생물 (총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균, 대장균O-157 : H7) 검사계획 수립추진
- 도축장(2개소) 및 도계장(1개소)에 HACCP시범사업 추진 ('97년중)

문제점

-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의 복지부와 이원화

2. 추진방향 및 목적

- 국내실정에 맞는 HACCP 제도 모델개발
- '97년도 시범적 적용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 축산식품 생산과정에서 단계별 과학적인 검사제도 적용

3. 세부 추진계획

- HACCP 도입을 위한 축산물 위생처리법 개정 (197년)
- 도축(계)장 HACCP 모델개발 (198년)
 - 시범사업 대상 작업장
 - 쇠고기, 돼지고기 생산 축산물 작업장 2개소 (축협 김제공장, 한냉 증부공장) 및 도계생산 작업장 (현대화된 계열화 업체 도계장) 1개소
 - 사업추진방법
 - 농촌진흥청 대형연구과제로 채택하여 수의과학연구소 주관 (농진청 예산)으로 추진중임
 - 사업추진내용
 - 도축·도계장에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 식육중 병원성세균 신속 검출에 관한 연구
 - 가공식품 제조단계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에 관한 연구
- 도축장 1개소 · 도계장 1개소 HACCP시범실시 (199년)
- HACCP 본격도입 (2000년)

21-5. 간이도축장 폐쇄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축산물 수입개방 및 도축업의 외국인 투자개방에 대비한 경쟁력 확보
- 축산물의 위생적인 처리공급으로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92. 10. 2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 기존의 특급도축장을 도축장으로, 1급 및 2급 도축장을 간이도축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기준도 강화
 - 강화된 시설기준에 따라 '94. 12. 31까지 도축장별로 시설보완 추진
 - ※ '91-'95까지 44개소에 현대화자금 282억원 지원
-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현행 간이도축장중 도축장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간이도축장은 '97. 12. 31자로 폐쇄예정
- 간이도축장 설치현황 ('97.1월 현재)

도축장	간 이 도 축 장				계
	일반	육가공장 부설	도서·벽지	소계	
83개소	31	1	3	35	118

□ 문제점

- 도축장 경영자는 시설개보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지의 어려움으로 작업장을 폐지하고자 하나 식육판매업자 등 이용자는 원거리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
- 지방세 확보차원에서 시장·군수가 관영간이도축장을 민간에게 매각추진
 - 민간이 매입후 도축장 승격을 위한 투자시 적자운영 우려
 - ※ 전국 118개 도축장 가동율('96년기준) : 소27.0%, 돼지47.9%
- 민간·축협운영 간이도축장도 '97. 12. 31까지 시설보완을 위하여 자금지원을 희망하나 축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투자로 지원불가

2. 추진방향 및 목적

- 정비대상 작업장에 대한 시설기준은 상향
- 또는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도축장의 폐쇄

3. 세부추진계획

- 축산물의 위생적인 도축처리가 요구되므로
 - 자체로 시설을 보완하여 도축장으로 승격하지 못할 경우 '97. 12. 31 폐쇄 조치를 지속적으로 홍보

21-6.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9)

- '96년까지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
- '94하반기부터 식육처리기술교육 실시

나. 추진성과 ('94~96)

- '95년부터 식육기술훈련원 건립 추진 ('97년말 완공예정)
 - 소재지 : 경기 안성군 공도면 축산종합센타내
 - 부지 : 4,417평, 건축면적 : 452평 (1회 교육수용인원 : 50명)
 - 시설종류 : 강의실, 처리실습실, 가공 및 조리실습실, 실험실 등
 - 사업비 : 2,014백만원
- 동 훈련원 건립이전 식육처리기술교육 실시
 - 주관 : 축협중앙회
 - 교육대상 : 도축장, 육가공장, 판매업소등에 종사하는 식육유통인
 - 교육과정 : 1개월 (기초반, 판매점반)
 - 장소 : 축협 서울공판장내 집배사업소
 - 교육실적 : 480명 ('94 : 90명, '95 : 210, '96 : 180)

2. 문제점 및 보완대책

- 당초 '96까지 완공계획이었던 식육기술훈련원 건립이 지연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
 - '97년말까지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이 완공될수 있도록 사후관리 강화

3. 세부추진계획

- 식육처리기술훈련원의 조기 완공 ('97말) 및 이에 대비한 운영방안 수립
 - 수행 기능(연구기능 보강), 직제, 년차별 운영 및 사업비 투자계획
 - 교육생 확보방안
 - 직업훈련기관 및 위생관련 교육기관으로의 지정 육성방안
 - 정부 지원방안 등

4. 투자계획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 사업량 (단위) 백만원	480명 (1개소)	180명	240명	1,440명	2,340명
○ 사업비	3,195	446	875	5,940	10,456
- 국 고	3,145	365	700	4,750	8,960
- 국고융자	-	-	-	-	-
- 지방비	-	-	-	-	-
- 자 담	50	81	175	1,190	1,496

5. 추진일정

- 식육처리기술교육 실시('97.3~12) : 6회, 180명
- '97. 7월 : 식육기술훈련원 운영방안 및 재원확보방안 수립
- '97.12월 : 동 훈련원 건립 완료
- '98. 1월 : 동 훈련원 운영 개시

22-1,2,3.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 강화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우리 농산물의 차별화 실현으로 국제경쟁력 제고
- 전국적 명품 및 지역특산물 지속발굴 및 성과 보장
- 품질인증으로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

나.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가) 추진경위

- 농어촌구조개선대책('91. 7.) 및 농어촌발전대책('92. 1.) 대통령령 보고

(나) 실시근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특산물의 품질인증제도)

(다) 품질인증 농산물 출하실적

('97. 5. 25. 현재)

계		유기농산물		일반농산물		축산물	
품목수	출하량	품목수	출하량	품목수	출하량	품목수	출하량
품목	톤	품목	톤	품목	톤	품목	톤
67	59,540	37	2,764	37	56,736	2	40

※ ('92) 21품목 3,000톤 → ('95) 71품목 74,300 → ('96) 76품목 11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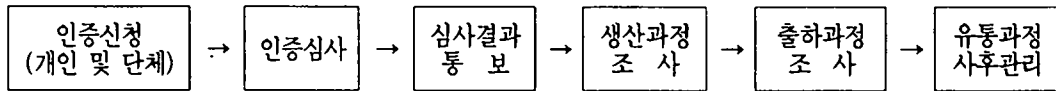
(라) 인증대상 품목

- 곡류, 과실류, 채소류, 특작류, 기타

(마) 인증항목

- 산지, 생산년도, 품종, 무게, 등급, 성분함량(당도), 생산조건
(유기·무농약·저농약·일반재배)

(바) 인증절차



□ 문제점

- 전체 유통물량에 비해 인증물량이 적어(1% 수준) 소비자 인지도 미흡

- 주요 품목의 전체 유통량 및 인증물량 비교

구분	쌀	사과	배	감귤	포도	오이	참외	상추	느타리버섯
'96인증량 (A)	톤 54,000	6,460	10,197	4,906	2,782	3,702	2,869	959	930
'96유통량 (B)	천톤 4,226	644	160	554	284	303	298	154	66
A/B	1.3%	1.0	6.4	0.9	1.0	1.2	1.0	0.6	1.4

- 과실류등 일부 품목은 대포장품 출하로 해장 판매시 인증표시 소멸

- 농산물의 가격 변동 특성과 포장재 비용 과다 소요로 소포장품 출하 기피

- 선별, 선과 작업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에 비해 시장에서의 가격 보상 미흡

- 일부품목의 출하가격 비교

('97. 5. 25현재)

구 분	쌀 (20kg)	사과 (15kg)	배 (15kg)	참다래 (10kg)
인 증 품 (A)	42,000 원	40,000	70,000	40,000
비인증품 (B)	38,000	35,000	60,000	35,000
대 비 (A/B)	110.5%	114.3	116.7	114.3

- 생산자조직 단위의 인증 확대가 요구됨
 - '96 품질인증 승인실적은 1,386건중 조직 901건(65%), 개인농가 485건(35%)임
- 민간단체 위탁시 품질인증 추진 지난
 - 공신력 유지곤란, 비용부담, 시설 및 분석능력 부족 등 민간단체 품질평가 도입은 시기상조임.

2. 추진방향 및 목표

가. 추진 방향

- 생산자 조직 위주의 품질인증제 실시
- 품질인증 객관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 민간단체에 품질인증 위탁
-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도입

나. 추진 목표

- 건강한 식생활 창출을 위한 생산과정의 안전성 관리 강화
- 명품, 특수재배품 지속발굴
- 인증농가 및 생산자 단체의 자체 품질관리 능력 제고
- 소비자는 품질, 생산자는 수익에서 만족을 주는 제도로 정착

3. 세부 추진계획

- 자율적 품질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생산자 조직 우선 인증
 - 개인별 승인농가는 영농조합법인, 작목반을 결성하도록 유도
- 인증효과가 큰 품목의 인증물량 확대
 - 쌀, 과실류, 특작류 등 ('96 : 119천톤 → '97 : 135천톤)
- 품질인증 농가의 체계적 관리 이행
 - 생산, 가공, 출하과정의 책임관리를 위한 전담지도제 실시
 - 생산포장의 재배 환경 오염 및 농약 안전사용, 고독성 농약 살포 여부철저 확인
- 품질인증제 기준의 객관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 추진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개선 보완
(현재 심사기준과 방법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품목에 따라 세부적으로 객관화)
 - 자체 품질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출하과정조사 생략
(5kg 미만 소포장품에 대하여 우선 실시)
- 생산자 단체의 위탁인증 체제 전환을 위한 대책 강구
 - 생산자 및 소비자 단체의 여론 수렴
- 민간단체에 의한 품질인증 추진
 - 민간단체의 인증체제 확립을 위하여 사전준비후 위탁인증 시범 실시
- 품질인증제도를 사후 확인·점검체제로 전환

4. 추진일정

- 생산자조직 위주 인증 추진('97 ~ 2004년까지 계속)
 - 인접지 소재 품질인증 농가를 통합하여 조직 결성 유도
(개별농가는 포장재 지원사업 등에서 제외)

- 생산자 조직별로 자체품질관리 책임자 지정 운영
- 품질인증 물량 확대(2004년까지 계속)
- 품질인증대상 농가의 체계적 관리 이행('97 ~ 2004년까지 계속)
- 품질인증의 객관화('97)
 - 품질인증 심사기준, 방법, 표시사항 등 제관련 규정(규칙, 고시 등) 개정, 보완
- 인증절차 간소화 추진('97 ~ 2004년까지 계속)
- 위탁인증 체제 강구
 - 위탁인증을 위한 사전준비('98)
 - 위탁인증 시범 실시(2000-2004년 까지)
 - 민간단체를 위탁인증기관으로 선정, 인증추진 (2005년부터)

22-4.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도입

1. 유기농산물 생산 및 유통실태

- 생산농가 : 6,720호 (인증품 생산농가 1,020호) ('97. 4. 현재)
- 생산량 : 약50천톤 ('96인증품 생산량 5.5천톤)
- 생산자단체 (회원수) : 유기농협회(20,100명), 자연농협회(8,500), 한살림(300),정농회(500),흙살림(1,050) 등
- 주요인증품목 : 채소(상추, 쪽갓 등 33품목), 과실류(사과,배,단감,유자,포도) 곡류(쌀, 현미) 등 40품목
- 유통실태
 - 유통매체 : 백화점·슈퍼(80%), 회원 직거래(10%), 기타(10%)
 - 매출액(600억원 기준)
 - 생산·소비자조직 (52%), 민간업체 (12%), 농가직판 등 (36%)

< 유기농산물 생산농가 현황 >

	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농가			
(A) 유기농가 ('96.8)	6,720	805	1,450	4,465
(B) 품질인증 ('97.4)	1,020	231	340	449
대 비 (B/A)	15.2%	28.7	23.4	10.1

< 유기농산물 인증품 출하동향 >

(단위 : 톤)

연도	계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품목수	출하량	품목수	출하량	품목수	출하량	품목수	출하량
'94	13	909	13	681	5	228	-	-
'95	23	1,967	23	1,602	15	365	-	-
'96	38	5,467	23	1,972	22	2,302	18	1,193
'97. 4	40	2,068	25	578	22	994	10	496

* 품질인증품 출하량은 매년 220-250% 정도 신장되고 있음.

2. 유기농산물 품질인증

○ 농산물 품질인증제 실시

- 농림부고시로 품질인증제 시행 (농림수산부고시 제 92-18호, '92. 4.22)
 - 특산품품질인증제도의 법적근거 마련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 유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실시 ('93.12.1)
 - 신선채소류 등의 유기재배 및 무농약 재배품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을 고시 (농검고시 제1996-1호, '96. 3. 28)
 - 농검이 생산농가나 생산자조직의 인증신청을 받아서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실태를 심사, 인증서를 발급해주고 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출하
 - 40개품목 1,020생산자(조직)에 대하여 실시중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일부 개정 공포('97. 3. 7, 법률 제5299호)

-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 및 표시방법을 설정
- 설정기준에 적합한 농산물에 대하여는 유기농산물등의 표시를 하게 하고
-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농산물에 대하여는 생산과정 및 유통품수거조사를 하여 유기농산물의 표시변경·정지, 판매정지 또는 인증취소 등 처분

3. 추진방향 및 목표

- 농산물 품질인증제와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운용방안 강구
- 유기농산물의 적용대상 농산물 선정
- 유기농산물 정의에 따른 유기농산물 범위 기준설정
-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 설정
- 유기농산물의 표시기준 설정

4. 세부추진계획

가. 농산물 품질인증제와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운용방안

-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와 병행하여 현행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를 계속 실시토록 함.

나. 유기농산물 적용대상 농산물 (법 제2조 제9호 관련)

- 농산물·임산물·축산물을 대상으로 하되 국내 농산물 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에도 적용
 - * 축산물도 농산물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내농산물 수입농산물 구분없이 적용, 가공식품은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포함여부는 차기법 개정시 검토

다. 유기농산물의 범위기준 설정

-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는 “유기재배”, “전환기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로 구분함

라. 유기농산물의 품질기준 설정

- 유기재배, 전환기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기준을 설정

마. 유기농산물의 표시기준 설정

○ 표시기준

- 유기재배, 전환기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하여 각각 “유기재배” 및 “전환기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저농약재배”로 표시함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한 표시임을 명시함

○ 유사표시규제

- 유사표시로 “자연”, “천연”, “바이오”, “무공해”, “청정”, “안전”, “생명농법” 등은 이를 독립적으로 표시는 규제하되 “유기재배”, “무농약재배” 표시 그 밑에 병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이를 설명으로 표시할 수 있게 함.

○ 외국의 표시기준 및 표시규제 사례 :

< 표시사례 >

- 코덱스 : “Organic Foods”, “Organically Produced Foods”
- 유기농운동연맹 : “Organic Foods”, “Organically Produced”
“Produce of Organic Agriculture”
- 미 국 : “Organic Foods”, “Organically Produced”, “Organically Produced Agricultural Product” 등으로 표시
- 일 본 : “유기농산물”, “전환기중 유기농산물”, “무농약재배 (무화학비료재배)농산물”, “감농약재배(감화학비료 재배)농산물”
- * 유럽 등 : 대상 농산물을 “유기” 뿐만 아니라, “유기재배”, “유기적인”, “생태학적”, “생물학적”, “천연의”, “자연의” 등을 같은 개념으로 파악

< 유사표시규제사례 >

- 미 국 : 임의의 농산물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생산물이 유기적 방법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상표를 부착하거나, 관련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유기식품법 · 2 제2106조)
- 일 본
 - “천연재배”, “자연재배” 등 유기농산물의 표시로 혼동하기 쉬운 용어
 - 실제 물품보다 현저히 우량한 것으로 오인되는 용어
 - 기타 유기농산물 등의 재배방법, 품질 등으로 오인되는 문자, 그림, 사진 및 그외의 표시
 - * 코텍스, 유기농운동연맹 : 권장기준이므로 표시규제에 대한 항목은 없음

5. 추진일정

-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 '97. 6. 30까지
- 법제처 심사 : '97. 7 하순까지
- 공 포 : '97. 8 초
- 교육 · 홍보 : '97. 8 중

22-5.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우리고유의 전통식품에 대한 정부의 품질인증제도 실시로 전통식품의 품질향상을 기하고,
- 서구식품에 밀려 사라져가는 우리전통식문화의 계승확대와 판매촉진을 통한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있음.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 황

- 실시근거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
- 품질인증 대상품목('97.4월말 현재) : 30개품목 (김치, 고추장, 한과류 등)
- 품질인증 절차

(신청서제출) (접수) (경유)

신청자 → 시·군·구 → 시·도 → 농림부(한식연의 심사결과검토)

결과통보 및 고시

- 품질인증현황('97. 4월말 현재)
 - 품목수(14) : 한과, 고추장, 된장, 간장, 청국장, 엿, 김치, 참기름, 조청, 약식, 엿기름, 감식초, 유자절임, 식혜

- 공장수(76) : 한과12, 고추장23, 된장8, 간장2, 청국장1, 엿3, 김치13, 참기름3, 조청4, 약식1, 엿기름1, 감식초2, 유자절임 2, 식혜1.

□ 문제점

- 인증업체의 영세성 및 장인정신 결여
 - 대부분 소규모 업체로 시설이 미흡
 - 제품 품질관리와 경영을 겸하고 있어 우수제품 생산곤란
- 가공원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
 - 제품생산에 필요한 국산농산물의 지속적인 공급에 애로 (예 : 한과류, 엿, 조청, 장류, 참기름 등)
- 사후관리 미흡
 -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원료사용, 위생관리 등의 엄격한 관리가 안됨.
 - 신청·접수, 심사, 승인 및 사후관리 담당기관의 분리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품질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저하
 - 우리농산물로 만든 품질인증제품과 일반식품과의 차별화 미흡
- 인증품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

2. 추진방향 및 목표

□ 추진방향

-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인증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 전통식품업체 및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실시(유통교육원)
- 품질인증업체 지원강화로 우수전통식품 공급확대

-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 등 지원확대
-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인지도 제고
- 품질인증제품의 일반식품과의 차별화

□ 목 표

- 매년 15개공장이상 품질인증을 추진하여 2004년까지 정부지원
전통식품업체의 10% 이상을 품질인증제품 생산업체로 육성

연도별	'91~'95	'96	'97(P)	'98~2004	계
인증업체수	69개소 (3)	10 (3)	10	130	220

※ () 은 수산물인증업체수임.

3. 세부추진계획

□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품질인증제품 시판품조사 (반기별)
 - 표시사항, 유통기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 인증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도강화
 - 인증업체 ·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
 - 현지출장 등을 통한 지도강화

□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 제품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시설지원
- 원료구입자금 및 포장개선비 지원
- 대국민교육 (소비자단체 등) 및 안내책자, 잡지 등에 홍보

□ 품질인증업체 확대

- 정부지원 전통식품업체와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우수 가공식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받도록 유도

연 도 별	'91~'96	'97(P)	'98	'99	2000~2004
인증업체	79개소	10	15	15	100

4. 추진일정

- 인증제품에 대한 품질관리
 - 시판품조사 (반기별)
 - 인증업체 및 담당자 교육 (7월중)
 - 현지출장 등을 통한 지도강화
- 품질인증업체 확대 : 매월 1건이상 인증 추진
- 품질인증대상품목 확대
 - (현행) 30개품목 →('97) 3개품목 추가
(흑염소추출가공품, 현미식초, 고춧가루)

23-1. 원산지표시 단속 효율성 제고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9)

- 수입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와 원산지표시제도 조기 정착
- 원산지표시제 관련 제도의 보완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및 이행을 향상

나. 추진성과 ('94~'96)

원산지표시 관련 제도의 보완

- 농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요령 개정 ('95.9, '96.12)
- 농산물 원산지표시 부정유통 고발포상금 지급요령 제·개정('95.3, '96.12)
- 농산물 명예감시원제 도입
 -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제 도입 ('96.3),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제 도입 ('96.12)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대상품목 : ('94) 180개 품목 → ('95) 248 → ('96) 358 → ('97) 404

단속실적

구 분	계	고발	과태료부과
계	17,171건	764	16,407
'96	10,939	312	10,627
'95	4,916	264	4,652
'94	1,316	188	1,128

□ 원산지 표시 이행을

- '94 : 82.2%, '95 : '81.9%, '96 : 89.9% ('94, '95 소비자보호원 조사, '96 농검조사)

⇒ 원산지표시 관련 제도의 보완 및 홍보·단속의 강화로 동 제도는 점차 정착돼 가고 있음.

2. 문제점 및 보완대책

□ 원산지의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 방지 중점 단속

- 초기에는 원산지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 미표시 방지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허위표시, 둔갑판매 방지를 위한 단속 위주로 전환

□ 원산지표시 취약점포 및 품목의 이행을 제고

- 재래시장, 노점상등 취약점포 및 잡곡류, 약재류등 취약품목의 원산지 표시 이행율이 저조

□ 원산지표시 관련규정의 보완

- 현행 국산농산물의 원산지는 시·군명을 반드시 표시하도록하는 등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

□ 홍보강화 및 범국민 감시요원화

- 일부 소비자, 유통업자 및 생산자의 인식부족으로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등이 성행

3. 세부추진계획

- 원산지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 방지 중점 단속
 - 원산지표시 단속을 미표시 적발 위주에서 허위표시, 둔갑판매 방지 위주로 전환
 - 원산지 외관식별방법 및 기기판별방법의 개발 보급
 - 외관식별방법 : ('96) 93개 → ('97) 110 → ('98) 130 → ('2004) 170
 - 기기판별방법 : ('96) 21개 → ('97) 30 → ('98) 45 → ('2004) 90
 - 단속공무원의 식별능력 향상
 - 매년 농검 및 행정기관 400명 교육훈련 (농검 150, 행정 250)

- 원산지표시 취약품목 및 점포의 집중 단속
 - 원산지표시 이행율이 낮은 소형 유통업체와 잡곡류, 약재류 등의 집중 단속 실시

- 원산지 관련 규정의 보완
 - 국내산 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 표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선정 추가 확대 고시

- 홍보강화 및 범국민 감시요원화
 - 소비자, 생산자, 유통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 매년 소비자 등 1,500명 교육훈련, 리후렛 등 홍보물 3만매씩 제작·배포
 - 소비자단체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의 명예감시원 활용
 - 소비자단체 163명, 생산자단체 921명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	'97예산	'98 예산요구	'99~ 2004	계 ('94 ~2004)
□ 사업비					
○ 국 고	1,164	1,017	1,550	11,100	14,831
- 농안기금	350	350	350	2,100	3,150
- 농특회계	814	667	1,200	9,000	11,681

5. 추진일정

- 원산지의 허위표시 및 둔갑판매 중점 단속
 - '97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추진
- 원산지표시 취약점포 및 품목의 집중 단속
 - '97년부터 2004년까지
- 원산지 관련 규정 보완
 - 원산지표시방법 개정 : '97년 하반기
 -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의 선정 추가 : 매년 고시
- 홍보강화 및 범국민 감시요원화
 - 관련자 교육 홍보 : 매년
 - 민간인 명예감시원 활용 : '97 → 2004

23-2. 지리적 표시제 도입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WTO/TRIPs 규정 및 한·EU 기본협력협정의 이행
- 지역특산물의 국내·외적인 보호 및 육성 발전

나.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 WTO/TRIPs의 지리적표시 관련 규정

- 정 의 : 상품의 품질·명성 또는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 기초하는 경우 지리적 명칭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는 제도 (TRIPs 제22조 1)
- 보호조건 : 원산지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고 있는 지리적표시는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음 (TRIPs 제24조)
- 협정의 의무이행 : 선진국은 '96.1.1, 개도국은 2000.1.1, 최빈 개도국은 2006.1 (TRIPs 제65조)

※ 한·EU 기본협력협정에 의해 우리나라는 '98.7.1부터 이행을
키로 합의

○ 외국의 지리적표시제도 운영 현황

- EU는 14개국 400개 품목 보호, TRIPs 이사회에 30개국의 법령이 제출되어 심의 중 ('96.11)

문제점

- 제도도입에 앞서 국내외 실태조사, 해외 입법사례등에 대한 연구검토자료 미흡

- 여러부처 및 법률과 관련되어 입법추진시 부서간 이견 및 법률간 상충 문제 발생 우려
 - 관련부처 : 재경원, 통상부, 특허청, 보복부, 해양부, 농림부
 - 관련법률 :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류법, 가공산업육성 및 품질에 관한 법률

2. 추진방향 및 목표

- TRIPs 규정 및 한·EU협정의 이행
- 지리적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선발 국내외적으로 육성 발전 시킬수 있도록 동제도의 적극적인 도입 추진

3. 세부추진계획

- 연구용역추진
 -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계약기간 : '96.11.5~'97.7.31 (9개월)
- 국내 지리적 표시상표 실태조사 (4월중 시행)
- 지리적 표시보호 관련 법률(안) 작성을 위한 실무작업단 구성 (6월)
- 재경원, 보건복지부, 특허청등 관련부처와의 의견 조정 (8월)
- 농경연 자료와 외국의 현황을 근거로 국내실정에 맞는 법률 입안 (7월)
- 농산물품질관리법(가칭)과의 조정 또는 통합을 위한 협의 (6월)
- 입법예고 및 국회제출 ('98년초)

4. 투자계획

- 비예산사업

5. 추진일정

○ 입법추진 ('98년초)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중의 품질관리내용과 「농산물검사법」을 통합하여 품질관리법을 제정하고 동법에 지리적 표시제도 내용을 추가

23-3. 식육구분 판매제 정착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94.9)

- 우리나라 표준부위별 상품규격 개발보급
(현행) 쇠고기 10개부위 → (향후) 15~20개부위
- 정육점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 식육판매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여 한우고기 둔갑 및 허위표시 판매 단속 실시

나. 추진성과 ('94~'96)

- '95.8.31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식품영업자등의 준수사항) 개정 공포
 - 식육판매영업자는 부위별, 등급별 및 쇠고기는 품종별 구분판매 의무화
 - 부위명, 등급명 및 쇠고기 품종별 구분방법등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함
 - ※ 위반시 벌칙 및 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제77조)
 - 벌칙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 행정처분 : 1회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회 1개월, 3회 2개월
- 식육의 부위.등급 및 국내산 쇠고기 구분판매제도 (농림부고시 제1996-93호)
 - ① 품종별 구분 : 한우고기, 젓소고기, 육우고기 (전국 식육업소)
 - ② 부위별 구분
 - ┌ 쇠고기 부위 : 10개 → 29개 부위
 - └ 돼지고기 부위 : 7개 → 12개부위

③ 등급별 구분 : 1, 2, 3등급 또는 특상, 상, 중등급 (서울시, 5대광역시)

○ 대상 부위 : 쇠고기 (등심, 채끝)

※ 도축장에서 소 품종별 도축검인 색깔 구분표기 ('97.1부터)

(당 초) 한우 : 적색, 육우·젓소 : 청색

(조 정) 한우 : 적색, 육우 : 녹색, 젓소 : 청색

□ 제도 정착을 위하여 그 동안 추진한 사항

○ 교 육 : 전 식육판매업소 순회교육(45천개소), 소비자 교육 등 실시

○ 홍 보 : 안내리후렛 20만매, 포스터 4만매, 여성지광고, “월간 식육문화”, 무료배부 (월 4만부씩), 일간지, 지방지, 전문지, TV, 라디오 보도

○ 제도개선 : 관련전문가 협의회 운영 (고시 개정)

○ 지 도 : 중앙 점검(1회), 시·도는 분기별 1회이상, 기업조합은 반기별 1회

2. 문제점 및 보완대책

□ 문제점

○ '96년 자율계도기간동안 식육업소에 대해서는 충분한 교육, 홍보, 지도를 실시하였으나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는 다소 미흡

○ 업소에서는 제도를 알면서도 과거 거래관행인 둔갑판매, 미진열 판매 등이 개선될 경우 소득이 감소되므로 고의적으로 기피 경향

○ 업소에서는 시행초기에 정부의 강력한 추진여부에 따라 준수계획

□ 보완대책

-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 및 소비자 교육, 홍보 강화
 - 단속실적 : 1.21~2.1(127건 고발), 3.20~3.31(222고발)
- 명예감시원제 도입 추진 (축산물가공업무일원화 추진결과를 감안)
 - 지정대상 : 소비자단체, 축협중앙회, 시·도지사(식육처리기능사)의 추천. (100명 정도 지정계획)
-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강화

3. 세부추진계획

□ 정착시까지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실시

- 정기단속 : 분기별 1회
 - 주 관 : 시·도(군·구) 축산 및 위생공무원 합동
- 특별단속 : 설날, 구정등 육류성수기에 물가지도와 연계하여 단속
 - 주 관 :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 합동

□ 축산물 명예감시원제 도입 추진

- 지정대상 :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및 시·도지사가 추천한 식육전문가
- 인 원 수 : 100명정도
- 명예감시원 활동비 수당 확보 : '98예산 반영

□ 소비자중심으로 제도개선 및 소비자 교육, 홍보 추진

- 소비자단체("소시모")가 주관하는 연구용역 실시
 - 연구내용 : 쇠고기 유통실태 및 소비확대방안, 구분판매제도 실태 및 개선
 - 연구기간 : '97.4~11월 (8개월)
 - 사업비 지원 : 27백만원

○ 축산물등급판정소 및 축산기업중앙회 주관으로 소비자 교육, 홍보 추진

- 교 육 : 20천명 (서울시 통반장, 영양사회 회원, 가정 주부등)
- 홍 보 : 리후렛 240천매 배부, 여성지 및 축산관련잡지 광고 28회 등

4.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 사업량			100명	(100명)	100명
○ 사업비			42	306	348
- 국 고	-	-	42	306	348
- 국고융자			-	-	-
- 지방비			-	-	-
- 자 담			-	-	-

5. 추진일정

- '97년 : 분기별 정기단속 및 육류성수기 특별단속 실시
소비자교육 및 홍보 실시
- '98년 : 축산물명예감시원 운영

24-1.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정 추진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소비자의 고품질 안전농산물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여, 국내 농산물의 품질경쟁력 제고와 품질향상 위주의 일관된 정책추진을 위해 가칭 『농산물품질관리법』 제정

나.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 규정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 품질관리에관한법령』에 혼재되어 있어 이질적인 가공산업육성관련 규정과 품질관리관련 규정을 분리 필요
- 농산물검사를 품질관리 측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산물검사법령』과 통합필요

2. 추진방향 및 목표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향상을 위한 일관된 정책추진·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3. 세부추진계획

- 기존 농산물품질관리 관련법령을 통합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령」
 - 농수산물의 표준출하 규격화(법 제12조)
 - 유기농산물의 표시(법 제12조의 2)

- 특산물 등의 품질인증제도(법 제13조)
- 시판품의 조사(법 제14조)
- 표시변경 등의 처분(법 15조)
- 규격품의 우선구매(법 제16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법 제17조)
-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법 17조의 2)
- 안전성조사결과조치(법 제17조의 3)
- 유통관리전담기관의 지정(법 제18조)

○ 『농산물검사법령』

- 국정검사업무를 민간이양·위탁이 가능토록 재정

□ 지리적표시제도 관련 내용을 추가

- WTO/TRIPs 규정과 한·EU 기본협정 이행과 아울러 국내 지역 특산물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 지리적표시의 정의, 대상품목, 대상지역 범위, 등록주체, 등록절차 및 방법, 보호수준, 보호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

□ 기존 품질관리 규정을 효율적이고 일관성있게 개정 또는 보완

4. 추진일정

○ 「농산물품질관리법」제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 ('97.5)

- 내용 : 품질관리법 범위 및 개정방향
- 협의기관 : 농림부(유통관리과, 가공산업과, 식량관리과), 국립농산물검사소, 농·수·임협 관계자 등

- 「지리적표시제관련조문」 작업 실무협의회 구성 ('97.6)
 - 농림부(유통관리과, 국제협력과, 법무담당관실), 국립농산물검사소, 한국식품개발연구원, KREI관계자 등
- 우리부 법률(안) 마련 ('97.10)
- 입법예고 및 관련부처와 협의('98.2)
- 장·차관회의, 법제처 심사 등('98.4~5)
- 국회제출 ('98.5)
- 공 포 ('98.6하)

24-2. 농검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안전성조사, 품질인증, 표준규격출하, 원산지관리등 강화된 품질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및 기관명칭 개편

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가) 연 혁

- 1949. 4 : 농산물 검사법 제정 및 농산물 검사소 발족
- 1962. 12 : 국립농산물검사소로 개칭
- 1963. 5 : 국립농산물검사소 시험소 설치
- 1971. 9 : 소장 직급 격상 (2급 →1급)
- 1994. 12 : 국립농산물검사소로 생사검사기능 흡수통합

(나) 기 구

중 양	시 · 도	시 · 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소 - 서 무 과 - 품질관리과 - 검사관리과 - 생사검사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width: fit-content; margin-left: 20px;">시 험 소</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 소 - 서 무 과 - 품질관리과 - 검사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소 (137개소) - 5급 : 67개소 - 6급 : 70개소

(다) 정 원

본 소	시험소	시·도 지소	시·군 출장소	계
79 명	54	298	1,087	1,518

(라) 기 능

농 산 물 검 사	농 산 물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농업단체가 구매하는 농산물과 정부구매 농산물의 가공품검사 ○ 정부 및 농업단체가 수입하는 농산물 검사 ○ 주요농작물 종자법에 규정된 종자검사 ○ 수급안정을 위한 비축농산물검사 ○ 수출 및 내수용 생사류 검사 ○ 인삼 산업법에 규정된 인삼류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양곡 안전관리 ○ 농산물 안전성 조사 ○ 특산물의 품질인증 ○ 농산물 규격출하 ○ 양곡도정 및 저장에 관한 조사시험 ○ 생사류 향상에 관한 기술지도 및 조사 연구

(2) 문제점

- 현행 농검조직으로는 품질관리 종합기능 수행에 한계
 - 현행 농검조직·인력은 구매검사업무 위주로 되어 있어 새로운 품질관리 업무 활성화 지남

2. 추진방향 및 목표

가. 추진방향

-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 기능 강화

나. 추진목표

- 안전성 조사를 품질관리의 중추기능으로 추진
- 품질인증, 원산지관리, 표준규격화 기능 강화

3. 세부추진계획

- 부서별 기능, 조직을 조정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 하되 정원 일부 감축

구 분	현 행	개 편 (안)
기관명	국립농산물검사소	농산물 품질관리원
본 소	본소 4과(3급 또는 4급1, 4급3), 1 시험소(4급)	본소 5과(3·4급1, 4급4) 1 시험소(4급)
시·도	11지소(10개소 4급, 1개소 5급)	11시·도 농산물품질관리원(4급)
시·군	137출장소	137농산물 품질관리사무소

- '97. 5. 농검조직 개편안 총무처 제출, 개편 추진

5. 생산자조직에 의한 수급안정체제 확립

- 25-1 농협의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육성 기능강화
- 26-3,4 작물재배의향 조사시 주산지별 조사 추가
- 27-1 송아지 생산안정제 실시
- 27-2 추곡약정 수매제
- 28-1 채소류 산지폐기 개선방안
- 28-3 축산물 수매 및 가격안정 방안
- 28-5 전국 공영도매시장 정보망 구축
- 29 출하예약제 도입
- 30 농안기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여 백

5. 생산자조직에 의한 수급안정체제 확립

25-1. 농협의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육성 기능강화 — 농업관측, 생산·출하조절, 수매 등 일관수급안정체제구축 —

1. 1단계대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가. 1단계 추진계획

- 전국적인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군단위, 도단위, 전국단위 협의회 결성
 - 군단위 협의회 : 주산단지 조합장, 영농조합법인대표, 작목반(회)장, 시·군 및 관련기관담당자
 - 도단위 협의회 : 군 협의회장, 주산단지조합장, 도 및 관련기관담당자, 학계 등
 - 전국협의회 : 도 협의회장, 군 협의회장, 주산단지조합장, 정부, 관련기관 담당자, 학계, 농협중앙회 담당자 등
- 협의회 업무를 원활히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사무국 설치

나. 추진성과

- 품목별 전국협의회 결성 : ('93) 5개 품목 → ('96) 17개 품목
 - 채소류 (5개) : 마늘, 양파, 대파, 생강, 고랭지 채소
 - 과실류 (9개) : 사과, 배, 감귤, 유자, 단감, 포도, 복숭아, 참다래, 밤
 - 기 타 (3개) : 화훼, 약용작물, 버섯
- 17개 전국협의회중 일부품목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군 및 도단위 협의회도 구성 운영
 - 도단위협의회 : 단감 (경남, 전남)
 - 군단위협의회 : 생강 (태안, 서산, 완주)

- 생산자조직육성자금 지원품목과 규모확대로 품목별 사업추진의 기반 조성
 -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 자금 : ('93) 300억원 → ('96) 1,000억원
- 자율적인 생산, 출하조정 등 생산자조직에 의한 사전적인 가격안정사업 가능성 제시
 - '96년산 마늘 자율폐기 : 78농협 8,882농가, 656ha (약 8,000톤)
 - 포도 신규식재 억제 지도를 통해 수입개방에 대응
- 수요창출을 통한 소비저변 확대
 - 한약재 직거래 추진 : ('96) 657톤 32억원
 - 우리사과 지키기 결의대회 ('96. 2. 2) : 24 농협 1,439농가 참여
 - 해외시장 개척 : 수출시장 조사 (과실류, 채소류), 국제화훼 박람회 참가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1) 농협중앙회와 정부의 체계적인 육성 부족

- 전국협의회, 도·군협의회, 사무국의 역할 등이 모호
- 품목 협의회별로 각 품목과에서 담당하나 체계적으로 감독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부부서가 없음
- 품목별 전국협의회 사무국의 전담인원이 적고 별도 사무실을 갖추지 못한 실정임 (사무국장이 차장급)
- 농협의 전국협의회에 대한 운영자금 지원 전무

(2) 품목별 전국 협의회 가입의 유인요인이 적음

- 품목별 전국협의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연회비(10만원~100만원)를 납부해야 하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혜택이 없음

- 비회원과 차별화시켜 품목별 생산자 조직 육성 자금이 지원되거나 금액이 과소 (회원당 2.5억원 용자)
- 가입회원 감소(사과전국협의회) : ('94) 50개농협 → ('96) 28개농협
- 농협 중심조직으로서 영농조합법인이나 품목별 협회 등 농협이외의 조직은 참여실적 미미
 - 지역농협 560, 전문농협 36, 영농조합법인 1, 기타 3
 - 농협전국협의회에 선진유통 품목별 조직인 참다래유통사업단, 전문화훼조합등 미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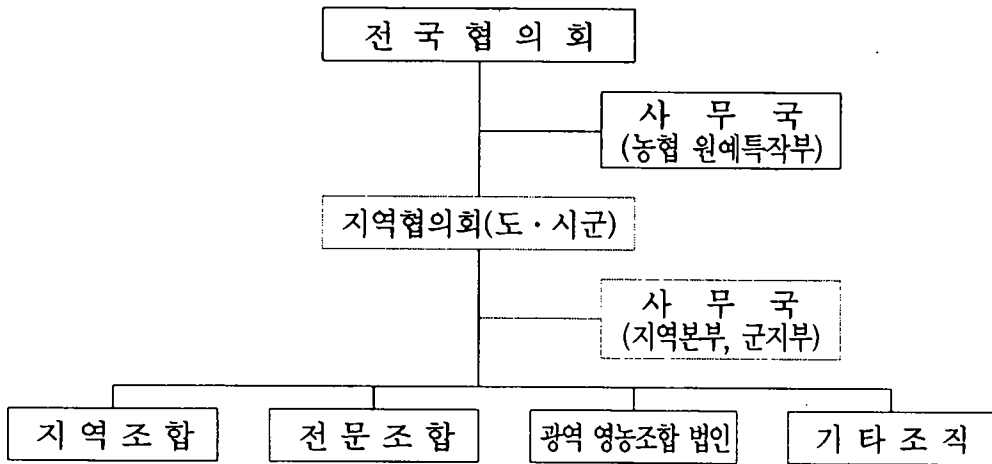
(3) 품목별 전국협의회의 기능 활성화 미흡

- 조직의 목적인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기능이나 능력 미비
 - 생산조정 및 출하조정을 위한 농업관측 기능 미약
 - 생산조정과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자조금 조성 등 제도적 뒷받침 미비
- 단순한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비판제기
- 조직평가에 의한 차별지원 체제가 미구축
 - '96년까지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에 대한 평가실적 없음

3. 세부추진계획

- 전국적인 농업관측과 생산조정, 출하조절을 할 수 있는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 육성
 - 농협의 17개 품목별 전국협의회 기능 강화 및 협의회 신규결성 확대
 - 생산자조직이 농업관측, 출하조절, 구매 등 일관적인 수급안정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우선 지원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벤치마킹제도입, 발전단계에 맞는 사업 추진

가. 전국 생산자조직 역할 정립



< 농 립 부 > : 품목별 생산자조직육성 정책기관

- 유통정책국 : 전국 생산자조직 육성 정책 총괄
- 각 품목국 :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 지원·감독 및 관련사업 추진

< 전국협의회 > : 최고 의사결정기관

- 회원규약·자조금 규정 제정 및 회비·자조금 각출액 결정
- 정부정책자금·농협저리자금·자조금의 회원별 지원액 결정
-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을 위한 회원별 재배면적, 출하량 결정 등

< 사 무 국 > : 농협중앙회 원예특작부

- 자체 농업관측 및 타기관 농업관측 결과분석, 농업관측 제공
- 품목별 협의회 회원조합 관리 및 사업추진 지도
- 자조금 관리, 집행, 사후관리 등 협의회 결정사항 집행 등

< 회 원 조 직 > : 사업집행조직

-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업수행

나. 전국 생산자조직 강화

< 협 의 회 >

- 농협의 품목별 생산자조직 추가 결성
 - 대상 : 수급불안 품목 (3개) : 고추, 시설채소, 가을무·배추
- 전국협의회 신규회원 가입 확대
 - 회원농협 이외 규모화된 품목별 생산자조직은 전국협회에 직접 가입
 - (예) 회원수가 300명 이상이며, 사업지역이 1개군 이상인 생산자 조직
 - 전국협회 품목별협의회 규약 “표준화”를 통한 가입 근거 마련
- 농협 품목특별협의회와 한국 농업 경영인 연합회 품목위원회 등과 품목별 수급조정, 시장개척,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호 협의 체제 마련

< 사 무 국 >

- 농협중앙회 품목별 전국생산자 조직 사무국 기구 강화
 - 원예특작부를 품목별 전국생산자 조직 사무국으로 개편
- 농협중앙회 담당부서의 품목별 세분화 (예 : 과수부, 화훼부, 채소부 등)

< 지역협의회 >

- 지역단위협의회 구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생산자조직과의 지역농업협력체제 강화
 - 지방자치단체, 농촌지도소, 학계, 유통업체, 농협대표자로 구성된 자문지원단 구성
 - 지도소, 농협, 새농민상 수상자 등으로 구성된 영농기술지도 지원단 운영

〈 영암군 원예연합회 결성사례 〉

- 구성 : 4개 분과협의회 (수박, 시설원예, 과수, 화훼) 87개 조직 (작목반 60, 영농조합법인 27개) 1,768 농가 참여
 - 영암군 원예연합회 영농지도단
 - 회원농협 영농지도자, 군지부 담당직원 등 13명으로 구성
 - 영암군 영농지도요원 통합운용사업 협의회 : 군지부장, 조합장, 행정기관 15명
 - 영암군 원예연합회 자문기관
 - 군청, 지도소, 농검, 전남대, 시설원예연구실, 호남온실작물연구소, 전남 농촌진흥원, 나주배연구소, 도의원, 군의원 참여
 - 사업개발 실적
 - 군단위 통일상표인 「영암월출」 및 포장재 디자인 공동개발
- ⇒ 단감, 수박, 방울토마토 등 17개 품목 포장재 개발, 활용 ('96년 451천매)

- 소규모 영농조합법인은 지역단위협의회 가입

〈 회원조직 〉

- 협의회 가입조합의 품목별 특화 유도

다. 전국적인 농업관측과 생산·출하조절을 위한 자금 지원

- 정 부 : 농업관측 보조금, 출하자금, 수매자금등 우선지원
- 농 협 : 유통저리자금, 조합상호지원기금, 홍보·수출촉진, 행사비 등 지원
- 유통공사 : 수출시장개척 지원 등

단 계 별	중 요 과 제	우 선 지 원
파 종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배의향조사 ○ 종자판매량조사 ○ 재배면적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관측조사비 지원(정부) ○ 재배면적조정에 협조하는 농민에게 자조금에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조금 조성(정부, 농협) ○ 계약재배 자금지원 확대(정부, 농협)
생 육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예상량조사 ○ 과잉생산우려 수확전 산지폐기 ○ 공동출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관측조사비지원 (정부) ○ 산지폐기자금지원(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비에서 미투입 비용고려 ○ 공동출하자금 지원(정부, 농협)
출 하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조절 ○ 저장, 가공 ○ 수매·비축 ○ 소비촉진 ○ 수출 ○ 수확후 산지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하조절자금지원 (정부, 농협) ○ 저장, 가공자금지원 (정부, 농협) ○ 정부수매자금지원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수매사업 대행 ○ 홍보비 지원 (농협) ○ 수출수매 및 부대비 지원 (정부) ○ 수출시장개척지원(유통공사) ○ 산지폐기자금지원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비 수준

라. 품목별조직의 평가 및 차등지원제 도입

-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자체평가와 농림부, 농협 유통공사 등의 현지확인평가 병행 실시
-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관계전문가로 생산자조직평가위원회 설치
 - 평가 계획 및 우수 생산자 조직에 대한 차별 지원 조건 의결
 - 생산자조직의 구성, 기능, 기금관리 등을 평가하여 등급별 전 산 관리
- 각종 지원자금 (조직육성, 운영자금 등)이 우수조직에 집중 지원 될 수 있는 배정기준 마련

- 벤치마킹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단계에 맞는 지원 실시

구 분	기 준	지 원 내 용
최 우수 조직	종합점수 80점 이상	품목별 자체 농업관측기능 부여 생산출하조정을 위한 자조금 조성 지원 정부 비축·홍보사업의 대행 등
우 수 조 직	종합점수 70점 이상	유통정보제공을 위한 정보기기 지원 소비촉진, 수출확대를 위한 홍보지원 농업관측 기능수행을 위한 농업관측 정보 제공
일 반 조 직	종합점수 60점 이상	전국생산자조직 회원확대를 위한 지원 농안기금 사후관리를 위한 지도 강화

4. 추진일정

전국 생산자조직 평가 ('97년 상반기)

- 전국 생산자조직 및 회원 단위조직 현지확인 평가
- 생산자조직 평가위원회 개최, 최우수·우수·일반생산자조직 선정
- '98년 농안기금 운용계획 수립, '97년 농안기금 수정계획에 평가 결과 반영

생산자조직 결성확대

- 시설채소 전국품목별협의회 ('97년중)
- 무·배추, 고추 전국품목별 협의회('98년중)

생산자조직의 자조금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농발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97년중)
 - 자조금 지원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기준 상향조정
- 농협중앙회는 품목별 전국협의회 자조금 기본규정을 제정, 품목별 협의회에서 의결('97년중)
 - '98년부터 자조금 조성 추진
- 품목별 자조금 규정 제정, 농림부 승인 ('97년중)

정부수매사업 위탁 시범 ('99년)

< 별 첨 > 품목별 전국협의회 참여조직 현황

(’96.10월말 현재)

구 분	참여조직수	농협조직		농협이외 조직	
		지역농협	전문농협	영농법인	기타조직
○ 마 늘	125	125	-	-	-
○ 양 파	53	53	-	-	-
○ 대 파	14	14	-	-	-
○ 생 강	19	19	-	-	-
○ 고랭지채소	44	43	1	-	-
○ 사 과	28	16	12	-	-
○ 배	10	2	8	-	-
○ 포 도	31	23	4	1	3
○ 감 귤	20	19	1	-	-
○ 복숭아	27	23	4	-	-
○ 유 자	39	38	1	-	-
○ 단 감	31	30	1	-	-
○ 참다래	18	18	-	-	-
○ 화 훼	43	40	3	-	-
○ 약 용	40	40	-	-	-
○ 버 섯	23	23	-	-	-
○ 밤	35	34	1	-	-
소계 (17개)	600	560	36	1	3

26-1.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강화

1. 추진상황 및 성과

가. 추진상황

- 관측품목(채소류) : 고추, 마늘, 양파, 파, 무, 배추(6개)
- 관측기관 : 농림부, 농진청, 농협, 유통공사, 농경연, 종묘협회
- 관측내용 및 방법
 - 종자판매량 : 파종기전 한국종묘협회가 47개 종묘업체조사
 - 재배의향
 - 농림부 :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3,140호)와 주산단지 일부를 대상으로 청취조사
 - 농경연 : 모니터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 농 협 : 주산단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작목반장을 통해 전수조사
 - 재배면적 및 작황
 - 농 릫 부 : 표본구(37,000개) 실측조사
 - 유통공사 : 모니터 및 현지조사
 - 농 경 연 : 모니터를 대상으로 우편조사
 - 농 협 : 주산단지 작목반을 대상으로 작목반장을 통해 전수조사
 - 재고량 : 유통공사가 모니터 및 냉장협회의 협조를 받아 농가 및 저온저장 재고량 조사
- 관측정보의 분석·가공 :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유통관계자로 구성된 농업관측협의회를 통해 분석가공

- 관측정보의 분산 : 관측월보 공중통신망, 전문지 등을 통해 농가에 배포

나. 추진성과

- 농가에 파종 및 생산전망 등에 대한 정보제공
- '96.9월부터 관측월보 발행으로 정기적인 정보제공

2. 문제점

가. 관측정보의 수집방법 및 시기의 부적합

- 농가재배의향 조사에 대한 별도 표본 설계없이 농가경제조사 표본과 일부 주산단지 농가를 대상으로 조사
- 통계조사가 생산·수급조절할 수 있는 일정과 맞지 않아 여러 기관을 통해 중복조사

나. 관측정보의 분석·가공내용이 이용자요구 및 현실성 미흡

- 전문가의 부재로 관측정보 내용이 이용자의 요구에 미흡
- 관측협의회가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는 수준에 불과
- 관측협의회를 농경연에서 운영하여 분석·가공함으로써 객관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현실성이 부족하고 재배작형등 다양한 품목 취급에 한계

다. 관측정보의 분산지연

- 관측결과 공표일이 지정되지 않고 농가전달에 많은 시간 소요
- 중요한 관측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음

라. 관측제도가 생산조정과 연계 미흡

- 관측정보에 대한 불신 및 대체소득작물의 부재, 농가의 조직화 미흡등으로 실질적인 재배면적 조정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 관측결과와 홍보부족으로 농민의 자발적인 참여 미흡

마. 관측정보의 평가결여

- 관측정보 분산에 대한 파급효과 측정 결여
- 농민의 관측수요 여건변화에 대한 파악결여

3. 세부추진계획

가. 관측정보의 수집

- 농가재배의향 조사 표본을 현실에 맞게 설계(농경연 용역사업으로 추진)
 - (현행) 농가경제표본농가 + 주산단지일부농가 → (개선) 최근 재배면적 분포 등을 감안
- 관측(재배의향, 재배면적, 작황등)일정을 수요자가 필요한 시기와 수급조정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정
- 통계정보관실에서 조사되지 않는 재고물량등은 현행과 같이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

나. 관측정보의 분석·가공

- 정보 수요자 요구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전문가를 확보
 - 농업기상정보, 지역별 작황, 소비동향, 해외시장정보등 사전에 축적 기능을 갖는 가공정보의 생산보급
- 관측정보에는 수급 및 가격전망분석과 농가의 생산·출하방향까지 제시
- 관측정보의 분석·가공을 현행과 같이 농경연에서 추진하되 장기적으로는 생산자 단체 추진 검토

- 재배작형이 다양하고 지역적 특성이 큰 품목(예: 파)부터 생산자 단체가 농업관측 추진 ('98 시범시행)

다. 관측정보의 분산

- 관측조사일정과 연계하여 관측공표일 지정
- 관측내용은 전문지(농민신문)와 공중통신망을 통해 신속분산하고 관측월보를 통해 배포

라. 관측정보를 생산조정과 연계

- 농업관측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농가교육으로 관측의 실효성 제고
- 관측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
- 생산자단체 중심의 적정면적 재배추진
 - 생산자 조직에 가격안정사업 손실 보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지원 추진
 - 장기적으로 생산자 조직에게 정부수매사업을 위탁검토

마.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초고속 시범사업 실시

- 대상작물 : 시설오이, 풋고추, 참외
- 사업내용 : 전남, 경북, 경남 주산단지에 PC 200대(단협 41대, 작목반 159대)를 설치하고 통계사무소에 지역서버 설치
 - 산지생산자의 생산 계획·출하정보 교환처리
 - 산지공판장 경매결과 공급으로 출하물량 조절
 - 시설채소 식부의향, 재배기술, 유통정보등 품목별 전문정보 DB구축
 - 인터넷을 통하여 지역내 지역간 정보교환
- 소요예산 : 2,170백만원(정통부 1,480, 농림부 690)
 - ※ 시범사업 실시결과에 따라 단계적 확대

4.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94-2004)
○사업량					
○사업비	167	114	277	1,500	2,028
-국 고	-	-	-	-	-
-농안기금	167	114	277	1,500	2,028

5. 추진일정

<단기과제>

- 관측일정 조정 및 관측공표일 지정(생산통계담당관실, 채소과, 농협, 농경연) : '97 하반기
- 기관별 관측항목 지정(생산통계담당관실, 채소과, 농협, 유통공사, 농경연) : '97 하반기
- 품목별 관측 및 분석가공, 정보배포기관 조정(유통공사, 채소과, 농협, 전국대과협의회) : '97 하반기
- 관측사업 평가세부계획 수립(채소과, 농경연) : '97 하반기
-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초고속시범사업 실시(통계정보처리담당관실) : '97 하반기
- 농가재배의향조사 표본설계(생산통계담당관실, 농경연) : '98

<장기과제>

- 주요 농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 중심의 전국적인 농업관측실시 확대(유통정책과, 유통관리과, 채소과, 농협)
 - 농업관측결과가 생산조정 및 출하조절로 연계
- 초고속 시범사업 확대실시(통계정보처리담당관실)

26-2. 품목별 농업관측 전문가 양성

1. 추진상황 및 성과

가. 추진상황

- 농촌경제연구원에 관련기관, 생산자단체, 유통관계자로 구성된 농업관측협의회를 두고 보조금사업(농안기금)으로 농업관측협의회 운용
-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을 채용하여 관측협의회를 운영하고 관련기관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가공

나. 추진성과

- 농촌경제연구원이 관련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하여 농가에 관측정보 배포

2. 문제점

- 수집된 정보를 분석·가공할 수 있는 품목별 전문가 부재로 농가대수준의 정보공급에 미흡
 - 농업관측에 대한 노하우 및 관련정보의 축적과 현황파악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전문가 양성 필수적
- 현재의 농업관측협의회 운용 및 관측정보 분석·가공을 위한 농안기금 실비보조금 사업으로는 연속성이 결여되어 전문연구원 확보가 어려움
 - 실비보조금 사업은 매년 단위로 자금이 배정되기 때문에 연구원을 연말에 해촉하고 연초에 신입연구원 위촉 되풀이

3. 세부 추진계획

- 농촌경제연구원에 농업관측 전문연구원 확보(책임연구원급 2명)
-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
 - 장기용역 사업 또는 실비보조금으로 지속집행

4. 투융자 계획

(단위 : 백만원)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94-2004)
○ 사업량		2명	3명	3명	
○ 사업비		21	52	300	373
- 국 고		-	-	-	-
- 농안기금		21	52	300	373

5. 추진일정

- 농업관측 전문연구원 확보 : '97.6
- 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 업무의 장기용역사업 시행방안 검토 : '98

26-3,4. 작물재배의향조사시 주산지별 조사 추가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주곡의 안정적 공급을 필요로 하는 식량작물과 당해년도 재배면적에 따라 가격 등락폭이 큰 주요 농작물을 대상으로 주산지 농민의 재배의향을 조사하여 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유도하고 가격안정제도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나. 현황 및 문제점

1) 현 황

- 조사작물(18개 작물) : 논벼, 걸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콩, 감자, 고구마, 옥수수, 참깨, 땅콩, 고추, 대파, 고랭지무·배추, 김장무·배추, 마늘, 양파
- 조사대상
 - 표본농가 : 농가경제조사 표본농가 3,140호
 - 주산지농가 : 8,790호(작물별 170~1,520호)
- 조사시기 및 회수(년8회 조사) : 작물별로 파종 1개월전 2~3회 조사
- 조사방법 : 면접·청취조사
- 작물재배의향조사 계획표 : 별첨

2) 문제점

농업통계조사 인력은 감축되고 있는 반면, 각종 통계조사의 수요증대로 업무량이 증가하므로서 농업통계조사의 부실화가 우려

되므로 조사대상 작물을 정비하고 표본을 보완하여 정도높은 통계자료 생산유도

○ 조사대상 작물의 재검토

- 콩, 옥수수, 참깨, 땅콩, 맥주보리 등 재배면적 증감이 가격에 영향이 적은 작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 주산지 조사대상 농가의 정비

- 매년 전년도 작물재배면적 조사결과를 근거로하여 적정조사대상농가를 정비·보완하므로서 보다 정도 높은 통계자료 생산

○ 주산지 조사대상 농가 적정 표본수 확보

조사대상 작물의 지역별 재배동향에 따라 적정 표본수를 확보하여 정도 높은 통계자료 생산

2. 추진방향 및 목표

재배의향조사 작물을 재검토·선정하고 매년 전년도 작물재배면적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시군별, 작물별 재배의향조사 농가를 정비·보완하여 보다 정도 높은 통계자료 생산

3. 세부추진계획

- '96년도산 주요작물 지역별 재배동향 작성 : '97. 5. 30
- 재배의향조사 대상작물 협의(관련국·과) : '97. 6. 30
- 작물별 재배의향조사 적정 표본수 결정 : '97. 7. 30
- 시험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 '97. 10. 30

4. 추진일정

- '97년도 재배의향 조사는 현행대로 실시
- '98년도 재배의향조사는 관련국(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사 실시

< 별 첨 > 작물재배의향조사 계획표

조 사 명	조 사 대 상			조사 방법	조사 차별	조사기준일
	계	표본농가	주산지농가			
○여름작물 - 고 추	호 4,330	호 3,140	호 1,190	면접 청취 조사 " " " " " "	1차	12. 5
...					2차	1. 15
...					3차	3. 15
┌ 논벼, 콩	3,140	3,140	-			
└ 감 자	3,630	3,140	490			
┌ 고 구 마	3,480	3,140	340		1차	1. 15
└ 옥 수 수	3,280	3,140	140		2차	3. 15
┌ 참 깨	4,110	3,140	970		3차	4. 15
└ 땅 콩	3,570	3,140	430		(3차는 논벼만	
┌ 파 (외대파)	3,600	3,140	460		조사)	
○무·배추						
┌ 고랭지 무	560	-	560	"	1차	4. 15
└ 고랭지 배추	560	-	560	"	2차	5. 15
┌ 김장 무	3,550	3,140	410	"	1차	5. 15
└ 김장 배추	3,580	3,140	440	"	2차	7. 15
○겨울작물						
┌ 겉 보 리	3,460	3,140	320	"		
└ 쌀 보 리	3,340	3,140	200	"	1차	8. 15
┌ 맥주보리	3,310	3,140	170	"	2차	9. 15
└ 마 늘	4,660	3,140	1,520	"		
└ 양 파	3,730	3,140	590	"		

27-1.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2001년 수입개방시 큰 충격이 예상되는 영세번식농가에 대하여 송아지 생산과 일정소득을 보전하여 주므로써 한우사육기반 유지

나.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의 송아지값 하락등으로 번식우농가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조기시행 촉구
 - 수송아지가격 : ('90) 1,217 → ('95) 1,887 → ('97.3) 1,114천원
- 축산법 개정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근거 마련 ('94.12)
 - 축산법 제35조(육용송아지의 생산안정 조치)

2. 추진방향 및 목표

- 영세번식농을 대상으로 송아지거래가격이 생산안정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등록된 소에 대해 차액 보전
- 장기적으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송아지생산안정기준가격을 년차적으로 인하하여 경영비 수준으로 접근시킴
- 소 전산화사업과 연계하여 송아지개체식별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인력 절감

3. 세부추진계획

- 사업주체 : 축협중앙회

- 대상농가 :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참여하는 계약농가
- 대상축종 : 한우송아지
- 적용가격 결정고시 : “송아지 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산안정기준가격, 경영합리화가격, 표준거래가격등 결정
- 가격보전 : 송아지생산농가의 거래가격이 생산안정기준가격이하
로 떨어질 때 가격차 보전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 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 사업량(천두)			720	432,000	504,000
○ 사업비			40,300	367,200	407,500
- 국 고(축발)			32,300	293,800	326,100
- 국고융자(축발)			-	-	-
- 지방비			4,000	36,700	40,700
- 자담			4,000	36,700	40,700

5. 추진일정

- 소 개체식별 도입 및 전산화사업 : '95.10~'97.12
-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97.6~'97.12
 - 송아지 생산안정기준 가격절차등 필요한 사항
- '97.7~12 : 계약농가 모집 및 모의연습 실시(2개군)
- '98.1~ : 전국시행

27-2. 추곡약정 수매제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WTO 수매보조금 감축이행 제약속에서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직·간접적인 소득지원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기본식량인 쌀의 원활한 수급조절 도모
- 쌀값 계절진폭제 도입, 농협을 통한 정부미 공매제 시행등 '93 양정개혁에 힘입어 최근 활성화 되고있는 쌀의 민간시장기능을 더욱 촉진
 - 수확기에 정부수매와 시장출하중 농가가 유리한 쪽을 자율선택케 함으로써 민간유통활성화와 자율영농 정착
 - 계 절 진 폭 : ('94) 7.1 → ('95) 11.2 → ('96) 14.1%
 - 산지쌀값(11월) : ('94) 104 → ('95) 120 → ('96.11) 133천원수준/80kg
 - (전년대비 상승율) (3%) (15%) (11%)

나. 현황 및 문제점

- 연초에 사전 예시한 수매가격과 수매량에 따라 봄철 영농기에 약정을 체결하고 약정금액의 40%(벼 40kg가마당 2만원)를 선금으로 지급
 -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 : 3~4월
 - 약정물량 및 선금지급 한도액 : 8,500천석(8,500억원)

- '97년산 추곡수매 약정체결 및 선금지급상황
 - 약 정 농 가 : 711천호('96년산 수매농가 대비 76%)
 - 선금신청농가 : 494천호(약정농가 대비 70%)
 - 선 금 지급액 : 6,582억원(한도액 대비 77.4%)
- ※ 산지쌀값 수준이 높은 양질미 지역일수록 약정비중이 낮음.
- 작황부진 등으로 전국적인 쌀값이 수매가격을 상회할 경우 수매실적 저조 우려

2. 추진방향 및 목표

-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소득안정을 통한 자급기반 유지
- 약정농가 관리업무 전산화 추진, 약정농가 관리실태 확인·점검 등을 통해 약정수매제의 원활한 정착 도모
- 쌀값 계절진폭의 탄력적 운용등을 통해 수확기 산지 쌀값을 적정수준에서 안정시켜 수매목표 달성

3. 세부추진계획

- 약정농가 관리상황 D-Base구축(5~8월)
- 약정이행실태 확인점검
- 단계별 쌀값관리목표 설정 운용 및 공매곡의 탄력적 방출로 적정 계절진폭 유지
- 정부직접수매량이 계획량에 미달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미곡종합처리장, 농협 등을 통해 시가매입 추진

4. 투자계획(양특회계)

(단위 : 만석, 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예산요구	'99~2004	계 ('94~2004)
○사 업 량	2,867	850	810	4,970	9,497
○사 업 비	6,907,600	2,059,800	2,025,600	10,391,000	21,384,000
-국 고	3,974,700	1,190,500	1,241,900	7,451,400	13,858,500
-농협자금	2,932,900	869,300	783,700	2,929,600	7,525,500

주) '94~'96년은 실적기준, '97이후는 '97수매가격 기준

5. 추진일정

- 약정농가관리 ('97.5~12월)
- 시기별 쌀값관리 대책추진 ('97.5~12월)
- 쌀값·작황 여건등에 따른 상황별 수매대책 수립 ('97.5~6월)
- 약정수매실시 ('97.11~12월)
- 약정수매 부진시 시가매입 추진 ('98.1~2월)

28-1. 채소류 산지폐기 개선방안

1. 추진상황 및 성과

가. 추진상황

-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이 풍작으로 가격이 경영비 수준이하로 하락할 경우 산지수매하여 폐기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95		'96		비 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753톤	157백만원	109,375	5,365	
봄무.배추	2,510	115	1,025	566	※'95재원:농안기금
고랭지무.배추	1,243	42	9,805	686	80%,농협 20%
가을무.배추	-	-	98,545	4,113	※'96재원 :농안기금 100%

나. 추진성과

- 과잉생산으로 가격하락한 농산물의 일정물량을 산지에서 수매하여 시장격리 함으로써 시장공급물량을 줄여 수급 및 가격안정
- 생산농가에게는 차년도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수취가격 지지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사업적기의 일실 우려

- 가격변동폭이 큰 품목의 특성상 사업착수시기 판단이 어려움
⇒ 사업착수 시기를 시장가격에 기준하여 설정하므로써 가격하락 시 자동적으로 수매착수토록 보완 필요
- 수매물량 및 수매가 설정의 일관성 미흡
 - 수급상황을 분석하여 과잉예상물량중 일정량을 수매
 - 수매가는 경영비의 70~100% 수준에서 수매 당시의 상황에 따라 조정

3. 세부추진계획

< 단기대책 >

- '97년도 출하조정사업 지침 보완
 - 수매량은 상한선을 정하되, 시장가격에 연계하여 자동적으로 수매물량을 조절토록 함(시장가격이 2일이상 경영비수준 이하로 하락시 수매실시, 경영비 수준이상 상승시 수매중단)
 - 수매가는 과잉생산을 유발하지 않도록 경영비의 80%수준

< 중·장기대책 >

- 사업대상품목의 확대
 - 기존 무·배추 이외에 저장성이 있는 마늘, 양파 등도 과잉생산이 예상되어 생산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수확기이전에 폐기할 경우 사업대상 품목으로 포함 검토
- 사업방식의 보완
 - 생산자조직의 자율적인 수급판단에 의한 산지폐기시 출하조정 자금 지원방안 검토

28-2. 과실류 저장, 가공업체 수매개선 방향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과실 수확기의 홍수출하를 방지하고 단경기의 공급량 확보로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가공원료 수매자금을 지원하여 생산자 소득증대와 가공사업 활성화 도모

나. 추진현황

사업개요

- 지원방법 : 사업실시기관(농협, 유통공사)이 생산자단체와 저장·가공업체의 신청을 받아 수매계약 체결
- 수 매 : 사전 출하약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산지농협과 유통공사에서 수매
- 수매가격기준 : 산지형성가격
- 지원조건(농안기금)
 - 대출금리
 - 농·림·수·삼협 및 정부재투자기관 : 5%(대여 4%)
 - 일반업체 : 8%(대여 6%)
 - 용자기간 : 1년이내

□ 수매지원현황(민간가격 안정사업)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95		'96		증△감		'97(P)	
		물 량	지원액 (A)	물 량	지원액 (B)	A-B	비율	물 량	지원액
저장용	사 과	15,359	11,225	5,398	4,051			11,000	7,238
	배	2,952	3,270	2,227	1,519			1,500	1,744
	단 감	1,268	1,141	525	463			800	616
	참다래	594	269	-	-			-	-
	계	20,173	15,905	8,150	6,033	△9,872	△62.1	13,300	9,598
가공용	사 과	107,694	15,130	34,668	4,642			76,000	8,160
	복숭아	8,074	1,591	5,026	1,456			9,625	1,656
	포 도	27,615	3,536	14,883	2,500			13,000	3,100
	감 껍	47,227	4,650	11,733	2,000			50,000	2,300
	계	190,610	24,907	66,310	10,598	△14,309	△57.4	148,625	15,216
합 계		210,783	40,812	74,460	16,631	△24,181	△59.2	161,925	24,814

□ 과실 총생산량 대비 수매물량('96년산 기준)

(단위 : 천톤)

구 분	'96생산량 (A)	수매물량(B)			대비(B/A)		
		계	저장	가공	계	저장	가공
					%		
사 과	651.4	87.0	11.0	76.0	13.4	1.7	11.7
배	219.3	1.5	1.5	-	0.7	0.7	-
복 송 아	127.5	9.6	-	9.6	7.5	-	7.5
포 도	357.3	13.0	-	13.0	3.6	-	3.6
단 감	167.1	0.8	0.8	-	0.5	0.5	-
감 굴	514.1	50.0	-	50.0	9.7	-	9.7

다. 문제점

- 사업규모와 지원액이 적어 정책목적 달성 미흡
- 산지가격지지 기능은 다소 있으나 가격상승시 안정대책 미흡
 - 생산농가, 저장·가공업체의 수매기피
- 생산측면만 중시 소비측면 소홀로 소비자 가격 불안정
- 수입자유화 및 국산원료 고가형성으로 가공업체에서는 외산수입을 선호하는 경향
- 가공용과실 수매제도가 과실가격의 등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수매계약업체가 수매계약 체결물량에 대한 수매 미이행시 제재수단이 없음

2. 추진방향 및 목표

- 사업지원방식을 단순화 및 규모화

- 가격변동에 따른 수매물량 탄력적 운용
- 수매지원대상업체의 다양화

3. 세부추진계획

- 사업별, 품목별 지원방식을 목적별로 단순화
 - 긴급수매, 비축수매, 일반수매 등으로 단순화
- 품목간·용도간 전환 수매 도입
 - 가격변동에 따라 수매물량과 지원액 탄력 운용
- 소비자 유통업체, 산지수집상 등 수매업체 다양화
 - 소비자보호, 소규모 과수농가, 가공업체의 수매 편의 도모
- 과실 생산량의 10%이상 수매로 가격안정 대책 수립
- 가공용 과실은 등외품 수매위주로 지속 추진

4.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예산	'98요구	'99~2004	계
○ 사업량(톤)	387,457	161,143	198,000	1,188,000	1,934,600
○ 사업비					
- 국 고					
- 국고융자	84,336	27,314	43,490	260,940	416,080
- 지방비					
- 자 담					

5. 추진일정

- 농안기금 지원개선 방안 협의(주관과) : '97. 6
- 수매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협의회 개최 : '97. 7
- 수매제도 개선방안 확정 : '97. 11

28-3. 축산물 수매 및 가격안정 방안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산지소값을 연도별 안정목표가격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양 축농가의 안정적인 축산경영 유도

나. 현황 및 문제점

- 산지 한우가격이 주요 쇠고기 수출국의 소값에 비하여 3~4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2001년 쇠고기(생우) 수입개방대비 산지소값을 국제경쟁가능가격 수준으로 년차적으로 하향안정시켜야 함

2. 추진방향 및 목표

- 연도별 소값안정목표가격을 정하여 산지소값이 목표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수매 실시
- 산지소값이 연도별 목표가격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여 쇠고기 수입개방시기에 한우산업의 안정화 유도

3. 세부추진계획

- 쇠고기 수입개방시까지 산지소값이 연도별 안정목표가격이하로 하락시 축협, 한냉(주)를 통하여 안정목표가격 수준으로 회복시까지 소 수매 실시
- 수매육은 소비자가격 인하등으로 쇠고기 소비촉진을 위하여 일부는 염가공급판매, 일부는 비축하여 산지소값 상승시 방출로 산지소값을 적정수준에서 형성되도록 유도

4.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4~'96실적	'97 예산	'98 예산요구	'99~2000	계
○ 사업량 (단위)	9,925두	-	-	-	-
○ 사업비					
- 촉발기금	90,000	130,000	100,000	300,000	610,000
- 농안기금					

5. 추진일정

- 산지소값이 안정목표가격 수준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어 '97.1.25일부터 소 수매를 실시
 - 소 수매실적(1.25~4.29) : 43,093두
- 년도별 설정한 안정목표가격이하로 하락할 경우 소 수매실시

28-5. 전국공영도매시장 정보망 구축

1. 1단계 추진계획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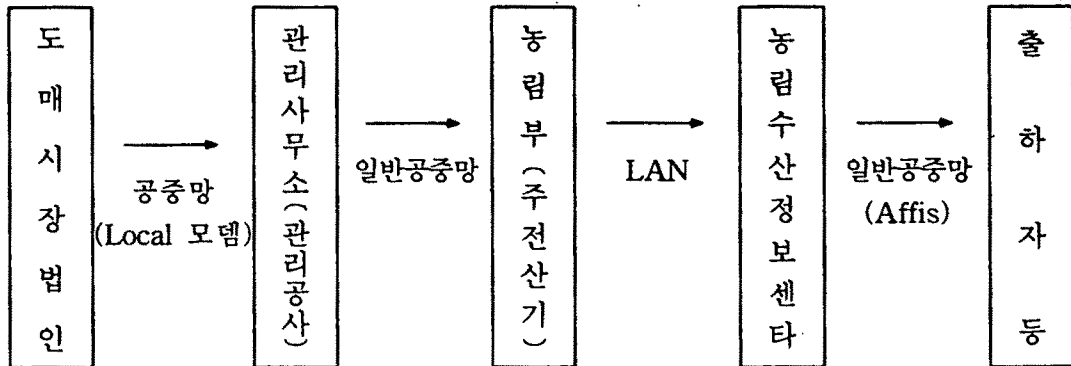
가. 1단계 추진목표 및 계획

- 공영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별로 품목별·등급별 도매가격과 거래량의 공개 강화
- 신속한 공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나. 추진성과

- 인천도매시장에 시범실시
 - '95. 10부터 인천도매시장의 시황정보를 관리사무소에서 수집, 공중정보통신망을 통해 분산하는 서비스 실시
- 전국 공영도매시장 정보망 구축 계획 수립('96.5)
 - 13개 공영도매시장간 유통 정보전산망 구축을 완료하고 출하자 등에 대해 전국적 유통정보 서비스 제공
- 프로그램 개발, 관리사무소 전산장비 구비 등 유통정보 전산망 구축 완료('96.12)
- '97. 5부터 가락시장·5대 광역시 도매시장 거래정보를 출하자 등에게 공중 정보통신망을 통해 분산
 - '97 상반기중 전체 공영도매시장 정보분산 실시

< 공영도매시장 정보망 >



○ 제공정보

- 각 도매시장 현황정보
- 각 도매시장의 법인별·품목별·등급별·거래단위별 경락가격 및 거래량

2. 문제점 및 보완과제

○ 해당없음

3. 향후추진계획

- 신설도매시장은 개장시부터 거래정보 수집·분산 추진
 - 현재 개발된 프로그램을 공동사용
- 농안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 개정
 - 정보망 구축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보고할 정보를 확대하고 전산망을 통해 보고할 수 있도록 개정

4. 투자계획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농안법 시행규칙 개정 : '97년 5월

29. 출하예약제 도입

1. 추진배경

가. 추진목적

- 도매시장 출하시에 사전예약을 통한 출하물량 조정 및 출하자의 수취가격 안정 도모

나. 현황 및 문제점

- 도매시장에 출하되는 일부 품목의 경우 도매시장법인별로 일간 출하량의 변동폭이 크고, 출하된 후 저장도 곤란하여 일간 가격진폭이 큼
 - 주간·월간 가격차는 생산조건이 결정하는 것으로 불가피하나 일간 가격차는 우천 등 기상변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보의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 함
- 경매사들이 출하동향을 조사하여 출하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출하자수가 많고, 출하약속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아 경매사도 출하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음
 - 전날의 출하량 및 가격정보는 당일의 출하결정에는 큰 도움이 못되며, 오히려 가격진폭을 크게 할 수도 있음

< 외국 도매시장의 예 >

- 대만의 대북 도매시장
 - 모든 출하자는 도매시장에 등록하고, 도매시장에서는 출하자별로 코드부여

- 매월 15일까지 다음달 출하계획을 받아 출하자 별로 일별 출하량 할당
- 할당량을 이행치 않은 출하자에게는 다음달 할당량 축소 및 판매 후순위 조정
- 일 본
 - 단위농협을 통한 조직화·공동출하체계가 잘 되어 있어 단협이 도매시장법인과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해 정보 교환

2. 출하예약제의 개요

가. 출하예약제의 개념

- 출하자가 사전에(2-3일전) 도매시장법인에게 전화로 출하할 품목·수량·시기 등을 예약한 후 출하
 - 도매시장법인은 출하자의 예약시에 직전까지 예약된 물량을 알려줌
- 사전예약없이 출하할 경우에는 판매 후순위 조정, 출하장려금 미지급 등 불이익 조치
 - 도매시장법인은 수탁거부를 할 수 없으며, 단기간내에 출하 예약제의 완전 정착도 어려워 출하예약 미이행자에 대한 수탁거부는 곤란
- 예약물량이 과다하여 경락가 급락이 예상되는 경우, 타 도매시장법인 또는 타 시장에서의 출하를 권유하고, 예약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출하를 적극 권장

나. 기대효과

- 출예약을 통해 2-3일후의 출하동향에 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생산

- 출하자는 예약된 출하량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수확·출하 시기의 조절, 출하할 도매시장의 선택이 가능
- 도매시장별로 출하량이 조절되어 생산자 수취가격의 안정 및 소득제고

다. 출하예약제 도입상의 한계

- 출하자의 송장작성도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여건에서 2-3일 전의 사전예약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
 - 무·배추, 딸기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표준송장 작성율이 50~60% 수준이며, 정확성에도 한계
- 예약 미이행시 수탁거부는 곤란하므로 예약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결여
 - 출하장려금 차등지급으로 예약을 강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법인의 적정취급물량을 초과한 경우도 예약하고 출하하면 가격안정이라는 효과는 기대하기 곤란
 - 가격진폭이 큰 품목일수록 소량출하자가 많으며, 이들은 자신의 소량출하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것임

3. 추진방안

(1) 기본방향

-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예약제 정착이 용이한 품목부터 우선 실시
 - 초기 1-2개월은 예약 미이행시에도 장려금은 동일하게 지급
 - 예약의 정착후에 장려금 미지급 등 출하예약제 본격 실시
- '97년중의 실시성과를 보아 대상 도매시장 및 품목 확대

- 출하예약제의 구체적 방안 및 품목선정 등에 관해 도매시장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추진
 - 품목선정, 법인별 적정 취급물량 결정 등은 법인이 자율로 결정
- 실시전에 도매시장법인별로 출하자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하여 혼란 방지

(2) 대상품목 선정

< 선정기준 >

- 주요품목중 출하자의 송장작성이 상대적으로 정착된 품목
 - 송장작성을 제대로 않는 경우 출하예약도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일간 가격진폭이 크면서 일일 출하자수는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
 - 출하자수는 많으나 작목반 단위 예약이 실행 가능한 품목도 고려
- 가격진폭은 상대적으로 작아도 예약제 정착이 용이한 품목도 검토

< 품목결정 방식 >

- 예약제 정착이 용이한 1개품목을 지정하여 5개 법인·공판장 (대아청과 제외)이 공동실시
- 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중 1개품목 이상을 법인자율로 선택하여 실시(공동실시 품목 포함하여 2개품목 이상)

(3) 자동전화예약 프로그램 개발

< 프로그램안 >

-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식회사(공판장)에서는 출하자의 출하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약없이 출하하면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반드시 예약하고 출하하시기 바랍니다.
A품목은 1번, B품목은 2번을 눌러 주십시오

- 출하하실 날짜를 숫자로 눌러 주십시오
- A품목은 현재 ○○○가 출하예약되었으며, 우리 ○○주식회사의 적정 취급물량은 ○○○입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 주십시오.
(직접 취급량 초과시 : A품목은 현재 ○○○가 출하예약되었으며, 우리 ○○주식회사의 적정취급물량 ○○○를 ○○초과하였으니, 예약을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을 원하시면 1번을 눌러주십시오) ⇒ 예약 결정
- 출하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를 눌러주십시오
(출하자 번호) ⇒ 번호 선택
- 예약하실 수량을 4kg박스(kg...) 단위로 눌러 주십시오 ⇒ 수량선택
-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예약 미이행시는 다음 출하시 출하장려금을 0.25%만 지급하니 예약한대로 출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검토사항
- 예약취소과정을 프로그램화할 필요

< 프로그램 개발 >

- 도매시장 법인협회에서 개발
- 개발일정
 - 5월중 법인 출하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실시방안 확정후 개발

4.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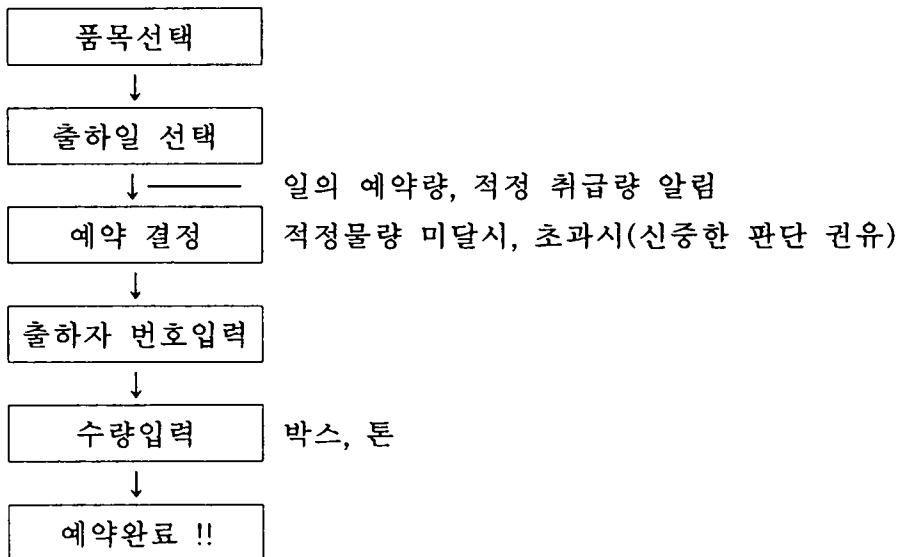
- 해당없음

5. 추진일정

- 관계자 의견수렴하여 품목 및 구체적 시행방안 결정 : 5월
 - 관리공사, 도매시장법인(농협), 유통공사(시장조사부), 출하자대표 등
- 프로그램 개발 : 6월
- 교육 및 홍보 : 7월
 - 실시방안 확정 후 도매시장법인별로 출하자 대상 교육
 - 출하예약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출하자에 배부(법인협회)

<참 고> 예약프로그램 순서도

○ 순서도



30. 농안기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1. 추진배경

가. 현 황

- 조 성 : '96년말 1조 8,236억원
 - '90년대 이후 수입비축사업의 증가에 따라 조성규모 지속적 증대
 - '68~'89 : 5,060 억원
 - '90~'96 : 1조 3,136 억원
- '97 운용계획 : 1조 7,900 억원
 - 가격안정사업 : 9,955억원 (56%)
 - 유통개선사업 : 7,444억원 (42%)
 - 차입금상환등 : 501억원 (2%)

나. 문제점

- 시장개방, 유통업발전 등 변화된 여건과 괴리된 운용으로 사업의 실효성 저하
 - 정부주도로 생산자조직, 지자체나 민간업체의 참여 미흡
 -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유통체계변화에 대한 대응태세 부족
 - 현행 기능별 지원체제가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사업간 혼재
- 사업관리체계가 부적합하여 운용규모에 비해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성과가 미흡하고 성과 확인도 거의 어려움
 - 소요부서별 요구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나 자금회수이외에는 효과분석이 부진하고 유사중복사업이 많아서 일선에서는 무슨 자금일지도 모르고 쓰는 경우까지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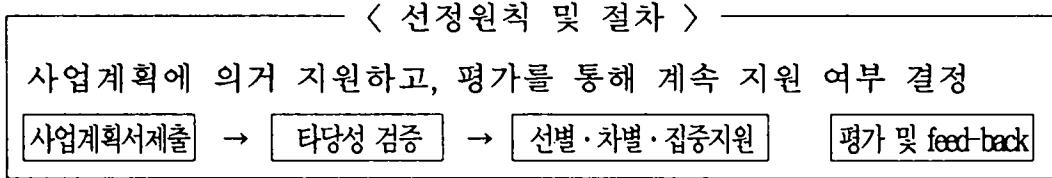
-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시장보호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가격정책과 수출입정책간 연계 부족
- 사전적 생산조정보다는 사후적 수급조절(수입·수매)에 관심
- 품목별, 분야별로 다양한 사업이 개발되어 사업간 상호 조화되지 못하여 종합적인 성과거양이 저조함
- 지나치게 다양한 사업에 “나눠먹기”식 소액분산지원되고 사후 관리 소홀로 투자효율성이 낮음.
- 사업자의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후 차등지원 및 자조프로그램에 대한 유인수단 결여
-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이 불합리하여 사업자에 불편 초래

2. 추진방향 및 기본목표

-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응
 - 산지·소비지간 유통계열화 추진, 시장자율기능강화, 새로운 사업 분야 적극 수용
- 전략부문에 대한 투자집중화 및 재원의 합리적 이용 제고
 - 생산자조직 육성, 수출진흥, 산지유통개선에 중점 지원
 - 평가를 통한 경쟁체제 구축과 벤치마킹 목표도달유도,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자조노력에 대한 matching fund.
- 지원체제 및 지원방식 변경
 - 기능별 지원 → 사업주체(대상자)별 종합지원
 - Menu 방식 채택, 선별·집중 차등지원,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증을 거쳐 대상자 선정
- 이용자 편익 증진
 - 지원조건 합리화, 장기적으로 package 방식 지원, banking loan 검토

3. 세부개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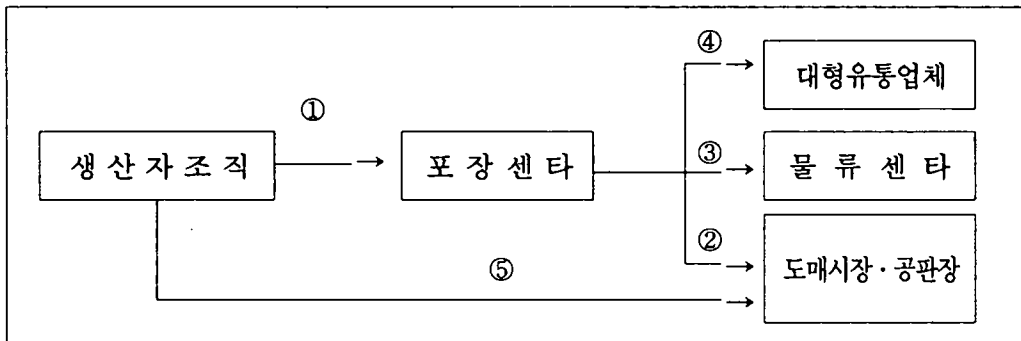
농안사업 선정 및 지원 방식 개선



-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후 사업타당성을 검증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자 선정과 평가간 연계강화 (feed back)
- 자조금 조성 등 자조프로그램 조성시 우대 지원 (matching fund)
- 지원대상을 평가, 각 발전단계에 적합한 지원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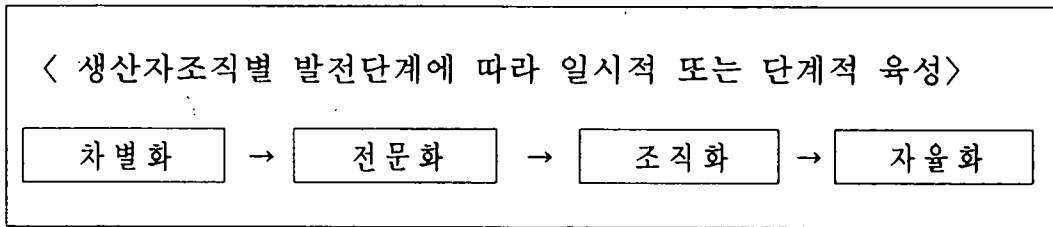
산지·소비지간 유통계열화 사업추진

- 농산물 포장센터를 중심으로 산지·소비지 유통을 일관체제로 연결 발전시켜 규격포장농산물의 대량공급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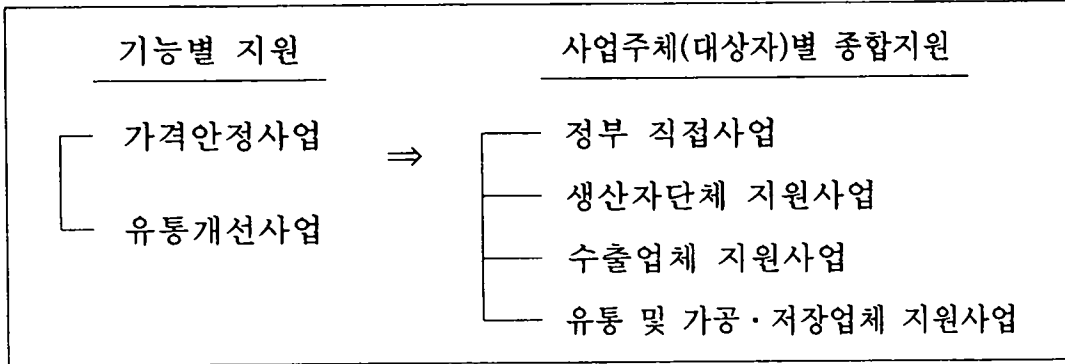
- ① 포장센터, ③ 물류센터에 매취사업자금 지원
- 규격포장된 ②의 경우 산물출하되는 ⑤의 경우보다 출하선도금 우대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산물로 출하되는 ⑤의 경우 지원취소 검토
- ④ 대형유통업체의 규격상품 구입자금 지원
- 하역개선, 물류표준화 등 물류비용절감 대책 지원

□ 생산자조직 (사업추진체) 집중 육성 지원



- 단위조직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이를 품목별로 전국조직화 유도
- 품목별 생산자 조직 평가후 차별지원하는 인센티브제 도입
 - 「최우수, 우수, 일반조직」으로 분류, 벤치마킹 목표달성토록 각 발전 단계에 상응한 차별 시책 추진
- 자조금 조성 등 자구노력하는 조직에 matching fund지원
- 생산자 조직 지원자금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집중 지원
- 민간의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확대 강화지원 및 생산조직을 생산
 - 유통 중심체(사업추진체)로 육성하여 정부수매사업 위탁 실시
-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한 단계별 수급 조절체계 구축에 집중 지원
 - 품목별로 농업관측에서부터 생산조정, 출하조절, 수매비축, 소비촉진, 수출 및 포장개선 등 유통개선 사업에 이르기까지 전 사업을 패키지화
 - 관측단계별로 적합한 세부조치계획을 정형화하여 적기실행으로 가격 및 소득안정도모
 -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농안기금)지원 적극 모색
 - 생산자조직의 자조금 등 자구적 노력에 대응하여 농안기금 제공
 - 농업관측 및 조직의 기본운영에 필요한 일부 경비는 보조지원
- 사업자에게 편리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도록 사업정비
 - 사업추진주체를 정부, 생산자조직, 수출업체, 유통 및 저장·가공업체로 구분하여 대상자별 특성에 맞게 지원

- 각 사업별 평가, 사후관리, 종합적 발전대책 수립,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에 용이함



- 대출기간, 금리등 지원조건도 사업자에게 편리하도록 조정
- 유사중복사업 통합·정비
 - 생산자(단체)관련사업을 생산자조직 육성사업으로 통합
 - 가공용 구매지원사업과 산지가공산업 육성사업 통합
 - 수출진흥사업 통폐합 및 품목별 수출실적에 따라 지원
- 차등지원 통한 경쟁체제 도입 및 평가·지도사업 강화
 - 기금을 지원하는 부문간 또는 부문내 사업간 추진여건과 실적, 사업 관리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 * 평가결과 우수조직에 대해 실질적인 우대방안마련, 차별지원
 - 사업현장에 대한 점검과 지도를 강화로 농안사업 성과거양

4. 추진일정

- 생산자조직 평가 : '97. 6
 - 우수조직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방안 마련, 농안기금 운용계획에 반영
- 정책심의회 상정, 농안기금운용제도 개선 방안 확정 : '97. 7월중

- (안) 확정후 후속초지 완료 ('97. 8~9)
 - 재경원과 협의
 - 농안사업실시요령 개정
 - 사업시행지침 변경 등
- 생산자조직 자조금 조성지원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정비 ('97. 하반기)
 - 자조금 지원대상품목 확대 및 지원기준 상향조정
 - 농안법 또는 농발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평가·지도사업 강화 : 년차별 계획에 따라 시행
 - '97년도 수출진흥관련사업
 - '98년도 공동규격출하사업

< 별 표 >

'97 농수산물가격 안정기금 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96계획 (A)	'97계획 (B)	증△감 (B-A)
1. 가격안정사업	935,912	995,462 (55.6)	59,550
○ 정부가격안정	484,581	488,721 (27.3)	4,140
- 정부수매사업	227,529	231,625 (12.9)	4,096
- 정부수입사업	218,452	222,096 (12.4)	3,644
- 산지폐기사업	8,600	10,111 (0.6)	1,400
- 긴급가격안정사업	30,000	25,000 (1.4)	△ 5,000
○ 민간가격안정	451,331	506,741 (28.3)	55,410
- 업체수매지원	334,169	353,950 (19.8)	19,781
- 생산자출하조절	37,162	42,791 (2.4)	5,629
- 채소류계약사업	80,000	110,000 (6.1)	30,000
2. 유통개선사업	728,792	744,410 (41.6)	15,618
○ 농수산물유통시설	82,100	81,260 (4.5)	△ 840
○ 산지유통개선	399,000	412,730 (23.1)	13,730
○ 소비자유통개선	157,500	189,820 (10.6)	2,320
○ 수출사업지원	51,000	51,000 (2.9)	-
○ 조사·연구·홍보 및 교육훈련	9,192	9,600 (0.5)	418
3. 차입금상환 등	45,296	50,128 (2.8)	4,832
계	1,710,000	1,790,000 (100.0)	80,000

※ 수산관련 자금 : ('96) 3,257억원(19%)→('97) 3,355억원 (19%)

Ⅲ. 2단계대책 투융자계획 (안)

1. 투융자 사업

가. 총괄 (사업별, 자원별, 부류별)

나. 세부사업별

2. 가격안정사업 (농안기금)

여 백

1. 투 용 자

가. 총 관

(1) 사 업 별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합 계(30개 사업)	2,288,596	909,029	860,274	4,181,791	8,239,690
○ 국고보조	702,283	306,464	240,987	1,074,544	2,324,278
○ 국고융자	587,985	219,330	284,248	1,292,958	2,384,521
○ 지 방 비	471,607	190,196	149,052	389,620	1,200,475
○ 자 부 담	526,721	193,039	185,987	1,424,669	2,330,416
<산지유통개선> : 14개 사업	1,220,430	329,484	383,470	1,467,529	3,400,913
○ 국고보조	348,533	90,354	84,755	283,233	806,875
○ 국고융자	373,812	134,120	200,336	759,710	1,467,978
○ 지 방 비	157,669	36,204	27,036	131,241	352,150
○ 자 부 담	340,416	68,806	71,343	293,345	773,910
1. 생산유통지원사업 중유통부문사업(6개)	348,440	112,786	129,812	742,229	1,333,267
○ 국고보조	80,730	22,726	19,709	113,753	236,918
○ 국고융자	120,126	44,889	70,967	389,507	625,489
○ 지 방 비	75,624	22,614	19,596	113,641	231,475
○ 자 부 담	71,960	22,557	19,540	125,328	239,385
2. 산지유통시설(8개)	871,990	216,698	253,658	725,300	2,067,646
○ 국고보조	267,803	67,628	65,046	169,480	569,957
○ 국고융자	253,686	89,231	129,369	370,203	842,489
○ 지 방 비	82,045	13,590	7,440	17,600	120,675
○ 자 부 담	268,456	46,249	51,803	168,017	534,525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소비지유통개선> : 5개사업	821,515	469,933	308,868	1,882,163	3,482,479
○ 국고보조	251,652	184,246	99,696	516,292	1,051,886
○ 국고융자	209,836	75,882	76,752	475,248	837,718
○ 지방비	289,358	136,145	92,216	124,863	642,582
○ 자부담	70,669	73,660	40,204	765,760	950,293
<물류비 절감> : 5개 사업	176,413	99,710	150,400	739,829	1,166,352
○ 국고보조	31,910	22,065	40,260	185,566	279,801
○ 국고융자	4,337	9,328	7,160	58,000	78,825
○ 지방비	24,580	17,847	29,800	133,516	205,743
○ 자부담	115,586	50,470	73,180	362,747	601,983
<품질 차별화> : 6개사업	70,238	9,902	17,536	92,270	189,946
○ 국고보조	70,188	9,799	16,276	89,453	185,716
○ 국고융자	-	-	-	-	-
○ 지방비	-	-	-	-	-
○ 자부담	50	103	1,260	2,817	4,230

(2) 재 원 별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합 계(30개 사업)	2,288,596	909,029	860,274	4,181,791	8,239,690
○ 국고보조	702,283	306,464	240,987	1,074,544	2,324,278
○ 국고용자	587,985	219,330	284,248	1,292,958	2,384,521
○ 지 방 비	471,607	190,196	149,052	389,620	1,200,475
○ 자 부 담	526,721	193,039	185,987	1,424,669	2,330,416
<농특회계> :23개사업	2,092,589	834,840	736,194	3,960,423	7,624,046
○ 국고보조	695,250	301,974	235,428	1,065,727	2,298,379
○ 국고용자	420,206	163,601	182,888	1,106,855	1,873,550
○ 지 방 비	471,082	188,770	147,266	388,955	1,196,073
○ 자 부 담	506,051	180,495	170,612	1,398,886	2,256,044
<농안기금> :2개사업	350	980	350	2,100	3,780
○ 국고보조	350	665	350	2,100	3,465
○ 자 부 담	-	315	-	-	315
<축발기금> :6개사업	195,657	73,209	123,730	219,268	611,864
○ 국고보조	6,683	3,825	5,209	6,717	22,434
○ 국고용자	167,779	55,729	101,360	186,103	510,971
○ 지 방 비	525	1,426	1,786	665	4,402
○ 자 부 담	20,670	12,229	15,375	25,783	74,057

(3) 부 류 별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합 계(30개 사업)	2,288,596	909,029	860,274	4,181,791	8,239,690
○ 국고보조	702,283	306,464	240,987	1,074,544	2,324,278
○ 국고융자	587,985	219,330	284,248	1,292,958	2,384,521
○ 지 방 비	471,607	190,196	149,052	389,620	1,200,475
○ 자 부 담	526,721	193,039	185,987	1,424,669	2,330,416
1. 일반유통	1,487,037	651,434	493,232	2,835,944	5,467,647
○ 국고보조	541,990	251,483	170,214	805,954	1,769,641
○ 국고융자	239,064	90,852	67,966	561,348	959,230
○ 지 방 비	394,618	165,316	126,830	271,954	958,718
○ 자 부 담	311,365	143,783	128,222	1,196,688	1,780,058
2. 원예특작	352,640	116,986	134,012	759,029	1,362,667
○ 국고보조	82,410	24,406	21,389	120,473	248,678
○ 국고융자	120,966	45,729	71,807	392,867	631,369
○ 지 방 비	76,464	23,454	20,436	117,001	237,355
○ 자 부 담	72,800	23,397	20,380	128,688	245,265
3. 양곡부문	253,262	67,400	109,300	367,550	797,512
○ 국고보조	71,200	26,750	44,175	141,400	283,525
○ 국고융자	60,176	27,020	43,115	152,640	282,951
○ 자 부 담	121,886	13,630	22,010	73,510	231,036
4. 축산부문	195,657	73,209	123,730	219,268	611,864
○ 국고보조	6,683	3,825	5,209	6,717	22,434
○ 국고융자	167,779	55,729	101,360	186,103	510,971
○ 지 방 비	525	1,426	1,786	665	4,402
○ 자 부 담	20,670	12,229	15,375	25,783	74,057

나. 세 부 사 업 별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합 계	2,288,596	909,029	860,274	4,181,791	8,239,690
<산지유통개선>	1,220,430	329,484	383,470	1,467,529	3,400,913
1. 생산유통지원사업중 유통부분지원(※)	348,440	112,786	129,812	742,229	1,333,267
□ 과 실					
○ 사업량(개소)	300	150	150	300	900
○ 사업비	126,058	55,614	55,612	113,777	351,061
-국고보조	29,997	11,123	5,561	11,378	58,059
-국고융자	42,665	22,245	38,929	79,643	183,482
-지 방 비	25,959	11,123	5,561	11,378	54,021
-자 부 담	27,437	11,123	5,561	11,378	55,499
□ 시설채소					
○ 사업량(개소)	130	40	35	325	530
○ 사업비	109,038	20,130	31,035	284,336	444,539
-국고보조	27,260	4,026	6,207	56,867	94,360
-국고융자	32,711	8,052	12,414	113,735	166,912
-지 방 비	27,260	4,026	6,207	56,867	94,360
-자 부 담	21,807	4,026	6,207	56,867	88,907
□ 양념채소					
○ 사업량(개소)	30	10	8	122	170
○ 사업비	24,511	8,170	6,537	99,675	138,893
-국고보조	6,128	1,634	654	-	8,416
-국고융자	7,353	3,268	4,575	89,707	104,903
-지 방 비	6,128	1,634	654	-	8,416
-자 부 담	4,902	1,634	654	9,968	17,158

※ 생산유통지원사업중 유통부분지원을 25%수준으로 가정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 고령지 채소					
○ 사업량(개소)	60	29	20	171	280
○ 사업비	7,395	3,572	2,638	18,304	31,909
-국고보조	2,375	883	489	281	4,028
-국고융자	1,868	1,204	1,453	15,967	20,492
-지방비	1,790	771	376	169	3,106
-자부담	1,362	714	320	1,887	4,283
□ 화 회					
○ 사업량(개소)	45	15	20	125	205
○ 사업비	43,931	8,690	17,380	126,480	196,481
-국고보조	11,345	1,738	3,476	25,296	41,855
-국고융자	13,034	3,476	6,952	50,592	74,054
-지방비	10,862	1,738	3,476	25,296	41,372
-자부담	8,690	1,738	3,476	25,296	39,200
□ 특용작물					
○ 사업량(개소)	218	139	139	834	1,339
○ 사업비	37,507	16,610	16,610	99,657	170,384
-국고보조	3,625	3,322	3,322	19,931	30,200
-국고융자	22,495	6,644	6,644	39,863	75,646
-지방비	3,625	3,322	3,322	19,931	30,200
-자부담	7,762	3,322	3,322	19,932	34,338
2. 산지유통시설	871,990	216,698	253,658	725,300	2,067,646
□ 간이집하장					
○ 사업량(개소)	3,032	200	기존시설	-	3,232
○ 사업비	176,013	31,975	5,000	-	212,988
-국고보조	70,405	12,790	1,500	-	84,695
-국고융자	-	4,000	1,500	-	5,500
-지방비	70,405	8,790	1,000	-	80,195
-자부담	35,203	6,395	1,000	-	42,598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 포장센터					
○ 사업량(개소)	49	29	45	57	180
○ 사업비	36,000	19,800	33,000	86,200	175,000
-국고보조	14,400	7,920	8,400	21,360	52,080
-국고융자	-	3,960	11,900	31,860	47,720
-지방비	10,800	3,960	5,600	14,240	34,600
-자부담	10,800	3,960	7,100	18,740	40,600
□ 산지가공공장	('89~'96)				
○ 사업량(개소)	1,231	134	101	534	2,000
○ 사업비	370,838	60,880	42,947	220,200	694,865
-국고보조	110,118	18,488	9,291	-	137,897
-국고융자	168,928	29,796	23,885	154,200	376,809
-자부담	91,792	12,596	9,771	66,000	180,159
□ 인삼종합처리장					
○ 사업량(개소)	2	2	2	8	14
○ 사업비	4,200	4,200	4,200	16,800	29,400
-국고보조	1,680	1,680	1,680	6,720	11,760
-국고융자	840	840	840	3,360	5,880
-지방비	840	840	840	3,360	5,880
-자부담	840	840	840	3,360	5,880
□ 미곡종합처리장	243,344	65,900	107,800	340,400	757,444
(1) 신규설치					
○ 사업량(개소)	138	33	50	97	318
○ 사업비	224,719	43,500	70,000	200,000	538,219
-국고보조	64,200	18,000	30,000	100,000	212,200
-국고융자	50,070	16,800	26,000	60,000	152,870
-자부담	110,449	8,700	14,000	40,000	173,149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2) 기존시설 증설					
○ 사업량(개소)	47	64	90	218	419
○ 사업비	18,625	22,400	37,800	140,400	219,225
-국고보조	7,000	8,750	14,175	41,400	71,325
-국고융자	5,425	9,170	16,065	70,920	101,580
-자 부 담	6,200	4,480	7,560	28,080	46,320
□ 임도정공장 시설대체					
○ 사업량(개소)	50	10	10	181	251
○ 사업비	9,918	1,500	1,500	27,150	40,068
-국고융자	4,681	1,050	1,050	21,720	28,501
-자 부 담	5,237	450	450	5,430	11,567
□ 축산물종합처리장					
○ 사업량(개소)	5	12	12	12	12
○ 사업비(축발)	31,677	27,067	53,835	29,174	141,753
-국고융자	23,742	19,851	44,365	24,379	112,337
-자 부 담	7,935	7,216	9,470	4,795	29,416
□ 위생도축시설 확충					
○ 사업량(개소)	-	40	40	40	120
○ 사업비(축발)	-	5,376	5,376	5,376	16,128
-국고융자	-	3,764	3,764	3,764	11,292
-자 부 담	-	1,612	1,612	1,612	4,836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소비자유통개선>	821,515	469,933	308,868	1,882,163	3,482,479
□ 도매시장 건설					
○ 사업량(개소)	15	16	12	14	16
○ 사업비	463,683	222,920	151,287	207,182	1,045,072
-국고보조	183,287	90,749	64,378	83,438	421,852
-지방비	280,396	132,171	86,909	123,744	623,220
□ 공판장 건설					
○ 사업량(개소)	13	7	11	3	23
○ 사업비	46,779	12,740	17,604	2,269	79,392
-국고보조	17,264	5,096	7,041	907	30,308
-국고융자	8,753	2,548	3,521	454	15,276
-지방비	8,437	2,548	3,521	454	14,960
-자부담	12,325	2,548	3,521	454	18,848
□ 물류센타 건설					
○ 사업량(개소)	8	10	10	16	16
○ 사업비	150,268	193,953	76,375	1,494,240	1,914,836
-국고보조	47,563	84,941	23,810	430,286	586,600
-국고융자	57,046	41,220	20,000	316,834	435,100
-자부담	45,659	67,792	32,565	747,120	893,136
□ 축산물공판장건설					
○ 사업량(개소)	4	3	2	2	11
○ 사업비(축발)	7,029	7,129	12,933	7,322	34,413
-국고보조	3,538	3,460	4,467	1,661	13,126
-국고융자	892	1,490	4,586	3,465	10,433
-지방비	525	1,426	1,786	665	4,402
-자부담	2,074	753	2,094	1,531	6,452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 축산물가공판매시설					
○ 사업량(개소)	884	255	276	983	2,398
○ 사업비(축발)	153,756	33,191	50,669	171,150	408,766
-국고용자	143,145	30,624	48,645	154,495	376,909
-자 부 담	10,611	2,567	2,024	16,655	31,857
(1) 가공·직판장 설치					
○ 사업량(개소)	28	7	-	28	63
○ 사업비(축발)	16,063	4,500	-	22,500	43,063
-국고용자	11,244	3,150	-	15,750	30,144
-자 부 담	4,819	1,350	-	6,750	12,919
(2) 계관가공시설					
○ 사업량(개소)	5	1	4	12	22
○ 사업비(축발)	15,592	4,056	6,169	29,650	55,467
-국고용자	9,800	2,839	4,145	19,745	36,529
-자 부 담	5,792	1,217	2,024	9,905	18,938
(3) 한우전문판매점설치					
○ 사업량(개소)	450	80	90	85	705
○ 사업비(축발)	108,000	14,000	22,500	21,500	166,000
-국고용자	108,000	14,000	22,500	21,500	166,000
(4) 냉장육전문판매점 시설개선					
○ 사업량(개소)	401	167	182	858	1,608
○ 사업비(축발)	14,101	10,635	22,000	97,500	144,236
-국고용자	14,101	10,635	22,000	97,500	144,236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물류비 절감>	176,413	99,710	150,400	739,829	1,166,352
□ 산지포장개선(골판지)					
○ 사업량(천매)	-	31,500	90,000	125,000	246,500
○ 사업비	-	18,900	54,000	75,000	147,900
-국고보조	-	6,300	18,000	25,000	49,300
-지방비	-	4,725	13,500	18,750	36,975
-자부담	-	7,875	22,500	31,250	61,625
□ 규격출하사업					
○ 사업량(백만매)	364	135	164	1,026	1,689
○ 사업비	161,312	65,610	78,500	498,829	804,251
-국고보조	24,360	13,122	15,700	99,766	152,948
-지방비	24,580	13,122	15,700	99,766	153,168
-자부담	112,372	39,366	47,100	299,297	498,135
□ 가공제품 포장개선					
○ 사업량(개소)	672	291	300	1,800	3,064
○ 사업비	15,101	5,820	6,000	36,000	62,921
-국고보조	7,550	2,328	1,800	10,800	22,478
-국고융자	4,337	2,328	3,000	18,000	27,665
-자부담	3,214	1,164	1,200	7,200	12,778
□ 물류장비구입자금					
○ 사업량					
○ 사업비	-	8,750	11,900	130,000	150,650
-국고보조	-	-	4,760	50,000	54,760
-국고융자	-	7,000	4,160	40,000	51,160
-지방비	-	-	600	15,000	15,600
-자부담	-	1,750	2,380	25,000	29,130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input type="checkbox"/> ULS규격에 맞게 차량개조					
○ 사업량(대)	-	900	-	-	900
○ 사업비	-	630	-	-	630
-국고보조(농안)	-	315	-	-	315
-자 부 담	-	315	-	-	315
<품질차별화>	70,238	9,902	17,536	92,270	189,946
<input type="checkbox"/> 품목별안전성조사					
○사업량(건)					
○사업비	63,500	7,100	12,100	53,200	135,900
-국고보조	63,500	7,100	12,100	53,200	135,900
<input type="checkbox"/> 잔류농약속성검사제					
○ 사업량(대)	-	2	200	300	502
○ 사업비	-	22	2,211	3,316	5,549
-국고보조	-	-	1,126	1,689	2,815
-자 부 담	-	22	1,085	1,627	2,734
<input type="checkbox"/> 식육처리기술훈련원					
○ 사업량(명)	480	180	240	1,440	2,340
○ 사업비(축발)	3,195	446	875	5,940	10,456
-국고보조	3,145	365	700	4,750	8,960
-자 부 담	50	81	175	1,190	1,496
<input type="checkbox"/> 품질인증품					
○ 사업량(톤)	222,700	135,000	170,000	1,000,000	1,527,700
(70품목)		(80)	(85)	(100)	(100)
○ 사업비	2,379	1,317	758	18,408	22,862
-국고보조	2,379	1,317	758	18,408	22,862

(단위:백만원)

구 분	'94~'96 실적	'97예산	'98예산 요구	'99~2004	계 ('94~2004)
<input type="checkbox"/> 원산지표시					
○ 사업비	1,164	1,017	1,550	11,100	14,831
-국고보조(농특)	814	667	1,200	9,000	11,681
-국고보조(농안)	350	350	350	2,100	3,150
<input type="checkbox"/> 식육구분판매제					
○사업량(명)	-	-	100	100	100
○사업비(축발)	-	-	42	306	348
-국고보조	-	-	42	306	3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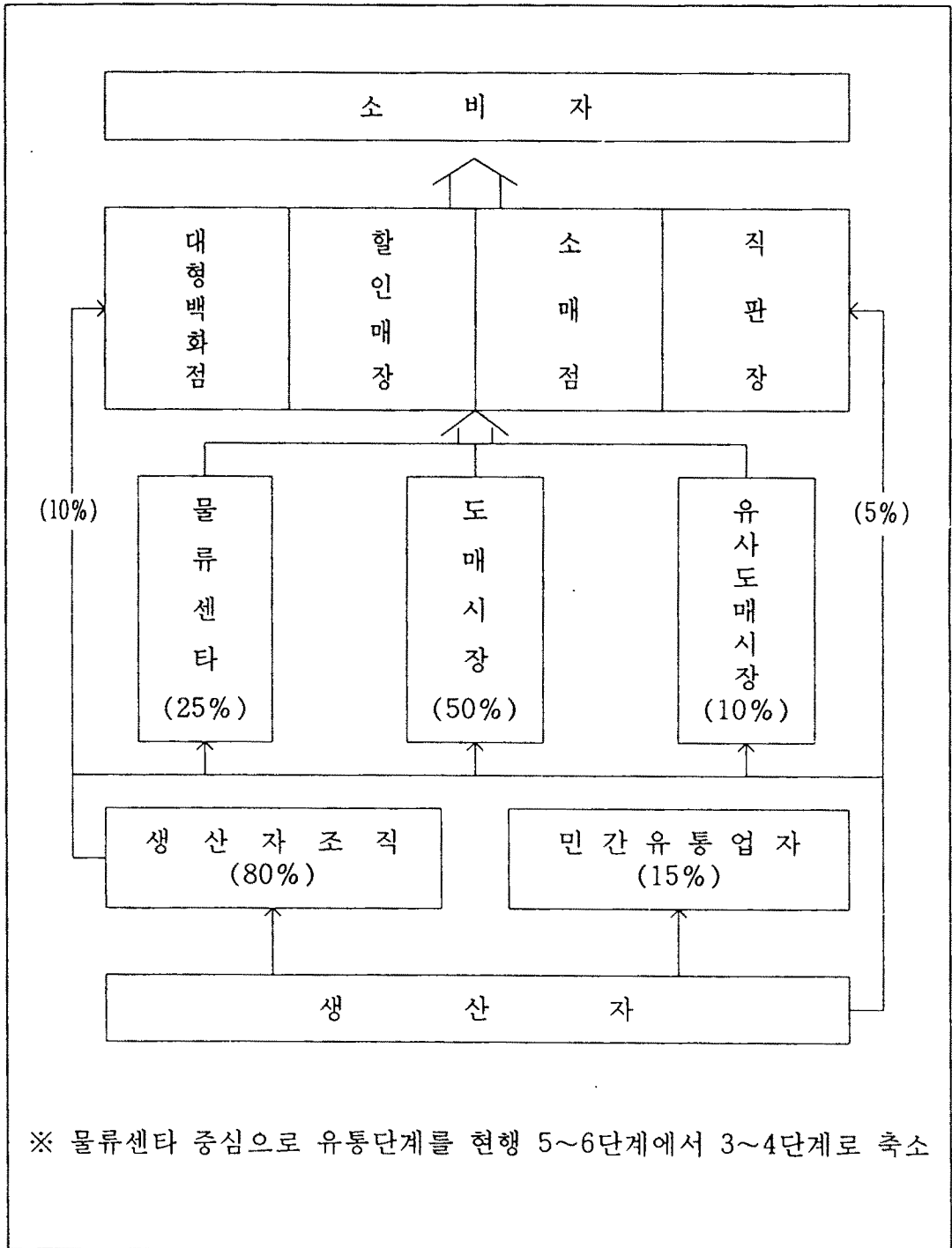
2. 가격안정사업(농안기금)

(단위:억원)

구 분 \ 년 도	'97	2001	2004	비 고
〈조 성〉				
○ 전기이월	18,236	27,919	37,590	
○ 운용수익	2,265	3,181	3,887	
- 비축사업	2,221	2,922	3,429	
- 용자사업	358	571	769	
- 기타수입	180	220	250	
- 사업비용	△494	△532	△561	
○ 재특상환	△190	△190	△200	
합 계	20,311	30,910	41,277	
〈운 용〉				
○ 가격안정사업	9,955	15,128	20,202	
- 정부가격안정사업	4,887	7,426	9,917	
- 민간가격안정사업	5,068	7,702	10,285	
○ 유통개선사업	7,444	11,312	15,106	
- 유통시설확충및개선	812	1,234	1,648	
- 산지및소비자유통개선	6,026	9,157	12,228	
- 유통조성	606	921	1,230	
○ 기 타	501	761	1,016	
- 사업조성	172	261	349	
- 차입금상환	329	500	667	
합 계	17,900	27,201	36,324	

※ 자료 : 향후('97~2004)농안기금 조성전망('97, 농수산물유통공사)

IV. 2004년 농산물유통모습



유통경로별 거래량 추이(축산·양곡제외)

	1,300만톤	1,400만톤	1700만톤	1,950만톤
	도매시장 (43%)	도매시장	도매시장	도매시장 (52%)
		물류센터	물류센터	물류센터 (23%)
	유사도매시장 (52%)	유사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유사도매시장 (10%)
	직거래(5%)	직 거래	직 거래	직 거래 (15%)
	'95	'98	2001	2004
도매시장	5,594 (42.5)	5,826	9,697	10,167(51.8)
- 공 영	4,119 (31.3)	4,483	8,756	9,226(47.1)
- 법 정	456 (3.5)	329	113	113(0.6)
- 공판장	1,019 (7.7)	1,014	828	828(4.2)
물류센터	- (-)	908	2,445	4,533(23.1)
- 정부지원	- (-)	454	1,723	3,194(16.3)
- 자 체	- (-)	454	722	1,339 (6.8)
유사도매시장	6,926 (51.5)	6,016	2,759	1,960 (10.0)
직 거래	657 (5.0)	1,342	2,032	2,940 (15.0)
총 거래량	13,177 (100.0)	14,092	16,933	19,600(100)

1. 2004년 농산물 물동량 전망

- '95년 농산물 순물동량(수입농산물 포함)은 국가전체 물동량의 3.7% 수준인 37백만톤
 - 국가 순물동량 : 1,015,213천톤 (교통개발연구원)
 - 농산물 순물동량 : 37,404천톤
- 2004년 농산물 순물동량은 채소,과실, 축산물유통량 증가로 '96년에 비해 16.5% 증가한 41백만톤으로 전망

(단위 : 천톤)

구분/년도	'95	'96	'98	2001	2004
총 공급량	39,477	36,886	38,109	40,498	42,903
채소류	10,864	10,335	11,043	12,243	13,773
과실류	2,473	2,384	2,582	2,776	2,955
서 류	897	1,068	835	807	792
축산물	4,885	5,415	5,509	6,010	6,500
양곡류	20,358	17,684	18,140	18,662	18,883
총 유통량	37,404	34,986	36,163	38,463	40,772
채소류	10,060	9,570	10,226	11,337	12,754
과실류	2,305	2,231	2,437	2,654	2,860
서 류	814	970	758	733	719
축산물	4,885	5,415	5,509	6,010	6,500
양곡류	19,340	16,800	17,233	17,729	17,939

- 1) 상품화율 : 채소류 92.6%, 과실류 93.2%(매년 0.4%p씩 증가), 서류 90.8%, 축산물 100%, 양곡류 95%
- 2) 국내산 축산물은 생육기준, 수입산 축산물은 지육기준

2. 유통경로별 거래량 전망 (축산·양곡제외)

- 2004년 34개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되어 적정취급량을 거래할 경우, 법정도매시장·공판장을 포함하여 도매시장 경유량은 전체 거래량의 52% 수준인 1,000만톤 전망
 - 2004년 16개 정부지원 물류센타 경유량은 320만톤, 민간 자체 물류센타까지 포함시 23%인 450만톤 수준
- ⇒ 2004년 총거래량 1,960만톤 중 도매시장 1,000만톤, 물류센타 450만톤을 취급하여 약 75%를 차지하고, 25%는 유사도매시장·직거래로 유통

(천톤, %)

	'95	'96	'98	2001	2004
도매시장	5,594 (42.5)	5,674	5,826	9,697	10,167(51.9)
- 공 영	4,119 (31.3)	4,184	4,483	8,756	9,226(47.1)
- 법 정	456 (3.5)	455	329	113	113(0.6)
- 공판장	1,019 (7.7)	1,035	1,014	828	828(4.2)
물류센타	- (-)	76	908	2,445	4,533(23.1)
- 정부지원	- (-)	-	454	1,723	3,194(16.3)
- 자 체	- (-)	76	454	722	1,339(6.8)
유사도매시장	6,928 (52.5)	6,255	6,016	2,759	1,960(10.0)
직 거 래	657 (5.0)	766	1,342	2,032	2,940(15.0)
총 거래량	13,179 (100.0)	12,771	14,092	16,933	19,600(100)

가. 거래량 전망

- 2004년 청과류 유통량(생산량 x 상품화율)은 16,333천톤 전망
 - 상품화율('95) : 채소 92.6%, 과실 93.2%, 서류 90.8%
 - 상품화율중 채소,서류는 불변, 과실은 매년 0.4%P씩 증가
- 도매시장, 물류센타에 경유된 물량이 타 도매시장이나 물류센타에 전송거래되어 2004년 실제 거래물량은 유통량의 1.2배 수준인 19,600천톤으로 전망
 - 일본 오다(동경) 시장의 경우, 전체 거래량의 35%가 도매시장간 전송물량
 - 물류센타 개장에 따라 전송비율 증가: ('98)5% → (2001)15% → (2004) 20% 수준

(천톤)

	'90	'95	'96	'98	2001	2004
총공급량 1/	11,529	14,234	13,787	14,460	15,826	17,520
- 채소류	8,823	10,864	10,335	11,043	12,243	13,773
- 과실류	1,722	2,473	2,384	2,582	2,776	2,955
- 서류	984	897	1,068	835	807	792
총유통량 2/	10,668	13,179	12,771	13,421	14,724	16,333
- 채소류	8,170	10,060	9,570	10,226	11,337	12,754
- 과실류	1,605	2,305	2,231	2,437	2,654	2,860
- 서류	893	814	970	758	733	719
총 거래량 3/	10,668	13,179	12,771	14,092	16,933	19,600

- 1/ 총공급량 = 생산량 + 수입 - 수출
- 2/ 총유통량 = 국내총공급량 × 상품화율
- 3/ 총거래량 = 총유통량 × (1+전송비율)

나. 유통시설별 적정 취급물량 추정

- 2004년 도매시장적정 취급량은 1,000만톤 수준 전망
 - 34개 공영도매시장 거래량은 920만톤 (302천평 x 30.5톤/평)
 - * 일본의 오다(동경), 북부시장(나고야)의 坪당 초과취급량(30.5톤)
 - 법정도매시장과 공판장은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되어 2004년 거래량은 1,475천톤에서 942천톤 으로 감소
 - 6개 법정도매시장취급량 113천톤 (10.8천평 x 10.5톤/평)
 - 40개 공판장취급량 828천톤 (40.4천평 x 20.5톤/평)
- 정부지원 물류센타 16개소 적정취급량은 2004년 320만톤 전망
 - 물류센타 규모 : ('98) 7,734평 → (2001) 24,254 → (2004) 40,424
 - 2004년 취급량 : 40,424평 × 79톤/연 = 3,194백만톤

(천톤)

	'90	'95	'96	'98	2001	2004
○ 도매시장	3,534	5,594	5,674	5,884	10,167	10,167
- 공영도매시장 (개소수)	2,051 (6)	4,119 (13)	4,184 (14)	4,541 (19)	9,226 (34)	9,226 (34)
- 법 정 (개소수)	589 (31)	456 (19)	455 (19)	329 (15)	113 (6)	113 (6)
- 공판장 (개소수)	894 (37)	1,019 (51)	1,035 (50)	1,014 (49)	828 (40)	828 (40)
○ 물류센타 (개소수)	- (-)	- (-)	- (-)	611 (3)	1,916 (9)	3,194 (16)
제도권시장계	3,534	5,594	5,674	6,495	12,083	13,361

도매시장 취급량 추정

시장명	규 모 (평)			취급물량 (천톤)		
	부 지	건 물	청과물동 (트럭판매동 양념동포함)	'98	2001	2004
	천평					
가락동	164.3	76.4	41.0	1,251	1,251	1,251
대 전	21.2	7.1	4.7	143	143	143
대 구	45.4	29.4	15.2	464	464	464
청 주	10.4	4.0	2.7	82	82	82
울 산	12.0	4.9	3.9	119	119	119
광 주	16.9	10.2	7.9	241	241	241
수 원	13.7	4.6	2.3	70	70	70
전 주	18.2	7.3	4.3	131	131	131
부 산	43.3	27.6	22.1	674	674	674
인 천	18.2	7.8	6.7	204	204	204
천 안	11.5	2.8	2.6	79	79	79
창 원	17.2	8.8	6.7	204	204	204
충 주	7.9	1.9	1.0	31	31	31
춘 천	9.5	4.8	2.8	85	85	85

* 취급물량 = 청과물동면적 × 30.5톤/연

시장명	규 모 (평)			취급물량 (천톤)		
	부 지 천평	건 물	청과물동 (트럭판매동 양념동포함)	'98	2001	2004
구 리	56.5	32.7	13.5	412	411	411
안 산	12.9	6.0	2.2	67	67	67
안 양	25.2	19.2	5.5	168	168	168
익 산	34.5	6.1	2.1	32(★)	64	64
부산제2	45.2	21.4	16.5	-	503	503
진 주	17.2	11.8	10.4	-	317	317
서울 서남	44.0	28.0	20.5	-	312(★)	625
광주제2	50.0	19.7	11.9	-	363	363
인천제2	31.4	17.3	17.2	-	525	525
포 향	20.0	8.0	5.7	-	174	174
원 주	16.0	6.0	3.2	-	98	98
강 룡	16.0	4.0	1.0	-	31	31
정 읍	19.7	4.0	1.7	26(★)	52	52
안 동	13.0	3.7	1.5	-	46	46
대전제2	48.0	13.4	10.5	-	320	320
고 양	40.9	20.9	17.4	-	531	531
성 남	25.5	16.7	15.5	-	473	473
순 천	20.0	7.0	5.1	-	156	156
구 미	25.0	7.7	6.9	-	210	210
마 산	25.0	12.0	10.3	-	157(★)	314
총 계			302.5	4,483	8,756	9,226

* 개장 초년도(★)는 적정취급량의 50% 수준

물류센타 취급물량 추정

	규 모 (평)			취급물량 (천톤)		
	대 지	건 물	청 과	'98	2001	2004
양 재	20,420	17,932	3,757	296,803	296,803	296,803
창 동	10,291	11,597	1,752	69,204(★)	138,408	138,408
청 주	20,000	5,559	2,225	87,887((★)	175,775	175,775
전 주	10,000	6,115	1,880	-	148,520	148,520
군 위	35,000	6,354	3,240	-	255,960	255,960
천 안	35,000	10,000	3,000	-	237,000	237,000
대 전	13,700	5,000	2,100	-	82,950(★)	165,900
김 해	20,000	7,000	2,800	-	110,600(★)	221,200
장 성	32,160	7,226	3,500	-	276,500	276,500
미착수 (6개소)	131,046	51,186	16,170	-	-	1,277,430
계	327,617	127,969	40,424	453,894	1,722,516	3,193,496

* 양재동 물류센타의 정상가동시 과실·야채류 취급량 일 900톤 연 297천톤, 평당 79톤 기준

* 개장초년도(★)는 적정취급량의 50% 수준

여 백

〈 별 첨 〉

농산물 유통개혁('94. 9) 추진상황 및 2단계대책

1. 농산물 유통개혁 1·2단계대책 총괄
2. 유통개혁 1단계대책 추진실적 평가
3. 유통개혁 1·2단계대책 사업별 비교

여 백

1. 농산물 유통개혁 1·2단계 대책총괄

가. 농산물 유통대책 1·2 단계 대책

유통개혁대책 ('94. 9)	2단계 대책 ('97.4)
● 완료 사업 : 12건	★ 신규 추진 : 43건
○ 정상 추진사업 : 32건	* 기존대책 보완반영 : 13건
△ 지연 추진사업 : 18건	▲ 1단계대책 보완반영 : 18건 (지연추진사업)
× 추진중단사업 : 5건	
계 : 22개과제 67개 사업	계 : 30개과제 74개 사업

※ 수산물 유통개혁대책 제외

나. 유통개혁 1단계대책 추진상황

< 완료사업 > : 12개 사업

- 산지유통개선 : 수집상 등록제등 포전매매제도화, 소규모유통 시설의 생산·유통시설 자금으로 지원, 농어민단체의 식품제조 가공업의 인허가제를 신고제 전환, 농협·축협 협동조합법을 개정, 농수축협의 1구역 1동일업종조합 규정삭제
- 소비지유통개선 : 농협·축협·수협의 유통자회사 설립, 무·배추 포함 전 품목의 상장거래,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제도인정, 중매인의 도매·중개만 인정, 중매인의 유효기간설정, 비포장규격품 쓰레기부담금 징수, 출하자가 희망할 경우 최저가격제 도입
- 유통정보체계 확립 : 농림수산유통정보의 DB화 및 On-Line 연결

< 정상추진사업 > : 32개 사업

- 산지유통개선(8건) : 생산자조직실태조사 및 심사분석기능강화, 우수출하조직에 유통정책사업 우선지원, 농산물간이집하장 건설, 농산물 포장센터 건설, 산지가공공장 건설,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농산물의 포장출하유도
- 유통경로 다원화(9건) : 신설도매시장의 공판장설치 우대, 유사도매시장의 거래개선 및 시설정비, 중매인의 상장애외허용, 도매시장 시설의 불법적인 점용 등에 대한 단속·통제강화, 하역비 부당징수 등 하역부조리 근절, 유통발전협회기금의 활용도 제고, 도매법인평가대상 확대 및 평가항목 내실화, 지정도매법인별 차액보전공제금 적립·손실보전, 출하자 고충처리센터 설치,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운영 제도 도입
- 소비지유통개선(5건) : 대도시에 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의 상설직판장 설치운영, 농어민장터 정기화, 대도시 등과 단협의 자매결연, 가정배달 택배제도 확대, 우편주문판매제 확대
- 품질고급화(6건) : 유기농산물·지역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정착, 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시장 차별화, 도축장시설 현대화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축장 정비, 육류도체등급제 조기정착, 부위별 차등가격제 확대, 식육 유통종사자에 대한 교육강화
- 유통정보 등(3건) : 유통전담요원 및 농어민에게 전산교육, 공영도매시장의 정보전달체제 구축, 정부미수매·방출의 시장기능 확대

< 지연추진사업 > : 18개사업

- 산지유통개선 : '97년까지 채소유통활성화자금 3,000억원 조성, 포전매매를 위한 표준계약서 사용, 주산지 경매식 집하장 공판장화
- 도매단계 : '98년까지 34개 공영도매시장 건설, '97년까지 수도권도매시장 건설완료, 도매시장 상장수수료 인하, 농수산물 물류센타 16개소 건설, 경매결과 투명성 제고, 기존·신설 시장의 도·소매기능 분리, 도매시장 평가결과의 조치·강화, 도별 도매시장 출하상담실 설치, 양곡도매시장의 양곡거래소 또는 양곡도매상으로 전환, 생산자단체의 가락동도매시장관리공사 이사회 참여
- 기 타 : 주산지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고, 광역조직으로 육성, 농업관측결과 제공으로 출하시기 조절, 단협별 유통정보 전담요원을 두고, 작목반·영농조합법인·지도소와 협조체제 강화, 도로변 직판장 운영활성화, '96년까지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

< 추진중단사업 > : 5개 사업

- 청과물종합처리장 24개소 건설 : 포장센타 기능과 유사하고, 대규모 시설로서 신청자가 없어 '96년부터 중단
- 개발제한구역내 물류센타 건설 : 물류센타는 규모가 큰 유통 시설 (1만평~3만5천평)이라는 이유로 건설교통부에서 반대
- 대규모 종합물류단지 건설 : 농림부에서 추진 주체가 불확실하여 세부 추진계획 미수립

- 농업관측협의회를 농업관측위원회로 개편 : 농업관측위원회와 사무국 설치, 농수산통계관실의 농수산정보통계국으로의 개편등은 정부의 정부조직 축소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총무처에서 반대
-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 추진 : '95년 추진계획이었으나 경제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조합활동의 위축, 중소기업체와의 업무영역 충돌 등을 감안, 관계부처 회의에서 추진 중단기로 합의

다. 2단계 대책의 신규사업과 기존대책 보완사업

< 신규사업 > : 43개 사업

- 산지유통체제확립 (7개) : 주산지 산지유통시범농협 선정, 시설 및 운영자금 집중지원, 자율적인 숙박이 근절, 농협의 순회수집 완전정착,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협조체제 강화, 민간유통업체에도 포장센터 등 지원,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축소 등
- 물류표준화·하역기계화(12개) : 포장규격·시설·장비의 표준화(3), 무·배추 등 채소류 가공처리, 가락시장 하역인원 감축,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 물류정보망 구축(3), 물류표준화촉진을 위한 제도정비(3) 등
- 유통경로 다원화 (9개) : 물류센터 유통정보시스템 개발·판매망·구매선 확보 및 정책자금 지원(3), 소비자 민간대형유통업체 자금 지원, 중도매인 신규허가, 다른도매시장에 재반입된 물량의 경매제도 보완, 도매시장내 적정도매법인수 유지·규모화, 영세중도매인 통합·법인화, 출하촉진자금 지원방식 개선 등
- 안전식생활보장 (10건) : 잔류농약 간이조사제 도입, Cold Chain System 구축방안,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 도입, 생산자조직 위주 품질인증, 품질인증 객관화, 민간단체에 품

질인증위탁,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도입, 지리적표시제 도입, 품질관리법 제정 등 품질관리 체제정비(2) 등

- 수급안정체제 구축 (5건) : 주산지별 생산량조사 생산자조직에 정부비축사업 위탁, 출하예약제 도입, 농안기금 운용제도 개선 등

< 기존대책 보완반영 > : 13개 사업

- 작목반과 지역농협의 초고속정보망 연결, 산지가공업체 지원 자금 지원방식 개선, 파렛트, 지게차 등 구입자금 지원확대, 도매법인간 거래활용으로 이중경매 문제해결, 지방도매시장 상장예외 확대 품목별 안전성 검사강화방안, 농검을 품질관리원으로 개편, 손실보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지원 확대, 송아지생산안정제, 쌀 약정수매제 실시, 채소류·과실류·축산물 구매 및 가격안정개선방안

< 1단계대책 보완반영 > : 18개 사업

- 산지유통개선 : '98년까지 채소류 계약재배기금 3,000억원 조성, 무·배추 중심으로 20%재배, 농산물 포장센터 운영활성화, 간이집하장 포장센터화, 산지가공공장 시설확충, 배추·수박 등 산물출하농산물의 포장출하확대, 포장출하품과 비포장출하품의 차별화
- 유통경로 다원화 : 34개 도매시장·수도권 도매시장 개장시기 조정, 도·소매분리 등 도매시장별 자체발전계획 수립, 전산경매 시범 도매법인 선정 전산경매 추진, 도매시장 평가결과 조치강화, 물류센터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물류센터 운영방식 다양화
- 유통정보 등 : '98년까지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설립, 농협의 전국협의기능강화 등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 육성,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기능강화, 품목별 농업관측 전문가 육성

2. 유통개혁 1단계 대책 추진실적 평가

(● : 완료, ○ : 정상, △ : 부진, × : 추진중단)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 가
1.1 주산지 중심으로 쌀, 채소, 과수, 축산 등 품목별 전문 생산자조직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조직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목반 : 23,388개(식량3,932, 과수5,335, 채소10,667, 축산 1,712, 기타 1,737) - 영농조합법인(3,383개),농업회사법인(1,416개) - 품목별 전국협의회17개(사과,배, 감귤,유자,밤,포도,화훼,양파,생강,대파,고랭지배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적인 농업 관측이나 수급 조절능력을 갖춘 생산자조직 없음 (△)
1.2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결성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축협협동조합법 개정 ('94.12.22), 1구역 1동일업종조합 제한규정 삭제 	완료사업(●)
1.3 생산자조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사분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부터 7,788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을 농검에서 관리평가 	정상추진(○)
1.4 우수출하조직에 유통정책사업 우선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부터 우수조직 위주로 자금지원토록 농림사업 시행지침 개정 (9개사업 4086억원) 	정상추진(○)
2.1 농산물의 포장출하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7년 신규사업 (68.5억원) 	정상추진(○)
2.2 비포장규격품의 쓰레기부담금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6월부터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서울 가락동,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 서울 가락동(836백만원), 청주(24백만원) - '97.1월 쓰레기 부담금 인상 · 3,000원/톤→5,000원/톤 - '97.4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락) 	완료사업(●)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2.3 유기농산물, 지역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품목 : ('93)47개 → ('96) 76개 - 품질인증량 : ('93) 3만톤 → ('96) 12만톤 	정상추진(○)
2.4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으로 시장 차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품목 확대 : ('93) 189개 → ('96) 358개 - 이행율 : ('93) 49.7% → ('96) 89.7% 	정상추진(○)
3.1 마을단위 간이집하장 4000개소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까지 간이집하장 3,032개소 설치완료 - '97년 200개 설치 	정상추진(○)
3.2 농산물포장센터 160개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까지 포장센터 49개소 건설 - '96현재 3개소(나주, 안동, 거창)건설중이며 추가건설은 중단 	정상추진(○)
3.3 청과물종합처리장 24개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 현재 3개소(나주, 안동, 거창) 건설중이며 추가건설은 중단 	포장센터 기능과 유사하고, 대규모 시설(50억원)로서 신청자가 없어 '96년부터 중단(×)
3.4 주산지 경매식 집하장은 공판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까지 68개소의 집하장을 공판장으로 전환할 계획이었으나 19개소만 전환 	공판장으로 전환시 각종 규제등으로 현재보다 불리하여 전환희망을 하지 않아 지연(△)
3.5 선과시설, 포장기, 간이저장고, 저온수송차량 등 소규모 유통시설은 『생산·유통 시설자금』으로 설치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까지 767개소(9,938억원) : 채소190개소, 과수300개소, 화훼45개소, 특작 232개소 	완료사업(●)
3.6 산지가공공장 2,000개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년까지 1,231개소 건설 (매출액 4,533억원) 	정상추진(○)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3.7 농어민단체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 농어촌지역에서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식품위생법시행령 개정, '95.12.31)	완료사업(●)
4.1 수집상등록제 등 포전매매의 제도화 (●)	- 수집상등록('96) : 14,261명	완료사업(●)
4.2 표준계약서 보급	- 표준계약서 작성, 보급 중	농협을 통하여 표준계약서를 작성,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나 사용사례가 거의 없음(△)
4.3 생산자단체와 생산농가가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으로 손해발생시 채소유통활성화자금으로 보전	- '97년까지 3,000억원을 목표 하였으나 '97년까지 2,475억원 조성 (82%)	생산농가의 자발적 참여 부족으로 목표에 미달(△)
5.1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운영	- 공공출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농안법 개정(17조의2) - 도매시장관리 운영주체 : 관리공사 1개소(가락동), 관리사무소 13개소	농안법 개정 완료사업(●)
5.2 생산자단체의 가락동도매시장관리공사 임원참여	- 관리공사 이사회에 생산자단체 미참여, 자문위원회만 참여	계속추진(△)
5.3 도매법인 평가대상 확대, 평가항목의 내실화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5.4 평가결과 조치강화로 평가제 실효성 제고	- 평가결과에 따른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매시장 평가제의 실효성 미약	
5.5 지정도매법인별 차액보전 공제금 적립, 손실보전	- '95년에는 손실보전 실적이 67백만원으로 부진하였으나 '96.8월까지 128백만원으로 정상추진	정상추진(○)
6-1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 인하	- 가락동도매시장 1%, 대전 0.5%인하 후 타도매시장 인하실적 없음	지방도매시장의 영업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
7.1 경매과정의 투명성 제고 방안	-	경매결과 즉시공개를 위한 시설설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미흡 (△)
7.2 출하자가 희망할 경우 최저가격 제시	- 서면에 의한 최저가격제 도입 (농안법 제30조 개정, '95.7.1시행)	완료사업(●)
8.1 유통발전협회 기금의 활용도 제고	- '96년까지 조성 153억, 운용 96억원 - 운용 : 포장재지원(43억원), 전산화(34억원), 연구·조사 등 (15억원)	정상추진(○)
9.1 중매인의 도매, 중개만 인정	- 농안법 개정 (제27조의2, '94.11)	완료사업(●)
9.2 중매인의 유효기간 설정	- 농안법개정 (제23조 제5항, '94.11)	완료사업(●)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9.3 중매인의 상장에외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시행규칙 개정('95.6.30) - '96.1.1부터 시행 (가락시장) · 건고추,우엉,고사리,냉이,고추잎 등 61개 품목 	완료사업(●)
10.1 전품목의 상장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가 어려운 무·배추도 경매 ('95.1.1) - 상장경매율 ('93) 79%→('94) 94% 	완료사업(●)
10.2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 제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의 특례 : 농안법 제30조의 2 ('94.11.1) 시행규칙 제23조의 2 ('95.3.8) 	완료사업(●)
11.1 '98년까지 34개소 도매시장 조기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장(14개소) : 가락동,대전,대구,청주,울산,광주,수원,전주,부산,인천,천안,창원,충주,춘천 - 건설중(20개소) : 구리,안산,안양,익산,부산동부,진주,서울서남,광주제2, 인천제2, 포항, 원주, 강릉, 정읍, 안동, 대전제2, 고양, 성남, 순천, 구미, 마산 	부지확보와 공기지연으로 개장이 늦어지고 있으나 2001년까지 개장완료 예정 (△)
11.2 '97년까지 수도권 도매시장 건설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안양,안산은 '97년 개장 가능하나 서울 남서부권은 2000년 개장예정 	부지확보 지연으로 늦어지고 있음(△)
11.3 신설시장의 공판장 설치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안법 제42조 개정 ('97.11) - 현재 개장중인 14개 도매시장에 농협 공판장 14개소 개장입주 	정상추진(○)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11.4 유사도매시장의 거래개선 및 시설정비	- 구리·안양 공영도매시장 신규개설시 인근 유사도매시장 흡수	정상추진(○)
12.1 도별 출하상담실 설치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내 강원도 출하상담실 1개소 설치에 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성 미인식(△)
12.2 출하자 고충처리센터 설치	- 9개 도매시장 설치(서울 가락동,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수원, 청주, 충주, 울산)	정상추진(○)
13.1 도매시장 시설의 불법적인 점용 등에 대한 단속, 통제강화	-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을 구체화하고, 벌점제도 도입(도매시장 업무규정 제64호, '95.3.13)	정상추진(○)
13.2 하역비 부당징수 등 하역부조리 근절	- 출하자와 생산자, 하역노조 등으로 하역료 조정위원회에서 하역비 절감	정상추진(○)
13.3 기존·신설시장의 도·소매기능 분리	- 신설시장의 도·소매기능을 분리	기존시장의 도·소매기능 분리 미흡(△)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 가
14.1 농수산물 물류센터 16개소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개소 건설추진중 (창동, 양재동, 청주, 부산, 전주, 장성, 군위, 천안) - 2개소 (대전, 김해) 사업자 추가 선정 	부지확보 어려움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완공실적 없음(△)
14.2 개발제한지역내에서도 물류센터 건설	- 녹지지역에도 물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설부와 협의 추진 하였으나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미반영 ('96.6.12)	계속 추진하였으나 정부차원에서 불가(×)
14.3 정부가 부지를 조성하고,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체를 입주시켜 일정기간 무상 임대하는 대규모 종합물류단지 건설	-	- 농림부의 추진주체가 불확실하여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없음
15.1 농수축협외의 유통자회사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 : 농협유통('95.5.1), 농협무역('90.7.6) - 축협 : 한국축산유통, 축산무역('91.1.17) 	완료사업(●)
16.1 농어민장터의 정기화	- '96년말 주말시장 개장 : 202 개소 351억원	정상추진(○)
16.2 대도시 등과 단협의 자매결연	- '96년말 897개 동사무소와 711개 회원조합	정상추진(○)
16.3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추진	- 조합활동위축, 중소유통업체와의 업무영역 충돌로 관계부처 회의에서 유보	추진유보(×)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17.1 가정배달 택배제도 확대	- 김치, 쌀 등 10개품목 : '96년 9억원	정상추진(○)
17.2 우편주문판매제도 확대	- 특산품 통신판매사업 : '96년 12억원	정상추진(○)
17.3 대도시에 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의 상설직판장 설치운영	- 농협, 축협 직판시설 : 농협 520개, 축협 155개	정상추진(○)
17.4 도로변의 직판장 운영활성화	-	- 농협 22개소의 고속도로 직판장 중 11개소 적재(△)
18.1 농림수산물유통정보의 DB화 및 On-Line 연결	- 본부와 농림수산물정보센터에서 DB구축 및 관련기관간 on-line 연결	완료사업(●)
18.2 전국공영도매시장의 정보전달체계 구축	- 전국 13개 공영도매시장 유통정보시스템 구축완료 ('96.12.31)	정상추진(○)
18.3 농업관측결과 제공으로 출하시기 조정	- 농업관측을 원보체제로 전환('96.10)	농업관측결과의 생산조정이나 출하 조절과의 연계성 미미(△)
19.1 농업관측협의회를 농업관측위원회로 개편	- 차관이 위원장인 농업관측위원회의 사무국 설치추진	정부의 조직축소와 배치 총무처에서 반대무산(×)
19.2 단협별 유통정보 전담요원을 두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도소 등과 협조체계 구축	- 단협별 유통정보 전담요원 별도확보 부진	전담요원 확보 추진 지연(△)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19.3 유통전담요원 및 농어민에게 정보의 수집·분석 활용에 대한 전산교육	- 농협, 농진청, 농유공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산교육 실시	정상추진(○)
20.1 2004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 400개소 건설	- '96년까지 220개소 건설 (전체 유통량의 19% 점유)	정상추진(○)
20.2 정부미 수매, 방출의 시장기능 확대	- 쌀값 계절진폭 : ('93) 3.2% → ('96) 14.6% - 민간재고율 : ('93) 12% → ('96) 15%	정상추진(○)
20.3 양곡도매시장의 양곡거래소 또는 양곡 도매상으로 전환	- 양곡거래의 상장예외를 허용 ('96.5)	양곡거래소나 양곡도매시장 체제로의 전환계획이나 추진 실적 없음(△)
21.1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 건설로 계열화 유통체계 확립	- '97년말 가동예정 : 2개소 - '98년말 가동예정 : 3개소	정상추진(○)
21.2 도축장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축장 정비	- ('93)165개→('94) 160개→('95) 115개 → ('96) 118개소 (간이 도축장 35개소)	정상추진(○)
21.3 '96년까지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	- '95년 기착공 (경기도 안성군 축협중앙회연수원내)	'98년에나 준공 예정 (△)

1 단계 대책 내용	추진 실적 및 성과	평가
21.4 육류도체등급제 조기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년 서울·광역시, '96년도에 는 전도축장(82개)으로 확정 - 한우의 1등급 출하율 확대 : ('95) 12.8% → ('96) 18.3% 	정상추진(○)
21.5 부위별 차등가격제 확대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판매 및 한우·젓소·육우고기 구분 판매 의무화(식품위생법시행 규칙 제42조 개정, '95.8.31) - '96년 계도기간을 거쳐 '97.1.1부터 전면시행 	정상추진(○)
21.6 식육유통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위생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육처리 기술교육('94.~'96) : 450명 - 식육유통종사교육('94~'96) : 12만명(매년 4만명) 	정상추진(○)

3. 유통개혁 1·2단계대책 사업별 비교

(신규★, 기존대책보완*, 정상○, 지연△, 1단계보완▲, 완료●, 중단×)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p>1. 산지유통 시범농협을 선정, 선진유통모델 확산</p> <p>1-1 주산지 산지유통시범농협 선정(★)</p> <p>1-2 시설 및 운영자금 집중지원(★)</p> <p>1-3 자율적인 속박이 근절(★)</p> <p>2. 농협의 채소류에 대한 공동출하기능 강화</p> <p>2-1 '98년까지 채소류 계약재배 기금 3,000억원 조성 (▲)</p> <p>2-2 무·배추 중심으로 생산량의 20% 계약재배(▲)</p> <p>2-3 농협의 순회수집 완전정착(★)</p> <p>3. 우수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원강화</p> <p>3-1 우수조직 위주로 정책자금 집중 지원(○)</p> <p>3-2 농협과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의 협조체제 강화(★)</p> <p>3-3 작목반과 지역농협의 초고속정보망 연결(*)</p>	<p>4.3 생산자단체와 생산농가가 생산출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행으로 손해발생시 채소유통활성화자금으로 보전(△)</p> <p>4.1 수집상등록제 등 포전매매의 제도화(●)</p> <p>4.2 표준계약서 보급 (△)</p> <p>1.3 생산자조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심사분석 강화(○)</p> <p>1.4 우수출하조직에 유통정책사업 우선지원(○)</p>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p>4. 대량규격품 출하 거점육성</p> <p>4-1 농산물포장센터중심의 대량포장 규격출하 촉진 및 운영활성화(▲)</p> <p>4-2 2004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 중심의 직거래(○)</p> <p>4-3 축산물종합처리장 중심의 냉장유통체계 구축(○)</p>	<p>3.2 농산물포장센터160개소 건설(○)</p> <p>3.3 청과물종합처리장 24개소 건설(×)</p> <p>20.1 2004년까지 미곡종합처리장 400개소건설(○)</p> <p>21.1 축산물종합처리장 10개소 건설로 계열화 유통체계 확립(○)</p> <p>3.5 선과시설,포장기,간이저장고,저온수송차량 등 소규모유통시설은 「생산·유통시설자금」으로 설치지원(●)</p>
<p>5. 산지유통시설 운영활성화</p> <p>5-1 간이집하장의 포장센터화(▲)</p> <p>5-2 산지가공공장의 시설확충 및 경영개선(▲)</p> <p>5-3 산지가공업체 지원자금 지원방식 개선 (*)</p>	<p>3.1 마을단위 간이집하장 4,000개소 설치(○)</p> <p>3.4 주산지 경매식 집하장은 공판장화(△)</p> <p>3.6 산지가공공장 2,000개소 건설(○)</p> <p>3.7 농어민단체의 식품제조가공업의 인·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p>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p>6. 민간유통회사에도 산지유통시설자금지원</p> <p>6-1 민간유통업체에게도 포장센터등 지원(★)</p> <p>6-2 생산자조직과 민간유통업체와의 지원조건 차별축소(★)</p> <p>7. 포장·시설·장비를 ULS에 맞게 정비</p> <p>7-1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에 맞게 정비(★)</p> <p>7-2 ULS규격에 맞는 차량개조 및 보급(★)</p> <p>7-3 산지유통시설 표준화 모델개발 및 기존시설 개보수(★)</p> <p>8. 산지에서부터 무·배추 등 농산물의 포장출하</p> <p>8-1 배추·수박 등 산물출하 농산물의 포장출하 확대(▲)</p> <p>8-2 포장출하품과 비포장 출하품의 차별화(▲)</p> <p>8-3 무배추 등 채소류의 가공처리 유도(★)</p> <p>9. 파렛트 적재출하와 기계화 일관체제 구축</p> <p>9-1 파렛트, 지게차 등 구입자금 지원확대(*)</p> <p>9-2 가락시장 하역인원 감축(★)</p> <p>9-3 파렛트 풀 시스템 구축(★)</p> <p>10. 물류비용절감을 위한 물류정보망 구축</p> <p>10-1 농산물물류센터 중심의 EDI거래 체제 구축(★)</p> <p>10-2 EDI를 위한 정보표준화(★)</p> <p>10-3 도매시장 정보망과 농산물 물류 정보망 연결(★)</p>	<p>2.1 농산물의 포장출하유도(○)</p> <p>2.2 비포장규격품의 쓰레기부담금 징수(●)</p> <p>6-1 도매시장의 상장수수료 인하(△)</p>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p>11.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한 제도정비</p> <p>11-1 농산물 물류표준화 장기투자계획 수립 (★)</p> <p>11-2 농산물 물류표준화 추진협의회 및 실무작업반 운영(★)</p> <p>11-3 농산물 물동량, 물류비 및 유통마진조사(★)</p> <p>12. 농산물의 공정거래를 위한 공영도매시장 개장</p> <p>12-1 주요 거점도시에 34개 공영도매시장 개장(○)</p> <p>12-2 수도권 거점지역에 도매시장 건설 촉진(▲)</p> <p>12-3 건설지연 도매시장에 대한 대책(▲)</p> <p>13. 주문·통명거래가 가능한 물류센터 건설</p> <p>13-1 물류센터 16개소 건설(○)</p>	<p>11.1 '98년까지 34개소 도매시장 조기건설 (△)</p> <p>11.2 '97년까지 수도권 도매시장 건설완료(△)</p> <p>11.3 신설시장의 공판장 설치우대 (○)</p> <p>11.4 유사도매시장의 거래개선 및 시설정비(○)</p> <p>14.1 농수산물 물류센터 16개소 건설(△)</p>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13-2 물류센타의 도시계획시설 포함(▲) 13-3 물류센타 운영방식 다양화(▲)	14.2 개발제한지역내에서도 물류센타 건설(×) 14.3 정부가 부지를 조성하고, 생산자단체, 민간유통업체를 입주시켜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대규모 종합물류단지 건설(×)
14. 물류센타를 통한 새로운 거래체계 개발 14. 1 물류센타의 판매망 구매선 확보 방안(★) 14. 2 유통정보시스템 개발(★) 14. 3 물류센타에 정책자금 지원(★)	
15. 생산자조직과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촉진 15-1 농협 소비지 판매망 확대 및 다양화(○) 15-2 축협 소비지 판매장 확대 및 다양화(○) 15-3 소비지 민간대형유통업체 지원방안(★)	17.3 대도시에 생산자단체·지방자치단체의 상설직판장 설치운영(○) 15.1 농수축협의 유통자회사 설립(●) 16.1 농어민장터의 정기화(○) 16.2 대도시 등과 단협의 자매결연(○) 16.3 소비자협동조합법 제정추진(×) 17.1 가정배달 택배제도 확대(○) 17.2 우편주문판매제도 확대(○) 17.4 도로변의 직판장 운영활성화(△)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p>16. 공영도매시장 거래질서 정착</p> <p>16-1 형식적 기록상장 근절방안(○)</p> <p>16-2 중도매인 신규허가(★)</p> <p>16-3 지방공영도매시장 상장예외제도 활용(*)</p> <p>17. 다른 도매시장에 재반입된 물량의 경매제도 보완</p> <p>17-1 도매법인간 거래활용 방안(*)</p> <p>17-2 중도매인의 상장예외거래 허용(○)</p> <p>17-3 장기적으로 재반입 물량에 대한 경매지속 여부 재검토(★)</p> <p>18. 경매의 공정성 제고</p> <p>18-1 전산경매 시범도매법인 선정, 전산경매 추진 (▲)</p> <p>18-2 전광판 설치로 경매결과 즉시공개방안(○)</p>	<p>10.1 전품목의 상장거래 (●)</p> <p>10.2 도매시장법인의 제3자 판매제도 인정 (●)</p> <p>13.1 도매시장 시설의 불법적인 점용 등에 대한 단속, 통제강화 (○)</p> <p>13.2 하역비 부당징수 등 하역부조리 근절(○)</p> <p>9.3 중매인의 상장예외허용 (○)</p> <p>7.1 경매과정의 투명성 제고방안(△)</p> <p>7.2 출하자가 희망할 경우 최저가격제시(●)</p>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p>19. 도매시장의 운영효율화 및 경쟁력 제고</p> <p>19-1 도·소매분리 등 도매시장별 자체발전계획 수립(▲)</p> <p>19-2 도매시장내 적정도매법인수 유지, 규모화(★)</p> <p>19-3 영세 중도매인 통합, 법인화 (★)</p> <p>19-4 출하촉진자금 지원 확대 및 지원 방식 개선(★)</p>	<p>13.3 기존신설시장의 도·소매기능 분리(△)</p> <p>5.2 생산자단체의 가락동도매시장 관리공사 임원참여 (△)</p> <p>9.1 중매인의 도매, 중개만 인정(●)</p> <p>9.2 중매인의 유효기간 설정 (●)</p> <p>5.1 공공출자법인의 도매시장 관리·운영(△)</p> <p>8.1 유통발전협회 기금의 활용도 제고(○)</p>
<p>20. 도매시장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p> <p>20-1 도매시장 평가내용 보완(○)</p> <p>20-2 도매시장 평가결과 조치 강화 방안(▲)</p>	<p>5.3 도매법인 평가대상 확대, 평가항목의 내실화(○)</p> <p>5.4 평가결과 조치강화로 평가제 실효성 제고(△)</p> <p>5.5 지정도매법인별 차액보전공제금 적립, 손실보전 (○)</p>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p>21. 생산유통단계에서 안전 및 품질저해요소 발굴, 차단</p> <p>21-1 품목별 안정성 검사강화방안(*)</p> <p>21-2 잔류농약 간이조사제 도입 (★)</p> <p>21-3 Cold Chain System 구축방안(★)</p> <p>21-4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도입(★)</p> <p>21-5 '97년까지 간이도축장 폐쇄(○)</p> <p>21-6 '97년까지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p>	<p>21.2 도축장시설을 현대화하고, 시설을 갖추지 못한 도축장 정비(○)</p> <p>21.3 '96년까지 식육처리 기술훈련원 건립(△)</p>
<p>22.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p> <p>22-1 농가대상 품질인증에서 생산자조직 인증으로 전환(★)</p> <p>22-2 품질인증 객관화 및 인증절차 간소화(★)</p> <p>22-3 민간단체에 품질인증 위탁(★)</p> <p>22-4 유기농산물 품질표시제 도입(★)</p> <p>22-5 전통식품 품질인증품에 대한 관리강화 (○)</p>	<p>2.3 유기농산물, 지역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 정착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인증 품목 : ('93)47개→('96)76개 - 품질인증 량: ('93) 3만톤 → ('96) 12만톤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p>23. 국산농산물 차별화제도 정착</p> <p>23-1 원산지표시 단속 효율성 제고(○)</p> <p>23-2 지리적 표시제 도입(★)</p> <p>23-3 식육구분 판매제 정착(○)</p> <p>24. 농산물 품질관리 체제정비</p> <p>24-1 품질관리법 제정 추진(★)</p> <p>24-2 농검을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개편(*)</p> <p>24-3 농산물 품질등급판정사 도입(★)</p> <p>25. 품목별 전국생산자조직 육성</p> <p>25-1 전국적인 생산조정과 출하 조절을 할수 있는 전국생산자조직 육성(▲)</p>	<p>2.4 국내산과 수입산과의 원산지표시제 정착으로 시장차별화 (○)</p> <p>21.4 육류도체등급제 조기정착(○)</p> <p>21.5 부위별 차등가격제 확대 유도(○)</p> <p>21.6 식육유통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위생교육 강화(○)</p> <p>1.1 주산지 중심으로 쌀, 채소, 과수, 축산 등 품목별 전문생산자조직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광역조직 육성(△)</p>

2 단계 대책	1 단계 대책 계획
<p>25-2 손실보전을 위한 자조금 조성 지원확대 (*)</p> <p>25-3 전국생산자조직에게 정부수매 사업 위탁(★)</p> <p>26. 품목별 농업관측 강화</p> <p>26-1 품목별 전국 생산자조직의 농업관측 강화(▲)</p> <p>26-2 품목별 농업관측 전문가 양성 (▲)</p> <p>26-3 재배의향조사시 주산지별 추가 조사(★)</p>	<p>1.2 품목별 생산자조직의 결성이 용이하도록 제도개선 (●)</p> <p>18.1 농림수산물유통정보의 DB화 및 On-Line 연결 (●)</p> <p>19.1 농업관측협의회를 농업관측위원회로 개편(×)</p> <p>18.3 농업관측결과 제공으로 출하시기 조정 (△)</p> <p>19.2 단협별 유통정보 전담요원을 두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지도소 등과 협조체제 구축 (△)</p> <p>19.3 유통전담요원 및 농어민에게 정보의 수집·분석 활용에 대한 전산교육(○)</p>

2단계 대책	1단계 대책 계획
<p>27. 송아지 안정생산과 쌀 약정 구매제</p> <p>27-1 송아지생산안정제 실시(*)</p> <p>27-2 쌀 약정구매제(*)</p>	<p>20.2 정부미구매, 방출의 시장기능확대 (○)</p> <p>20.3 양곡도매시장의 양곡거래소 또는 양곡도매상으로 전환 (△)</p>
<p>28. 과잉생산시 사후가격안정대책 내실화</p> <p>28-1 채소류 산지폐기, 구매개선방안(*)</p> <p>28-2 과일류 저장, 가공업체 구매개선(*)</p> <p>28-3 가격하락시 축산물 구매 및 가격안정방안(*)</p> <p>28-4 산지폐기가격 산정방안(★)</p> <p>28-5 전국공영도매시장 정보망 구축(○)</p>	<p>18.2 전국공영도매시장의 정보전달체계구축(○)</p>
<p>29. 출하예약제 도입방안(★)</p>	<p>12.1 도별 출하상담실 설치 (△)</p> <p>12.2 출하자 고충처리센터 설치(○)</p>
<p>30. 농안기금 운용제도 개선방안(★)</p>	